www.kiri.or.kr

# KiRi 리포트
# 이슈 분석 모음집 2017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Contents_ 이슈 분석

## 1 거시금융


| | | |
|---|---|---|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 전용식 이혜은 | 3 |
|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방향 및 시사점 | 황인창 이아름 | 6 |
| 경상수지 흑자와 국고채 금리 | 전용식 정인영 | 10 |
|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의미 | 전용식 이소양 | 14 |
| 한미 채권시장 변화와 보험회사의 캐리트레이드 전략 | 임준환 이선주 | 18 |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성과와 시사점 | 정원석 황인창 | 21 |
|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 | 임준환 이선주 | 24 |
|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과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 임준환 황인창 | 28 |
|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 윤성훈 한성원 | 32 |


## 2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경과와 과제 | 정원석 | 39 |
|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현황 및 고도화 방향 | 임 준 | 42 |
|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증가와 과제 | 김세중 | 45 |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 | 황현아 | 47 |
|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백영화 | 50 |
|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 일괄면제규정 일몰과 시사점 | 이승준 | 54 |
|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회적 인식 개선 | 이정택 | 57 |
|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이승준 | 61 |
|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 | 임 준 | 65 |
| 산림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 이승준 | 67 |
|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최근 판례 및 법 개정 | 백영화 | 70 |
|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방안 | 임 준 | 73 |
|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 백영화 | 76 |
| 보험업법 차별금지 조항의 영향 검토 | 김규동 | 80 |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소고 | 정원석 | 83 |

# 이슈 분석 _Contents

## 2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미국 금융선택법안의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 완화와 시사점 | 이승준 | 87 |
| 전세금보장상품 판매 이슈 검토 | 송윤아 | 91 |
|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검토 | 김규동 | 95 |
| 보험종류별 예금보호 금액의 차등화 필요성 | 이승준 | 98 |
| 데이터 이코노미와 보험 | 임 준 | 101 |
|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 | 송윤아 | 104 |
|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와 주택연금 | 오승연 | 108 |
|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 최창희 | 111 |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 | 오승연 | 116 |
|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방안 | 김규동 | 119 |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 | 정원석 | 123 |


## 3 고령화


| | | |
|---|---|---|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최장훈 | 129 |
|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 | 이정택 | 132 |
|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와 고려사항 | 정원석 마지혜 | 135 |
|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평가와 제언 | 정원석 마지혜 | 138 |
|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 강성호 | 141 |
| 암치료 기술의 발전과 영향 | 김세중 | 145 |
| 치매와 우울증의 관계 | 이정택 | 148 |
| 연령과 금융자산에 따른 즉시종신연금 선호도 차이 | 최장훈 | 151 |

Contents_ 이유 분석

# 4 보험경영


| | | |
|---|---|---|
| 『장애와 건강 통계』를 통해 본 장애인 건강위험의 특징과 활용 | 오승연 | 157 |
| 최근 RBC비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 | 김해식 조재린 | 160 |
|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성과 | 조영현 | 162 |
| 중국 리스크와 해외사업 지역다변화 | 전용식 이소양 | 165 |
| 연성보험사기와 행동경제학 | 임 준 | 169 |
| 보험회사, 자산관리 대중화시대에 대비할 필요 | 최장훈 임준환 | 173 |
| 비대면채널 자동차보험 가입자 특성 및 시사점 | 기승도 이규성 | 176 |
|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비교와 시사점 | 전용식 | 180 |
| 헬스케어서비스와 건강나이 도입 | 김석영 | 183 |
| 2016년 11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 기승도 한성원 | 187 |
| 보험회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 | 오승연 | 190 |
|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동향 | 조영현 한성원 | 193 |
| 미국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 전용식 | 196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최창희 | 200 |
|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사고위험 | 황현아 | 203 |
|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 오승연 | 206 |
| 보험회사의 포인트제도 활용 전략 | 김세중 | 209 |
| 금리상승과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 관리 | 조영현 | 212 |
| 중국 기업의 해외 금융회사 M&A와 소유·지배구조 | 전용식 이소양 | 215 |
| 보험회사 상품구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 김해식 | 218 |
|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 | 전용식 | 221 |
|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 김석영 손민숙 | 224 |
| 디지털 건강관리플랫폼 현황과 고려사항 | 오승연 | 226 |

# 1. 거시금융

1.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 전용식 이혜은
2.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방향 및 시사점 | 황인창 이아름
3. 경상수지 흑자와 국고채 금리 | 전용식 정인영
4.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의미 | 전용식 이소양
5. 한미 채권시장 변화와 보험회사의 캐리트레이드 전략 | 임준환 이선주
6.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성과와 시사점 | 정원석 황인창
7.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 | 임준환 이선주
8.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과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 임준환 황인창
9.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 윤성훈 한성원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전용식 연구위원, 이혜은 연구원



요약

2016년 12월 15일(우리나라 시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전까지 상승했던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인상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5년 말 미국 금리인상 시기 전후에도 관측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저성장 장기화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2017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구조적인 하향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 역전으로 인한 자금 이동 규모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음

- 2016년 12월 15일(한국기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에 인상함으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0.5~0.75%로 상승하였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12월 15일 2.60%를 기록, 지난해 말에 비해 33bp 상승함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확대되기 시작한 2016년 7월 이후 우리나라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2016년 7월 1.22%에서 12월 12일 1.73%로 50bp 상승한 이후 2017년 1월 4일에는 1.63%로 하락함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16년 7월 1.25%에서 12월 12일 1.97%로 72bp 상승한 이후 2017년 1월 4일 1.81%로 하락함

- 지난해 12월 15일 미국의 금리인상 이전의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 원화약세 및 이로 인한 수입물가상승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 2016년 7월 원/달러 환율은 1,141.7원에서 11월 21일 1,186.6원으로 상승한 후 12월 12일 1,168.2원으로 상승세가 둔화됨

- 원화가치 약세로 수입물가상승률은 2016년 7월 -7.1%에서 10월에는 -0.6%로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0.7%에서 11월 1.3%로 상승함
  - 시장금리는 물가상승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승함
  - 두바이 국제유가도 같은 기간 배럴당 53달러로 상승세가 확대됨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후 인상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은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전후에도 관측된 현상임

- 2015년 12월 15일 이전까지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는 1.660%에서 1.750%로, 1.812%에서 1.935%로 상승하였고 2015년 말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하락세를 보임
- 2016년 7월 28일부터 2016년 12월 15일 미국의 금리인상 직전까지 국고채 3년물의 경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상승세가 둔화됨
  -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감

〈표 1〉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후 우리나라 시장금리 추이

(단위: %)

| FOMC 개최 일자 | 미국 기준금리 | 우리나라 국고채 3년 | | 우리나라 국고채 5년 | | 미국 국채(재무성 증권) 5년 | |
|---|---|---|---|---|---|---|---|
| | | -5 | +5 | -5 | +5 | -5 | +5 |
| 2015.10.29 | 0~0.25 | 1.648 | 1.660 | 1.810 | 1.812 | 1.381 | 1.532 |
| 2015.12.17 | 0.25~0.50 | 1.750 | 1.683 | 1.935 | 1.850 | 1.637 | 1.694 |
| 2016.01.28 | 0.25~0.50 | 1.623 | 1.544 | 1.767 | 1.670 | 1.453 | 1.325 |
| 2016.03.17 | 0.25~0.50 | 1.507 | 1.507 | 1.631 | 1.611 | 1.428 | 1.370 |
| 2016.04.28 | 0.25~0.50 | 1.477 | 1.449 | 1.579 | 1.550 | 1.325 | 1.278 |
| 2016.06.16 | 0.25~0.50 | 1.352 | 1.342 | 1.440 | 1.411 | 1.195 | 1.157 |
| 2016.07.28 | 0.25~0.50 | 1.227 | 1.218 | 1.255 | 1.236 | 1.119 | 1.069 |
| 2016.09.22 | 0.25~0.50 | 1.333 | 1.303 | 1.383 | 1.334 | 1.210 | 1.137 |
| 2016.11.03 | 0.25~0.50 | 1.419 | 1.422 | 1.483 | 1.506 | 1.311 | 1.317 |
| 2016.12.15 | 0.50~0.75 | 1.731 | 1.696 | 1.930 | 1.866 | 1.914 | 2.028 |

주: 1) -5, +5는 FOMC 회의일 전, 후 5일의 금리 평균을 뜻함
2)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FOMC 회의일 전의 5일 평균보다 회의일 후의 5일 평균이 증가함

자료: Federal Reserv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16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를 기록하였는데 2011년 1/4분기 이후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1%를 넘지 못하는 것임
- 경기부진과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위축, 그리고 이로 인한 국내경제의 저성장 지속은 금리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유가상승, 원화약세로 인한 수입물가상승과 AI로 인한 일부 농축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상승은 제한적이나마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014년 초부터 미국 국채(재무성증권) 5년물의 경우 2016년 7월까지 하락세가 완만하였으나 우리나라 국고채 5년물의 경우 같은 기간 빠르게 하락함
  -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고채 5년물 금리가 미국 국채 5년물 금리보다 낮아짐

〈그림 1〉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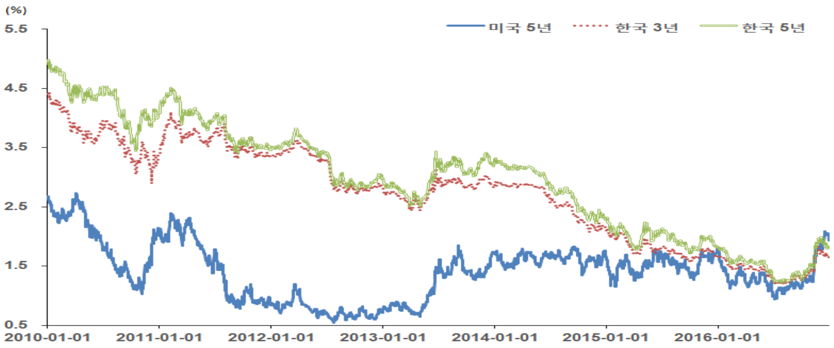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국내 시장금리는 구조적인 하향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 역전으로 인한 자금이동으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

- 최근의 금리상승을 추세적인 상승세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실질경제성장률 상승 등 실물요인이라기보다는 가격변수 조정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기보다는 금리 하향 추세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 역전과 자금이동으로 인한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kiri

KiRi 리포트 2017.2.20.

거시금융

#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 방향 및 시사점

황인창 연구위원, 이아름 연구원

요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확대 및 감세정책과 더불어 금융규제완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2017년 2월 금융규제완화를 시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을 공표하고, 2017년 4월 예정된 오바마 정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인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강화조치' 시행을 연기함.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은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이 제고되는 방향일 것으로 보이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적 협력 및 공조가 약화되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규제개혁 방향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① 미시적·거시적 금융규제 강화, ②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③ 국제적 협력 및 정책 공조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주택시장 붕괴로 인한 서브프라임 시장의 부실에서 촉발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끼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 국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제고,[1]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2]에 대한 규제 도입,[3]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4]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임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규제 사각지대로서 시장충격을 확산, 증폭하는 역할을 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및 장외파생상품(OTC derivatives) 시장에 대한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함
  - 마지막으로, G20 정상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5]를 설립하여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1) 금융기관이 외부 환경의 급격한 악화에도 제 기능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요구
2)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3)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및 부실 시 효과적인 정리 방안 마련
4)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체계

국제기준을 강화하기로 함

-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됨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당사국인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에서 독자적인 금융규제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6]을 공포(2010년 7월)하고, 이 법을 기초로 세부적인 개혁을 법제화하여 시행함**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는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7]를 설립하여 시스템리스크 감시, 대형 금융기관 규제 강화,[8]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볼커룰[9]) 등을 추진함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10]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통합하고 강화함
-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시장 참여자 규제를 강화함[11]
- 부실 금융기관 정리절차 확립을 목적으로 파산할 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자체정리계획(living will)[12]'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함

**하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확대 및 감세정책과 더불어 금융규제완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 특히, 「도드-프랭크법」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및 영업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실물지원 능력 및 의지를 크게 위축시켜 미국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주장함
-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융규제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규제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선 및 취임 후 내각 구성 · 금융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및 대통령지침(presidential memorandum)[13] 등을 발표함

5) Financial Stability Board
6)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7)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8) SIFI를 지정하여 추가적인 자본건전성 규제를 부과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9) Volcker rule
10)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11)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도록 유도하여 시장참여자들이 자본 및 증거금 규제를 받게 함
12) 은행들이 경영 위기를 맞아 파산 수순 과정일 때 자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미리 마련한 계획에 따라 은행들을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됨
13) 행정명령보다 낮은 단계의 행정지시임

-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주요 경제 관련 장관 인선에서 규제완화 및 감세를 지지하는 기업인 출신(월가 및 대기업 등) 인사를 다수 지명함

  -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브 므누신(Steven Mnuchin)은 투자은행(Goldman Sachs)에서 17년간 근무한 뒤 헤지펀드(Dune Capital Management)를 창립하는 등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경력을 쌓아옴
  -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윌버 로스(Wilbur Ross)는 세계적 금융그룹(Rothschild) 출신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로 현재 사모펀드회사(WL Ross and Co.)를 운영하는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자임
  -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앤드루 퍼즈더(Andrew Puzder)는 패스트푸드 기업(CKE Restaurants)의 CEO로 최저임금 인상과 초과 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에 반대한 대표적인 인사임

- 대통령 취임 후인 2017년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재검토를 통한 금융규제완화를 시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s)[14]에 서명함

  - 동 행정명령은 미국 금융시스템 규제의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인들에게 독립적인 재무의사결정 · 노후대비 · 개인자산 축적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시스템 위험 및 시장 실패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경제성장 및 금융시장 활기를 촉진함
    - 자국 및 해외 시장에서 미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제금융규제 협상 및 회의에서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
  -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재무부는 기존 법규들을 재검토하여 120일 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예정된 오바마 정부의 퇴직연금 관련 규정인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 강화조치' 시행을 연기하라는 대통령지침(presidential memorandum)[15]을 작성함

  -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자신의 인센티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신의성실의무에 관한 법규를 제정함
    - 퇴직연금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고객이 지급해야 할 수수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제로 금융회사가 퇴직금 투자 등에 대해 자문할 때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시 하도록 함

14) 「Core Principles for Regulating the United States Financial System(Executive Order 2017-02762)」 참고
15) 「Fiduciary Duty Rule(Presidential Memoranda 2017-02656)」 참고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 규정 시행을 180일 동안 연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 유예기간 동안 규제 영향에 대한 경제적·법적 분석을 수행해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동 규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 및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자문에 대한 접근성 축소·수수료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함

■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 「도드-프랭크법」을 대체할 구체적인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16]이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임

- 동 법안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규제 완화, 볼커룰 폐지, 재무구조가 건전한 은행들[17]에게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다수의 금융규제강화 규정들을 완화함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비용·편익분석을 의무화하고 예산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됨[18]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우선 정책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적 협력 및 공조가 약화되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kiri

16) 공화당의 젭 헨설링(Jeb Hensarling)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2016년 6월 발의하고, 9월 하원은행위원회에서 가결된 금융규제개혁법안임
17) 단순자기자본비율 10%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은행들
18)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장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국을 폐지한 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Consumer Financial Opportunity Commission)로 대체하자는 내용도 포함됨

KiRi 리포트 2017.5.15.

거시금융

# 경상수지 흑자와 국고채 금리

전용식 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최근 수출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201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9% 성장함.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할 경우 금리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보다는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강세가 금리상승 압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글로벌 IT업황 개선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고채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지난 4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1.25%) 이후 발표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은 2017년 1/4분기 전기 대비 0.9% 성장함[1)]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3월 15일 기준금리를 0.5~0.75%에서 0.75~1%로 인상함
  - 또한 올해 추가적으로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그림 1〉 참조)
  - 금리역전현상 발생 시 원화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우려됨
-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3일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기준금리를 11개월째 1.25%로 동결함[2)]
- 4월 27일 발표된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 건설투자가 전기 대비 5.3%, 설비투자도 전기 대비 4.3% 증가하였고 수출은 1.9%, 수입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증가로 경상수지는 2017년 1/4분기 19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여행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19.8억 달러에서 37.4억 달러로 증가함
  - 최근의 수출증가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의 경기개선에 따른 것임

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4. 27), "2017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4. 13), "통화정책방향"

## 경기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금융시장의 경기상승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국고채 금리는 경기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동행함(〈그림 2〉와 〈그림 3〉 참조)
  -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국고채 금리는 모두 하락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상승함
  - 이에 반해 2014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 경기동행지수는 상승한 반면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여 이러한 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보임
- 지난해 말 이후 경기동행지수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승세이나 국고채 금리는 안정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6년 12월 1.692%에서 2017년 4월 1.678%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1.873%에서 1.859%로 소폭 하락함
  - 2017년 3월 중 예금은행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49%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대출금리는 연 3.48%로 전월 대비 3bp 상승에 그침

〈그림 1〉 정책금리 추이(미국 vs.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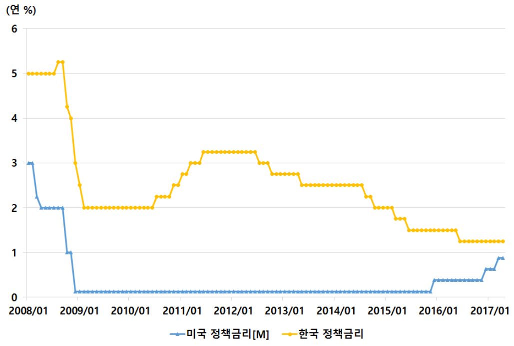


주: 한국은행;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림 2〉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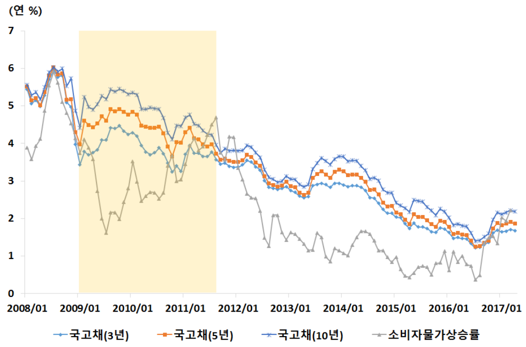


주: 한국은행

##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원화강세가 금리상승 압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절상 기대와 국가 위험프리미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작용함3)
  - 원/달러 환율은 2010년 말 1,146원에서 2016년 말 1,183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7년 4월

3) Orr, Edey & Kennedy(1995), Hol(2006)은 각각 OECD 17개국 및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경상수지와 실질금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상수지-GDP 비율 개선(악화) 시 실질금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상승)함을 보임(김민수 외(2013),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중립적 실질금리 추정 및 변동금리 분석」에서 재인용)

1,133원으로 하락하여 지난 해 말에 비해 최근 원화강세를 보임

-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축소돼도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민간부문 외화 유동성 증가와 양호한 대외건전성으로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3〉 경기동행지수와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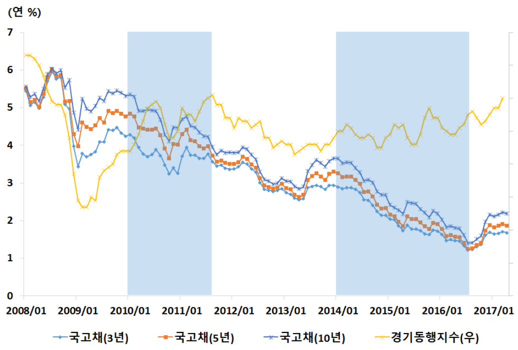


주: 한국은행

〈그림 4〉 경상수지와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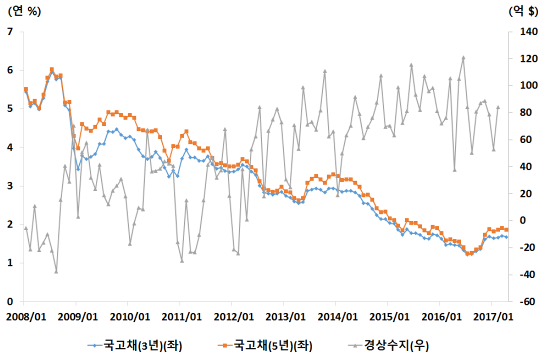


주: 한국은행; 통계청

## 향후 글로벌 IT업황 개선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문제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ICT가 글로벌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급기업 한정에 따른 수급불균형 확대로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4)]
- 또한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외환건전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 향후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됨

## 수출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국고채 금리 등 장기 시장금리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1990년 자산버블 붕괴 이후 수출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수

4)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7%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한국은행(2017), 「경제전망보고서」)

부진이 지속된 경험이 있음

- 금융시장의 미약한 경기상승 기대감,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강세,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낮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국고채 금리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KiRi

〈표 1〉 1992~2010년 일본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엔, 억 달러)

| 구분 | 1992 | 1994 | 1996 | 1998 | 2000 | 2004 | 2006 | 2008 | 2010 |
|---|---|---|---|---|---|---|---|---|---|
| 경제성장률 | 0.8 | 0.9 | 2.6 | -2.0 | 2.3 | 2.4 | 1.7 | -1.0 | 4.7 |
| 민간소비 | 2.1 | 2.3 | 2.3 | -0.8 | 0.4 | 1.2 | 1.1 | -0.9 | 2.8 |
| 설비투자 | -7.4 | -5.8 | 1.7 | -5.8 | 6.5 | 3.5 | 4.0 | -2.6 | 0.3 |
| 정부소비 | 2.7 | 3.5 | 3.0 | 1.2 | 4.6 | 1.5 | 0.0 | -0.1 | 1.9 |
| CPI 상승률 | 1.7 | 0.7 | 0.1 | 0.7 | -0.7 | 0.0 | 0.2 | 1.4 | -0.7 |
| 국고채 금리 | 5.3 | 4.4 | 3.1 | 1.5 | 1.8 | 1.5 | 1.7 | 1.5 | 1.2 |
| 엔/달러환율 | 126.7 | 102.1 | 108.8 | 130.8 | 107.8 | 108.1 | 116.3 | 103.3 | 87.7 |
| 경상수지 | 1,125.7 | 1,302.6 | 657.9 | 1,187.5 | 1,196.6 | 1,720.6 | 1,705.2 | 1,593.6 | 2,039.2 |

자료: 일본 내각부; BOJ; Bloomberg

#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의미

전용식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요약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5월 24일 Aa3에서 A1으로 강등하였는데, 평가시점이 2016년 하반기 중국의 자본유출 감독관리 강화조치 이후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 2015년부터 중국의 자본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자본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일련의 자본유출 감독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함. 중국의 자본유출 규제와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중국의 기업부채와 은행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함

-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5월 24일 Aa3에서 A1으로 강등하였는데, 평가시점이 2016년 하반기 중국의 자본유출 감독관리 강화조치 이후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원인은 중국의 국가부채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와 재무건전성 악화 등임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중국보다 2단계 높은 Aa2 등급이며 일본은 중국과 같은 A1 등급임
  - 본고에서는 중국의 자본유출 감독관리 강화조치 전후의 중국의 경제상황과 부채현황을 분석하여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의미를 살펴봄

-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2014년 이후 중국에서 유출되는 자금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외환보유액은 2014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 중국의 자본수지는 2014년에는 40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에는 2,009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됨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7.3%를 기록한 이후, 2015년 6.9%, 2016년 6.7%로 하락하였고 2017년 1/4분기 6.9%를 기록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고시한 위안화/달러 기준 환율은 2014년 6.14에서 2017년 1/4분기 6.89까지 12.2% 상승(평가절하)함
- 한편,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사상 최고치인 3.99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불과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12월에는 3.33조 달러, 2017년 1/4분기에는 2.21조 달러로 감소함

〈표 1〉 중국 경제성장률, 위안화 기준환율, 자본수지, 외환보유액 변화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 경제성장률[1)] | 위안화 기준환율[2)] | 자본수지 | 외환보유액[3)] |
|---|---|---|---|---|
| 2012년 | 7.7 | 6.31 | 1,114 | 33,116 |
| 2013년 | 7.7 | 6.19 | 2,064 | 38,213 |
| 2014년 | 7.3 | 6.14 | 405 | 38,430 |
| 2015년 | 6.9 | 6.23 | -2,009 | 33,304 |
| 2016년 | 6.7 | 6.64 | -3,053 | 22,394 |
| 2017년 1/4분기 | 6.9 | 6.89 | -252 | 22,177 |

주: 1) 전년 대비 수치
2) 위안화 기준환율은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의미하며, 기간 내 평균치를 기준으로 집계됨
3) 외환보유액은 누적수치를 기준으로 집계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중국국가외환관리국

## 2016년 초까지 중국 정부는 자본수지 적자의 원인이 민간 부문의 해외투자 증가이므로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2016년 2월 중국 외환관리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자본유출이 주로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밝힘
- 중국 상무부의 보도자료[1)]에 따르면 2016년 1~8월 중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181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인 859억 달러의 2배 수준임
- 일부 부유한 중국인들은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비하기 위해 홍콩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위안화 자산을 미국 달러에 연동된 홍콩 달러 자산으로 전환함[2)]
  - 이는 중국 카드사인 은련카드를 통해 홍콩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하는 금액이 중국인들의 1인당 5만 달러인 해외 송금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중국인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신계약보험료는 489억 홍콩 달러로 전체 신계약보험료에서 37.0%를 차지하였는데, 동 비중은 2005년 2/4분기(3.5%)에 비해 33.5%p 상승함[3)]

1) 中國商務部(2016. 11), "1-8月中國海外投資額超過去年總額"
2) 財經網(2016. 12), "前三季內你客戶貢獻香港保險489億港元,貢獻率近四成"
3) 홍콩보험감독당국은 2005년 2/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 중국인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신계약보험료 수치만 발표함

■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는 자본유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2017년 1/4분기 자본수지 적자가 감소함

- 2016년 10월 중국 카드사인 은련카드는 중국인이 홍콩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거래 당 5만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제한함
- 2016년 11월 중국외환관리국은 중국 내에 위치한 기업이 사전 보고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5,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인하함
- 2016년 12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체육 등의 산업에 대한 비(非)이성적인 해외투자, 주요 업무가 아닌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2016년 12월 중국 인민은행은 2017년 7월부터 신고해야 하는 대규모 외환거래 금액을 기존의 20만 위안에서 5만 위안으로 크게 하향 조정함
  - 한편, 2017년 1월 중국 외환관리국은 개인의 해외 부동산, 주식투자, 보험구매 등을 위한 외환 매입을 금지한다고 재차 강조함
- 2016년 무산된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규모는 약 750억 달러로 2015년 100억 달러에 비해 7.5배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자본유출 규제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임[4)]
  -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 무산된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규모는 각각 585억 달러, 163억 달러임
-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자본유출 규제 강화로 2017년 1/4분기 중국의 자본수지 적자는 252억 달러로 2016년 1/4분기 1,123억 달러에 비해 871억 달러 감소함

■ 중국의 자본유출 규제가 기업부채비율과 은행 부실채권비율 상승폭이 확대되는 시점에 강화되었다는 점과 이번 무디스의 평가결과는 중국의 기업부채와 은행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

- 중국 비금융기업의 2016년 GDP 대비 부채비율과 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은 201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함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6년 3/4분기 평균 중국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55.3%로 2012년 평균 189.2%에 비해 크게 상승함
  -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용을 나타내는 부채상환비율은 2012년 평균 16.8%에서 2016년 3/4분기 평균 19.9%로 상승함
- 2016년 3/4분기까지 평균 중국 은행의 총대출 대비 부실대출비율(Non Performing Loan)은

4) Financial Times(2017. 2), "Overseas Chinese acquisitions worth $75bn cancelled last year"

1.747%로 2015년 평균 1.674%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4년 1.100%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5)]

-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부실대출비율이 6% 이상일 것으로 추정함[6)]
- 1998년 중국 정부는 GDP의 3.18%(2,700억 위안)를 중국 국영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에 투입한 경험이 있음

〈표 2〉 중국 비금융기업과 은행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 구분 | 중국 비금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 | 중국 비금융기업의 부채상환비율 |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비율 |
|---|---|---|---|
| 2012년 | 189.2 | 16.8 | 0.954 |
| 2013년 | 206.8 | 18.2 | 1.000 |
| 2014년 | 221.5 | 19.3 | 1.100 |
| 2015년 | 237.4 | 19.2 | 1.674 |
| 2016년 | 253.3 | 19.9 | 1.747 |

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치는 매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수치로 계산된 평균치이며, 2016년의 수치는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수치로 계산된 평균치임

자료: 국제결제은행; World Bank

## 국가부채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은 최근 수출증가로 완만한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무디스는 중국의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이 약 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중국의 수입수요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kiri

5) Hong Kong Free Press(2017. 4. 30), “Non-Performing Loans and Capital Outflow: Is China on the verge of a banking crisis?”

6) 전용식(2016. 5. 16), 「중국 은행의 부실대출 증가 현황과 영향」, 『KiRi Weekly』,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2017.8.7.
거시금융

# 한미 채권시장 변화와 보험회사의 캐리트레이드 전략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요약

최근 들어 국내 국채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장기금리–단기금리)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모든 만기에 걸쳐 상승함. 뿐만 아니라 한미 간 금리차(=국내금리–미국금리)가 단기물의 경우에는 축소되고 장기물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국내 금리가 이런 특징을 보이는 데는 국내 채권시장이 자국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기대심리보다는 미국 (긴축)통화정책에 따른 외국인 채권재정거래의 축소에서 비롯된다고 봄. 향후 양국 간 금리차의 축소 또는 확대 가능성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보험회사의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전략[1)]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캐리트레이드의 실행조건이 만족된다고 해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캐리트레이드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금리차이의 위험, 환위험, 환헤지 시 금리위험 등에 대한 제반 위험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들어 국내 국채금리는 만기별 금리 수준 및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한미 간 금리차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보임(〈그림 1〉 참조)

  - 첫째, 국내 장단기 금리차가 중기금리(10년 이하)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가 작년 대비 모든 만기에 걸쳐 상승
    - 1년 전에는 장단기 금리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금년 들어 평균적으로 약 20bp로 확대
    - 1년 만기 금리는 1.26%에서 현재 1.46%로, 10년 만기 금리는 1.43%에서 2.22%, 30년 만기의 경우 1.53%에서 2.29%로 1년 전에 비해 급등
  - 둘째, 만기가 10년 이하의 경우 한미 간 금리차가 축소되고, 만기가 10년 이상의 경우 금리차가 확대
    - 특히 10년 만기 이하의 경우 한미 간 금리차이가 작년 대비 대폭 축소

1) 캐리트레이드란 저금리 통화로 투자자금을 조성하여 고금리 통화에 투자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그림 1〉 양국 간 금리기간구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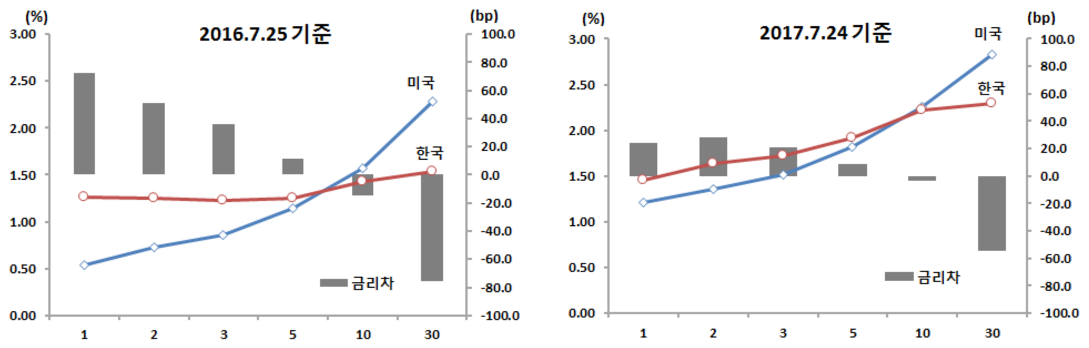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국내 채권시장이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는 것은 자국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기대심리보다는 미국 (긴축)통화정책에 따른 외국인 채권재정거래의 축소에서 비롯된다고 봄

- 국내 경제상황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정책금리(1.25%)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국내 통화정책기조에 대한 기대심리는 큰 변화가 없음
- 이보다는 채권 재정거래 주체인 외국채권투자자들이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달러자금조달의 악화 및 투자대상통화인 원화가치의 하락 등을 우려하여 국내 2년 이하 만기채권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결과(〈표 1〉 참조)
  - 국내 기관투자가들(연기금, 보험회사 등)도 외국인 채권매도에 따른 금리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당분간 관망세를 보는 분위기도 한 몫

〈표 1〉 외국인 만기별 국채 순매수[1]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 1년 이하 | 2년 이하 | 3년 이하 | 5년 이하 | 10년 이하 | 10년 초과 |
|---|---|---|---|---|---|---|
| 국채 순매수 | -115,297 | -36,902 | 60,513 | 155,989 | 115,987 | 24,430 |

주: 1) 2016. 7. 25 ~ 2017. 8. 2
자료: 연합인포맥스

■ 향후 미국 금리가 국내 장기금리를 상회하여 양국 간 금리차가 확대될 것이지만 그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 통화정책기조가 긴축[2]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할 가능성

- 반면에 국내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소비자 물가 수준이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등 인플레이션 목표수준(2%)대에 있어 조만간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고 봄
- 그러나 미국 통화긴축기조가 점진적이고 완만할 것으로 금융시장에서 예상되고 있어 양국 간 단기 금리격차가 축소될 것이고, 장기금리격차는 확대될 것임

## 양국 간 장기금리차의 확대 가능성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국내 보험회사의 캐리트레이드 전략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최근에는 한미 간 금리차의 축소로 해외투자의 캐리트레이드 전략이 매력적이지 않았으나 향후 미국 금리의 상승으로 캐리트레이드 전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외화채권 캐리트레이드는 낮은 금리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환시장을 통해 외화자금을 확보한 다음 높은 금리의 통화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
  - 국내 금리에 비해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국내투자 수익률보다 해외투자 수익률(미 달러화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캐리트레이드 전략이 실행

## 캐리트레이드의 실행조건이 만족된다고 해서 캐리트레이드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 캐리트레이드의 수익률은 원화표시 해외채권 리스크프리미엄과 외환 리스크프리미엄의 합계에 의해 결정
- 원화표시 해외채권 리스크프리미엄은 환헤지를 완전히 실행한 상태에서의 해외채권 투자수익률과 국내투자 수익률의 차이를 말함
  -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다 하더라도 환헤지 비용이 금리차이보다 높으면 손실을 볼 수 있음
- 외환 리스크프리미엄은 예상환율의 평가절상률(달러가치의 상승 예상)과 양국 간 금리차 간의 차이를 말함
  - 미국금리가 한국금리를 상회하더라도 달러가치의 하락률이 크다고 하면 달러채권 보유로부터 환차손이 발생
- 따라서 보험회사의 캐리트레이드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금리차이의 위험, 환위험, 환헤지 시 금리위험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kiri

2) 정책금리 인상 및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능성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성과와 시사점

정원석 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최근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우월한 사용자 편의성 및 금리 조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원리금상환가능성이 높은 고신용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전략과 고객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고 금리에 민감하며 신용등급이 높은 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발전할 것으로 보임.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소비자행태 변화가 보험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음

##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였음

- 2017년 4월부터는 K뱅크, 그리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카카오뱅크[1]가 영업을 시작하였음
-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가 없고 개좌 개설을 포함한 모든 은행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기기로만 은행업무가 가능함

## 특히 7월 27일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일주일 만에 15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였음

- 영업 일주일 만에 총수신금액은 6,530억 원, 총대출금액은 4,970억 원을 기록하였음
  - 카카오의 주가는 카카오뱅크 서비스 전날 105,500원에서 영업 5일 만에 120,000원으로 13.7% 상승하였음
- K뱅크 역시 4월 3일 영업을 개시한 이후 100일 만에 가입자 수 40만 명 수신금액 6,500억 원, 대출금액 6,100억 원을 기록하였음

1) 공식명칭은 “한국카카오은행”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카카오뱅크로 칭함

- 현재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높은 소비자 호응의 원인은 사용자 편의성과 금리경쟁력 등으로 평가됨

  - 계좌 개설, 정기예금 가입, 대출 실행 등에 별도의 제출 서류가 없고 진행 시간은 5분 이내임
    - 대출을 위해 지점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승인까지 수 일이 소요되는 예금은행에 비해 편리하고 빠름
  - 정기적금 금리는 연 2.2%(12개월 기준)로 은행권 최고 수준이고, 신용대출 금리 역시 최저 연 2.84%로 매우 낮은 수준임
    - 2017년 6월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1.63%(12개월 기준)이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41%임
    - 낮은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비용구조를 활용하여 낮은 대출 및 높은 예금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거래에 익숙하고 예금 및 대출 금리에 민감한 계층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유인이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대출 시 원리금상환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 유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 은행이 대출상품을 판매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위험(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을 파악하여 대출 이자율과 한도를 결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함
  -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는 기존 은행 대비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저신용 고객에게는 기존은행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유인을 가지게 됨
  - 실제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K뱅크의 한도대출 금리는 1~2등급 고객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해 5~6등급에는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을 적용함
    - 시중은행은 10등급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나 대부분 6등급까지 대출을 하고, K뱅크의 경우도 7등급 이하에는 대출을 하지 않음

〈표 1〉 주요 은행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

| 구분 | 신용등급별 금리 | | | 평균금리 |
|---|---|---|---|---|
| | 1~2등급 | 3~4등급 | 5~6등급 | |
| IBK기업은행 | 3.80 | 4.46 | 6.84 | 4.08 |
| KB국민은행 | 4.47 | 5.05 | 5.35 | 4.58 |
| KEB하나은행 | 3.61 | 3.86 | 4.15 | 3.71 |
| NH농협은행 | 3.41 | 4.00 | 5.79 | 3.68 |
| 신한은행 | 3.50 | 3.52 | 3.65 | 3.52 |
| 우리은행 | 3.63 | 4.17 | 5.48 | 3.71 |
| 케이뱅크은행 | 3.28 | 4.90 | 6.49 | 3.49 |
| 카카오뱅크* | 최저 2.84 | - | - | - |

주: 7월 자료로 카카오뱅크의 금리는 반영되기 전임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재구성

-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 전략과 고객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고 금리에 민감하며 신용등급이 높은 계층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발전할 것으로 보임
  - 앞서 언급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20~30대가 주요 금융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 고신용자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쏠림은 점진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기존 은행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금리가 아닌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비자행태 변화는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의 이용자 수는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100만 명을 넘었음
  - 또한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상반기 수입보험료 기준 15.2%에 달함
  - 특히 온라인 보험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모바일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모바일 가입 고객의 비중이 20%를 넘었으며, 이들 가입자의 80%는 20~30대로 조사되었음
    - 가입자의 36%가 대체로 신용이 우량한 전문직 종사자(금융,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로 조사되었음 kiri

#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

요약

최근 국내에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분석결과, 가상화폐가 갖는 투자자산으로서의 장점은 첫째, 가상화폐는 예측가능성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단독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자산의 일부로 편입될 경우 위험 분산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임. 단점으로 첫째, 가상화폐는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손실위험이 높다는 점, 둘째,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투기적 동기가 지배적이라는 점임. 따라서 향후 가상화폐가 금융 투자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지급결재 수요가 확대되어야 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상승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 및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투자대상으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1)]의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음
  - 2016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46만 원이었으나 최근에는 약 504만 원까지 상승하여 1년 반만에 10배 이상의 가격상승을 보였음(<그림 1> 참조)
    - 한편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성이 높아 과도한 투자 열풍을 유도하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하루 거래량이 2조 6,01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스닥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인 2조 4,300억 원을 넘어선 규모임

1)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디지털화폐의 일종으로 거래기록이 암호화되어 저장되므로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라고도 하는데 이하에서는 가상화폐로 통칭함. 가상화폐의 유형으로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등이 있으나,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 가상화폐만을 다루고자 함. 비트코인은 통화당국에 의한 결제통화로서의 인정 여부가, 이더리움은 실물경제와 연관시키는 플랫폼을 통해 각각 실수요 가치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그 차이가 있음. 리플코인은 기존 비트코인의 P2P를 이용한 단순 암호화 통화방식의 단점을 보완한 암호화 가상화폐로 정식명칭은 XRP이며 상호간의 송금 서비스 요소를 가지고 있음

〈그림 1〉 가상화폐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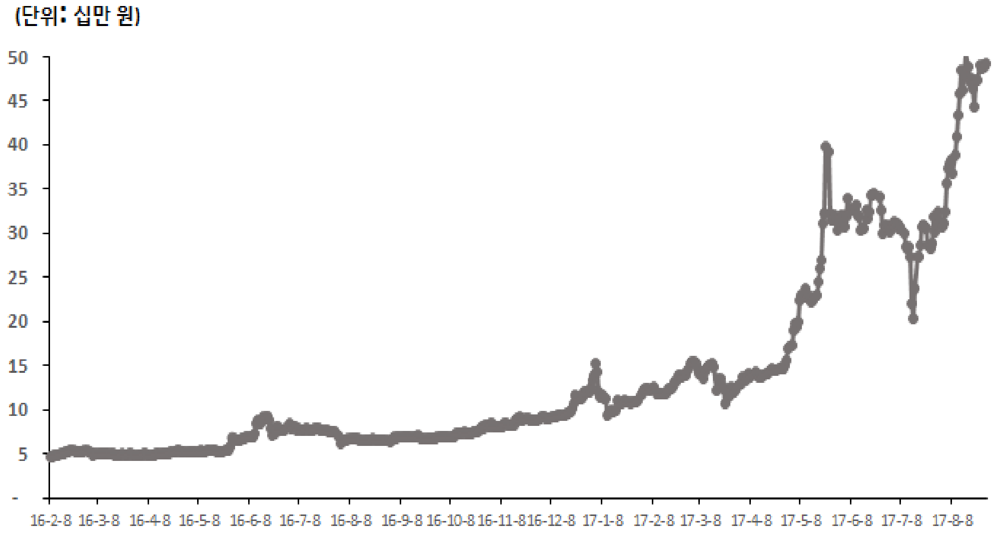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일별 자료(2016. 2. 28~2017. 8. 8)

- 가상화폐의 가치는 가치척도, 교환의 매체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 기능(실수요)뿐만 아니라 가치저장과 관련된 기능이라는 투자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하에서는 후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함
  - 실수요 거래는 블록체인[2] 기술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로 창출됨
    - 가상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나 편리성 등이 검증될 필요
  - 투자수요는 향후 실수요 거래 증대로 인한 가격상승을 예상하는 합리적 투자동기와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투기적 수요에 의해 창출

- 통계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는 투자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첫째, 가상화폐는 주식에 비해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있어 추세매매[3]가 가능
    - 가상화폐의 (일별)수익률은 자기상관계수 추정치가 0.12인 반면 주식의 경우 0임(〈표 1〉 참조)
  - 둘째, 가상화폐를 자산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했을 때 분산효과가 있음(〈표 2〉 참조)
    - 자산포트폴리오는 가상화폐, 금, KOSPI200 주가지수, 원/달러 환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상화

2)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ㆍ공유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분산형 장부인데 안전성이 높고 중앙 서버를 유지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음

3) 추세매매는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상승(하락)분위기가 어느 정도 계속된다는 통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거래되는 전략을 말하는데 통계적 지표에 의하면 일별 추세가 0.12에 해당

폐는 금, 환율과는 음의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포트폴리오의 편입자산이 될 수 있음

## 반면 가상화폐는 투자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

- 첫째, 가상화폐의 최대 예상 손실액(Var) 또는 극단적 손실발생 시 평균손실액(TVaR)이 주식의 경우보다 다섯 배 이상임(<표 3> 참조)
- 둘째, 높은 이익이나 높은 손실의 극단적 사건들이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표 1>에서 첨도가 3 이상임)
  - 첨도가 10이라는 것은 가상화폐의 꼬리부분(tail), 즉 극단적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이 정규분포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셋째,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투자에 따른 편익을 향유하기 어려움

〈표 1〉 가상화폐 로그수익률 통계(일 기준)

(단위: %)

| 구분 | 데이터 수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위험조정 대비 수익률 |
|---|---|---|---|---|---|---|
| 내용 | 566 | 0.42 | 3.72 | -0.41 | 10.29 | 0.112 |
| 기타 | 최댓값: 21.30 / 최솟값: -21.04 | | | | | |

〈표 2〉 가상화폐 가격, KOSPI200, 금 가격, 원/달러 환율 상관계수

(단위: %)

| 구분 | 가상화폐 가격 | KOSPI200 | 금 가격(1g) | 원/달러 환율 |
|---|---|---|---|---|
| 가상화폐 가격 | 1.0000 | 0.0804 | -0.0045 | -0.0608 |
| KOSPI200 | 0.0804 | 1.0000 | 0.3259 | -0.4542 |
| 금 가격(1g) | -0.0045 | 0.3259 | 1.0000 | -0.3714 |
| 원/달러 환율 | -0.0608 | -0.4542 | -0.3714 | 1.0000 |

〈표 3〉 가상화폐와 KOSPI200의 위험성 비교: 95% 신뢰수준

(단위: %)

| 구분 | 가상화폐 로그수익률 | KOSPI200 로그수익률 |
|---|---|---|
| VaR_95% | -5.28 | -1.06 |
| TVAR_95% | -14.11 | -2.01 |

■ 향후 가상화폐가 투자자산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 거래동기가 많아야 하고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보호 및 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가 필요

-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의 실용화 계획을 갖고 있어 실수요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국내 금융정책당국자도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해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 방지, 외환 규제 등을 논의한 바 있음[4]
- 국제통화기금도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며 가상화폐가 법정통화로 교환되는 거래소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kiri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1. 17), “디지털통화 제도화 T/F 제1차 회의 개최”

KiRi 리포트 2017.11.20.

거시금융

#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과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황인창 연구위원


요약

최근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채권투자가와 은행 및 증권사의 만기 10년 이하 국고채 매도, 보험회사의 만기 10년 초과 국고채 수요 증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됨. 보험회사의 장기 국고채 매입은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조치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금리상승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에게 기회요인이나 현행 지급여력제도에서는 자산만 시가평가하고 있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함. 이러한 상황은 2021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만기가 30년인 장기 국고채 금리가 만기 10년 국고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그림 1, 2〉 참조)
  - 최근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상 기대감으로 모든 만기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과거 1년 동안 미국 기준금리는 3차례 인상[1]되었고 금년 12월에도 인상될 것이라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1년 이내 추가적으로 세 차례 이상 인상될 것이라 전망됨
    - 과거 1년 동안 국내 기준금리는 1.25%로 유지되었지만 향후 수개월 이내에 25bp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됨
  - 이러한 금리기간구조 상승과 더불어 금년 9월 말부터 20년 만기,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이 유지(최대 14bp)되고 있음
    - 최근 1년 동안[2]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상승폭은 84bp로 20년 만기 국고채(74bp), 30년 만기 국고채(69bp) 상승폭에 비해 큼

---

1) 0.25~0.5%에서 1~1.25%로 75bp 상승

2) 대상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임

〈그림 1〉 최근 1년간 만기별 국고채 수익률 및 10/30년 스프레드 추이('16. 11~'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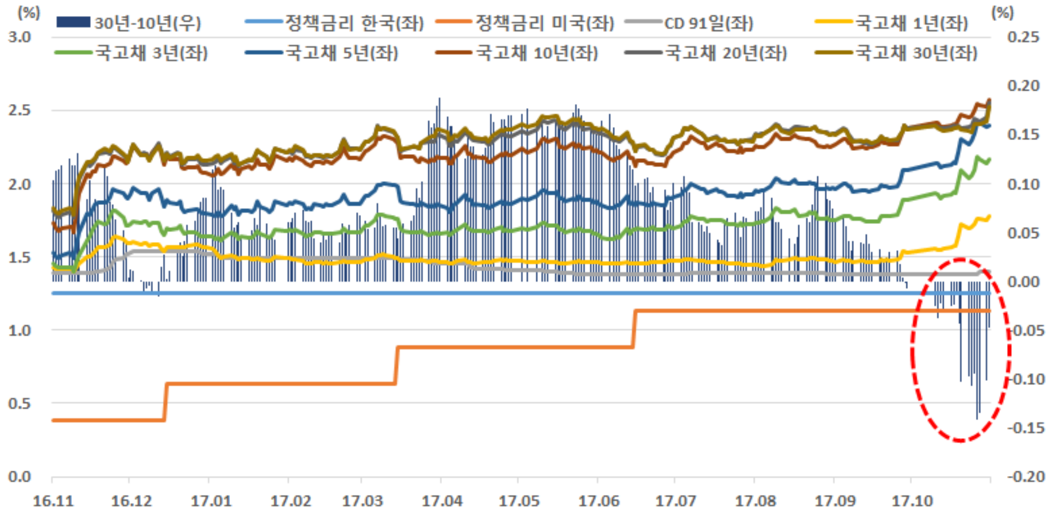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2〉 최근 1년간 금리기간구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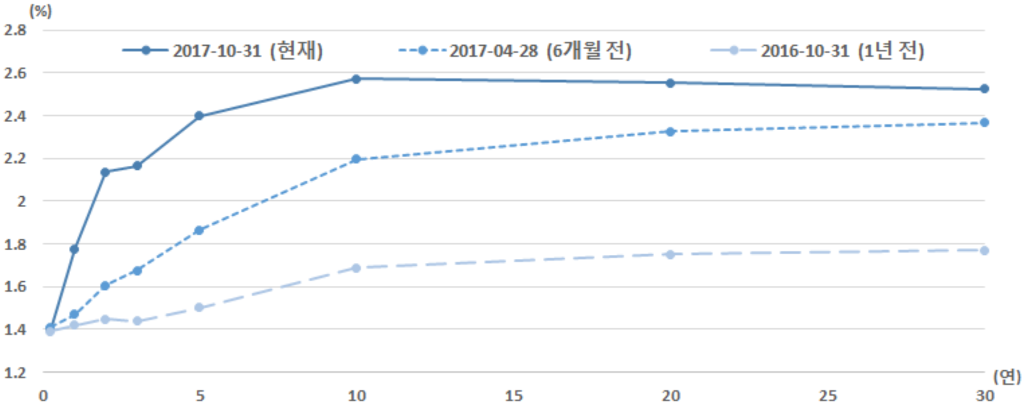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 장기 채권금리 역전현상은 외국인 채권 투자가와 은행 및 증권사의 만기 10년 이하 채권 매도, 그리고 보험회사의 만기 10년 초과 장기 국채 수요 증가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함(〈표 1〉 참조)
  - 외국인 채권 투자가들이 케리트레이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만기 10년 이하 국채 금리가 상승
    - 케리트레이드 포지션 청산이란 미국 달러화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우리나라 10년 이하 만기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금리 상

승을 우려하여 우리나라 10년 이하 만기 국채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임

- 국내 은행 및 증권회사들은 금리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금리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고채 매도 또는 장기 국고채 매입을 줄이고 있음(듀레이션 축소)
- 보험회사들의 만기 10년 초과 장기국채 수요 증가로 장기국채 금리상승폭은 둔화

〈표 1〉 투자자별 국채 순매수 현황

(단위: 억 원)

| 패널 A: 최근 1년('16. 11~'17. 10) | | | | | | | |
|---|---|---|---|---|---|---|---|
| 분류 | 전체 | 1년 이하 | 2년 이하 | 3년 이하 | 5년 이하 | 10년 이하 | 10년 초과 |
| 전체 | 1,066,418 | 59,610 | -3,584 | 197,661 | 208,582 | 316,618 | 287,547 |
| 은행 | 323,314 | 57,665 | 42,342 | 81,774 | 114,573 | 65,465 | -38,307 |
| 보험 | 307,564 | -29,611 | -27,173 | 12,017 | 9,018 | 86,265 | 257,015 |
| 기금 | 179,108 | -50,463 | -1,061 | 56,681 | 50,233 | 75,527 | 48,170 |
| 외국인 | 108,615 | -19,188 | -968 | 38,230 | 21,675 | 50,174 | 18,690 |
| 투신 | 96,950 | 93,219 | -27,446 | 453 | 3,220 | 21,242 | 6,061 |
| 종금 | 16,054 | -47 | 2,306 | 7,911 | 1,420 | 2,545 | 1,916 |
| 정부 | 24,088 | 7,515 | 11,126 | 4,064 | -1,984 | 9,961 | -6,494 |
| 기타 법인 | 12,453 | 516 | -1,178 | -340 | 8,593 | 3,773 | 1,068 |
| 사모펀드 | -2,997 | 345 | -1,582 | -3,377 | 1,679 | 716 | -778 |
| 개인 | 1,269 | -341 | 50 | 248 | 155 | 950 | 206 |
| 패널 B: 장기물 금리역전 발생기간('17. 9. 25~'17. 10. 31) | | | | | | | |
| 분류 | 전체 | 1년 이하 | 2년 이하 | 3년 이하 | 5년 이하 | 10년 이하 | 10년 초과 |
| 전체 | 111,386 | -3,129 | 12,331 | 31,040 | -7,074 | 45,770 | 32,447 |
| 은행 | 67,513 | 7,989 | 10,904 | 28,149 | 18,808 | 8,466 | -6,805 |
| 보험 | 52,299 | -3,679 | -3,393 | -1,908 | 1,669 | 27,901 | 31,709 |
| 기금 | 23,369 | -4,020 | 125 | 6,255 | 4,941 | 11,300 | 4,768 |
| 외국인 | -17,203 | -4,578 | 10,438 | 5,172 | -26,880 | -4,115 | 2,759 |
| 투신 | -24,385 | -2,059 | -7,374 | -9,748 | -4,987 | -1,116 | 899 |
| 종금 | 3,260 | - | - | 690 | 575 | 1,675 | 320 |
| 정부 | 6,443 | 3,144 | 1,770 | 1,169 | -213 | 1,694 | -1,120 |
| 기타 법인 | 4,109 | 92 | -23 | 1,564 | 1,692 | 771 | 12 |
| 사모펀드 | -3,970 | | -100 | -350 | -2,670 | -780 | -70 |
| 개인 | -49 | -18 | -16 | 47 | -9 | -26 | -25 |

자료: 연합인포맥스

- 보험회사의 만기 10년 초과 장기국채 수요 증가의 원인은 첫째, 제도 변화에 따른 금리위험관리의 필요성 확대, 둘째, 추가 금리상승으로 인한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하락 방지 등임

- 향후 새로운 회계제도(IFRS 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의 금리위험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 움직임에 관계없이 장기 국채 편입 증가
  -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갭 관리를 위해 금리부자산, 특히 장기 국채 비중을 높여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고 있음
- 매매를 이용하여 채권가치평가를 전환, 추가적인 금리상승 시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RBC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금리상승 시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RBC 비율이 하락함
  - 보유채권 매각 및 신규채권 매입을 통해 만기보유증권의 비중을 높이면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RBC 비율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단, 보유채권 매각 및 신규채권 매입은 미실현이익(손실)을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세금, 배당 등의 비용이 발생함

■ 금리상승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에게 기회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산만 시가평가하는 현재의 지급여력제도에서 오히려 지급여력비율을 악화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함

- 금리상승은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로 이어져 투자수익이 증가
- 그러나 금리상승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보유채권의 평가손실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을 하락시킴
  - 특히 RBC 비율이 낮거나 보유채권의 회계상 분류를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전환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부담은 더욱 클 것임

■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은 2021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취약한 보험회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국내 및 미국 기준금리의 연쇄적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회계제도하에서 보험회사의 RBC 비율 하락은 지속될 것임
- 보험회사의 장기 국채 수요(듀레이션 갭 관리 등)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년 초과 장기 국채 발행물량 및 비중이 확대되지 않는 한 장기물 금리역전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kiri

#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OECD 주요 국가의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됨. 첫째, 일반적으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남. 서비스수지가 적자(흑자)인 국가는 대부분 상품수지가 흑자(적자)임. 예를 들면,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는 상품수지가 흑자인 반면 서비스수지가 적자이고, 이와 반대로 미국, 영국 등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는 상품수지가 적자이나 서비스수지가 흑자임. 둘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경우 적자 또는 흑자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국제적 추이와 우리나라의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5일 발표한 2017년 10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10월 서비스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5억 3천만 달러(이전 최대 규모는 2017년 1월 33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서비스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여행수지 적자에서 발생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중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났음
  - 소비 등 내수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현상인데,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서비스수지는 1991년 이후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상품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임
    - 1990년대 초반까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비슷하였으나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1]

- OECD(2016) 보고서(Going for Growth)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45% 수준으로 OECD 26개국 중 최하위임
-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미국 대비 80.8%, 일본의 118.3%로 높은 편이나, 서비스업은 미국 대비 48.8%, 일본의 66.7%로 크게 낮은 수준임[2)]
-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이 OECD 24개국 중 11위, 서비스업은 21위로 나타남[3)]

〈그림 1〉 우리나라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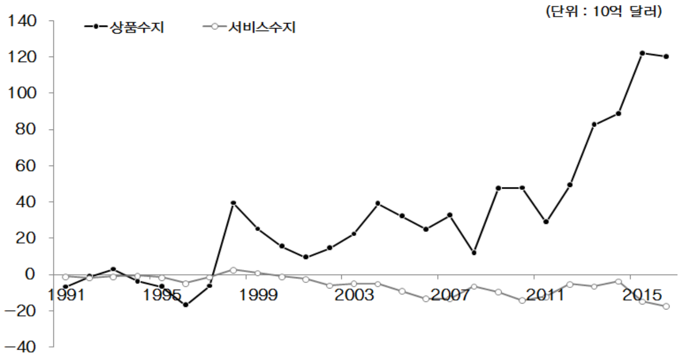


자료: BIS database

■ 본고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OECD 국가(체제전환국 제외)의 서비스수지 및 상품수지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함

■ 첫째, 일반적으로 상품수지가 흑자(적자)인 국가는 서비스수지가 적자(흑자)인 모습이 관찰되는 등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간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남

- 〈그림 2〉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OECD 주요국의 연도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산포도(분산도)를 보여주는데,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집중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몇 개 주요 국가를 살펴보더라도 독일, 일본, 아일랜드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의 경우(〈그림 3〉 참조)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국가(〈그림 4〉 참조)는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를 기록함

1) 이홍직 · 장준영(2007), 「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 원인과 경제적 영향 분석」, 『조사통계월보』, 7월호, 한국은행
2) 한국생산성본부(2015), 「2015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3) 한국생산성본부(2015), 「2015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그림 2〉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와의 관계(1991~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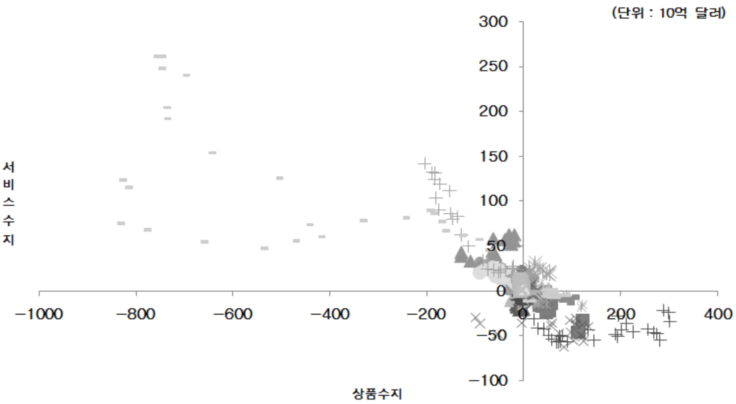


자료: BIS database

〈그림 3〉 독일, 일본, 아일랜드, 핀란드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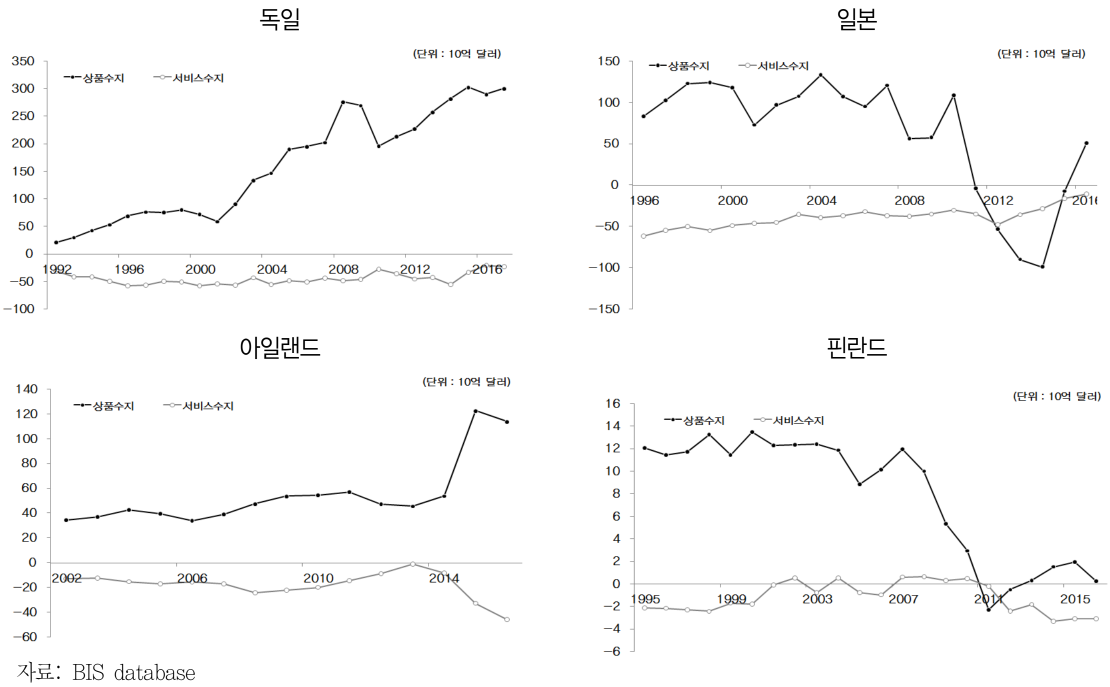


자료: BIS database

〈그림 4〉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상품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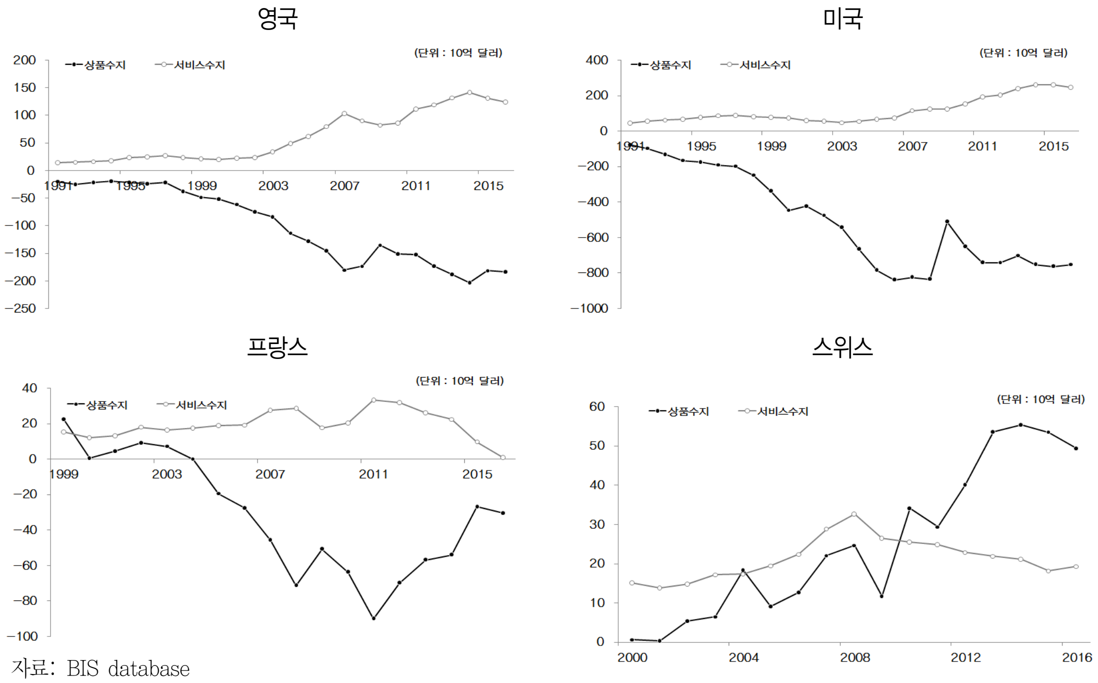


자료: BIS database

- 물론 서비스수지와 상품수지가 동시에 흑자 또는 적자를 보이는 국가(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등)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
- 이러한 모습은 국제무역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임
  - 비교우위론이란 생산성의 절대 수준이 아닌 상대적인 수준에 의해 자국의 비교우위가 결정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절대적 수준이 매우 높으나 상품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것이 다른 국가에 비해 서비스업의 상대적 생산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됨

## 둘째,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경우 흑자 또는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나 서비스수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1991년 이후 서비스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국가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이고,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국가는 없으며, 대부분 흑자기조와 적자기조가 장기화하는 모습임

- 이에 반해 상품수지가 적자와 흑자를 보였던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일본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음

- 〈그림 3〉과 〈그림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수지의 변동성은 상품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 이는 서비스수지의 경우 상품수지보다 흑(적)자 기조가 바뀌기 매우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함

〈표 1〉 OECD 주요국의 서비스추지 추이

| 서비스수지 | 국가 |
| --- | --- |
| 적자기조에서 흑자기조로 전환된 국가 | 아이슬란드, 스웨덴 |
| 흑자기조에서 적자기조로 전환된 국가 | 없음 |
| 흑자기조가 지속되는 국가 |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이스라엘 |
| 적자기조가 지속되는 국가 | 호주, 캐나다, 독일,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칠레 |

-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왔으며, 서비스수지 적자 또는 흑자기조가 장기화된다는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서비스수지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향후 경상수지[4] 흑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며,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임
  - 한국경제연구원(2017)[5]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로 성장한 독일(12.4%, 2014년), 일본(12.1%, 2015년)보다도 낮은 8.1%(2015년)에 불과함 kiri

4)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의 합임
5) 한국경제연구원(2017), 「서비스산업 R&D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2. 보험제도 및 정책


1.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경과와 과제 | 정원석
2.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현황 및 고도화 방향 | 임 준
3.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증가와 과제 | 김세중
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 | 황현아
5.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백영화
6.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 일괄면제규정 일몰과 시사점 | 이승준
7.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회적 인식 개선 | 이정택
8.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 이승준
9.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 | 임 준
10. 산림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 이승준
11.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최근 판례 및 법 개정 | 백영화
12.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방안 | 임 준
13.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 백영화
14. 보험업법 차별금지 조항의 영향 검토 | 김규동
15.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소고 | 정원석
16. 미국 금융선택법안의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 완화와 시사점 | 이승준
17. 전세금보장상품 판매 이슈 검토 | 송윤아
18.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검토 | 김규동
19. 보험종류별 예금보호 금액의 차등화 필요성 | 이승준
20. 데이터 이코노미와 보험 | 임 준
21.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 | 송윤아
22.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와 주택연금 | 오승연
23.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 최창희
2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 | 오승연
25.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방안 | 김규동
26.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 | 정원석

#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경과와 과제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국회와 정부는 당초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과 월납 모두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함. 하지만, 이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노후소득원으로서 기능, 국민의 장기저축에 대한 유인감소 등에 대한 고려가 간과된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됨.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되어 일시납 보험 비과세 한도는 1억 원, 월납식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됨. 보험회사와 정부는 이번 소득세제 개편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디딤돌로 삼아 저축성보험의 노후소득보장 기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국회와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고 금융 및 보험소득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1)]을 개정하였음

-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최고 세율 인상 및 금융소득 과세에 대한 비과세 축소 등 수년 동안 이어져 온 과세기반 강화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율 최고 세율의 경우 5억 원 초과 40% 세율 구간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강화되었음
- 특히 보험과 관련해서는 서민 자산형성과 노후자금 마련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조건이 조정되었음[2)]
  -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됨
  - 지금까지 비과세 한도가 존재하지 않던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기간 5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월적립식 보험은 월 15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신설됨

1) 본고에서는 특별한 구분이 없는 한 소득세 과세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소득세법으로 통칭함
2) 기획재정부(2016. 12. 28),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당초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즉시납과 월적립식 보험 모두 한도 1억 원으로 논의되었음

- 정치권 일부에서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보고 보수적인 수준의 비과세 한도를 주장함
  - 이는 비과세 항목을 줄여나가고 있는 정부의 기조와도 일치하여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의 대폭 축소가 추진되었음

■ 하지만 이는 저축성보험의 노후소득원으로서 기능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장기저축성보험과 연계된 보험회사 연금보험의 적립액 비중은 전체 개인연금[3)]의 63.8%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노후소득원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4)]
- 또한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중 절반이 저축성보험료임을 고려할 때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는 보험회사 및 설계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5)]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최종안 발표는 정부의 비과세 축소 원칙과 국민의 노후소득원 마련 및 이해관계자들에 관한 고려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일시납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감소와 월납식 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신설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금융소득 비과세 축소방향이 반영된 것임
  - 비과세 한도 축소 및 설정은 장기저축성보험 가입유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월납식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 원으로 당초 안보다 다소 높게 정한 것은 국민의 노후소득 마련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월 150만 원을 10년간 납입할 경우 총납입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이는 당초 논의되었던 세제혜택 한도 1억 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

---

3)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음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 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5) 정원석(2016. 12. 19),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 『KiRi 리포트』, 특별호, 보험연구원

수익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저축성보험의 수익률 제고는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임

kiri

KiRi 리포트 2017.1.9.

보험제도 및 정책

#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현황 및 고도화 방향

임준 연구위원

요약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경우 주로 단순한 보험사기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만 이루어지고 있음.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이전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이루어져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가 제한적임. 향후 조직적 보험사기와 같은 복잡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시점도 보험금 지급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내 보험사기방지체계는 크게 '인지 → 조사 → 수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사기 의심 건을 인지하게 되면, 보험회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후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단계임
- 인지, 조사, 수사의 3단계 가운데, 본고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인지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시스템의 한계 및 고도화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함

## 현재 보험사기 인지를 위한 모니터링은 보험회사와 금융당국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급심사팀에서 보험사기 인지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담당자의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의존하고 있음
  -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① 이전에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계약자의 청구 건이나 ② 비록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큰 청구 건임
- 보험회사 이외에 금융당국에 의해서도 보험사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청구 패턴을 보이는 병원이나 자동차정비업체를 찾아내는 방식임

## 현행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Sparrow(2000)의[1] 의료보험사기

1) Malcolm K. Sparrow(2000), *License to Steel*

모니터링 7단계를 인용하고자 함(〈표 1〉 참조)

- Sparrow(2000)가 다단계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이유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임
  -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사람들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개별 건(레벨 1)별로 볼 때는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지만 지역별(레벨 6(b)) 비교분석을 실시할 경우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음[2)]

〈표 1〉 의료보험사기 모니터링 7단계

| 단계 | 설명 |
|---|---|
| 레벨 1 | Claim Level: 개별 청구건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 가능한 보험사기 사례에는 남자가 자궁절제술을 받았거나 갓난아이가 정신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됨 |
| 레벨 2 | One Patient/One Provider Relationship: 의사의 전공분야와 환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치료빈도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나는지 모니터링 |
| 레벨 3 | (a) Patient Level: 환자별 진료/청구 관련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 색출 |
| | (b) Provider Level: 의사별로 의료행위 관련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 색출 |
| 레벨 4 | (a) Patient Group(covered by One Policy)/One Provider: 하나의 보험에 의해 그룹화되는 여러 명의 환자와 한 명의 의사 간 관계 |
| | (b) One Patient/One Practice(which may involve Several Providers): 병원의 사무장이 특정 환자에 대한 사기의료행위를 병원 내 여러 의사에게 분산시키는 경우가 해당됨 |
| 레벨 5 | One Policy/One Practice: 레벨 4(a)와 레벨 4(b)가 결합된 형태 |
| 레벨 6 | (a) Defined Groups of Patients: 특정 환자 그룹(예,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요양원)의 의료행위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냄 |
| | (b) Defined Groups of Providers: 여러 명의 의사가 공모하여 자신의 환자를 서로 다른 의사에게 보내는 사기의료행위가 해당됨 |
| 레벨 7 | Multiparty, Criminal Conspiracies: 조직적 범죄 네트워크에 의한 의료보험사기로 관련 환자나 병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자료: Malcolm K. Sparrow(2000), *License to Steal*

## Sparrow(2000)의 모니터링 7단계 관점에서 평가한 국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레벨 1과 레벨 3 수준임

- 보험회사 지급심사팀의 모니터링은 〈표 1〉의 레벨 1과 레벨 3(a)에 해당되고,[3)] 금융당국의 병원 및 자동차정비업체 조사는 레벨 3(b)에 해당됨

2) 약 400여 명이 가담한 2011년의 태백지역, 그리고 1,300여 명이 관련된 2012년 경남지역 대규모 보험사기가 특정지역 보험사기의 예라고 볼 수 있으며, 〈표 1〉의 레벨 6(a)에 해당됨
3) 청구금액이 큰 경우를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레벨 1에 해당되고, 보험계약자의 과거 청구 이력이 많은 경우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레벨 3(a)에 해당됨

- 레벨 1과 레벨 3 위주의 모니터링 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은 레벨 6이나 레벨 7 모니터링 단계의 비정상적 패턴 색출이 어렵다는 점임
  - 또한, 금융당국의 레벨 3(b) 모니터링은 보험금 지급 이전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이후의 모니터링이라는 한계가 있음4)

**따라서 보험사기를 조기에 적발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레벨 1 또는 레벨 3과 같은 단순 유형을 넘어 레벨 6이나 레벨 7과 같은 복잡한 유형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함
- 둘째, 모니터링 시점을 보험금 지급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김 KiRi

4)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경우 회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 모니터링은 사전 모니터링에 비해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가 제한적임

#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증가와 과제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지난 2016년 10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종신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소득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옵션임. 그러나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적합한 상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것임.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단기적인 영업실적보다는 국제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 종합적인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16년 10월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1)]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하도록 함
  - 또한 상품설명서 등 각종 안내 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하였음
  - 최근 연금전환 종신연금을 연금상품으로 오인하여 가입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2)] 이러한 조치들은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기능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는 종신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소득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적합한 옵션임

  - 과거부터 대부분의 종신보험에는 연금전환 기능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연금수요가 증가하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10. 12),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2)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1월~9월 중 연금전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53.3%를 차지함

면서 2010년 이후 보험회사들은 종신연금의 연금전환 기능을 부각시켜 종신보험을 판매해 왔음

- 소비자들의 보험 수요가 사망보장에서 노후소득보장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보장을 모두 제공하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판매증가는 소비자 니즈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상품의 개발을 보험회사에 제시했으며, 이후 연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이 출시되어 활발히 판매됨

■ 그러나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적합한 상품이 아니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것임

-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일차적으로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있는 소비자가 차후에 노후소득보장으로 보장니즈가 바뀔 것에 대비하는데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 니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대응하여 노후소득보장에 집중한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 단기적인 영업실적보다는 종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하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부가된 각종 옵션과 보증을 부채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사망률 또는 이자율을 보증하는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부채 증가가 가능함
- 또한 향후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대규모 연금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에 있어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KiRi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조사방안 도입의 필요성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 도로에서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의 하나로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계획을 발표함. 이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규명 및 관련 조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요구됨.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하는 방안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사고 조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및 셔틀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을 밝힘
  - 종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16년 11월 1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허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구역에서만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됨[1)]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①----------------------------------------------------------------------------- |
| 1.ㆍ2.(생략) | 1.ㆍ2.(현행과 같음) |
|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할 것(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것 |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임시운행이 가능하게 됨

-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의 하나로 도심구간에서 일반인 탑승 자율주행자동차 셔틀서비스 제공 계획 및 평창올림픽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시험운행 추진 계획을 밝힘[2)]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이 도로 전체로 확대되고, 도심구간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셔틀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함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위험의 현실화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나, 그에 못지않게 사고 원인 규명 및 사고 후 조치에 관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
  -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규명을 자율주행자동차 제작회사에게만 맡기지 않고 경찰 등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고 발생 시 그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및 사고 관련 데이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연인인 운전자가 실제 운행을 지배하는 정도가 낮으므로, 운전자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조사만으로는 사고원인이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움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에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 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3)] 이들 장치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경찰의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최근 테슬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4)]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 차량 데이터에 대한 경찰의 접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함
  - 최근 테슬라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시내 주행 중 도로를 벗어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 이와 같이 임시운행 중 사고로 운전자 등이 모두 사망하는 경우, 사고 원인 규명 및 그에 따른 책임 배분을 위해서는 자율주행기록 등 관련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자동차 보급(Deployment)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사고 발생 시 관련 데이터를 경찰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5)]

-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찰이 그 운행 중 상황을 파악할

---

2) 국토교통부(2017),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p. 78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
4) YTN(2016. 11. 4), “美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로 2명 사망”, http://www.ytn.co.kr/_ln/0104_201611041447192116.
5)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자동차규정(California Vehicle Code) § 38750에 근거하여 자율주행차 시험운행(testing) 관련 규정을 2014년 9월부터 시행하였고, 보급(deployment) 관련 규정은 현재 작업 중임. 자율주행차 보급 규정은, 기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에 시험운행 이후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초안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5년 12월 16일 1차 초안이 발표된데 이어 2016년 9월 30일 개정안이 발표되어 현재 의견수렴단계를 거치고 있음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면서, 그 중 하나로 자율주행자동차 제작회사에 데이터 제출 의무를 부과함[6)]

- 자율주행자동차는 충돌 직전 30초 및 충돌 후 5초간 또는 완전 정차할 때까지의 모든 차량 기능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센서데이터(Autonomous Technology Sensor Data)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데이터 기록장치(Autonomous Technology Data Recorder)를 장착해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제작회사는 사고 발생 시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율주행 기술데이터 기록장치를 제공해야 함



■ 위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규정 개정 논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부터 도심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힌 바,[7)] 사고 발생 시 관련 시스템 작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체계에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회사가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영장에 의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함
  -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이 확대되고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고 관련 데이터를 반드시 영장에 의해 수집하는 것은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영장에 의하지 않고 데이터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규제인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데이터 제출 의무를 사고 전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자율주행 사고 원인 규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시운행 단계부터 사고 원인 규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kiri

---

6) Revised Draft Deployment Regulations - Released September 30, 2016; Express Terms/ Title 13, Division 1, Chapter 1/Article 3.7 – Autonomous Vehicles
§ 227.58. **Application for a Permit for Post-Testing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 on Public Roads.**
(a) (6) The manufacturer shall certify in the application that the subject autonomous vehicles are equipped with an autonomous technology data recorder that captures and stores **autonomous technology sensor data for all vehicle functions that are controlled by the autonomous technology at least 30 seconds before and at least 5 seconds after or until the vehicle comes to a complete stop after a collision with another vehicle,** person, or other object while the vehicle is operating in autonomous mode. The data captured and stored by the autonomous technology data recorder, in a read only format, must be capable of being accessed and retrieved by a commercially available tool
(A) The manufacturer shall certify that it will release autonomous technology sensor data as specified in this section that is in its possession or control to law enforcement or peace officers within 24 hours of their request for such data

7) 조선일보(2016. 1. 6), “운전기사 없는 무인버스, 12월부터 판교서 첫 운행”

KiRi 리포트 2017.2.6.

**보험제도 및 정책**

#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백영화 연구위원


**요약**

현재 1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보험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한도 인상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주된 내용임


- 2017년 1월 현재 1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소비자 권리 강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소비자 권리 강화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제안된 법안들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음
    -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
    -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 보험금 지급 단계 등에서 보험회사가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다는 점에 대해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 아울러 보험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금액을 인상하고,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안됨
  - 아래에서는 각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지급 청구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 시점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박용진 의원안)[1]

---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동 보험업법 개정안 외에도,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보험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경우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절차 미이행 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계류 중임

- 박용진 의원은 최근 생명보험회사의 자살보험금 사태에서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었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을 지적
- 이에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회신을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도록 함[2)]

##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엄격히 규율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됨(김정재 의원안, 김영주 의원안)

- 현행 보험업법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가입 시 비례분담 원칙[3)]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김정재 의원은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김영주 의원은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 및 과징금(해당 보험계약 연간수입보험료의 20% 이하)을 모두 부과하는 내용을 제안함[4)]
- 김영주 의원은 중복계약 체결 확인 내용을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리는 방안도 함께 제안함

##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단계 등에서 보험회사가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김해영 의원안)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

---

2) 한편, 이에 대하여 소관위인 정무위원회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 시부터 보험회사의 회신 시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소멸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끝난 후에 시효기간(보험금청구권의 경우 3년)이 새로이 진행되는 반면, 소멸시효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사유가 있는 동안 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어 있다가 해당 사유가 끝난 후에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정무위원회는 법체계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6. 11)

3) 동일인이 2~3개의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치료비의 2~3배가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비를 상품별로 비례분담하여 보상하는 것임

4) 이에 대하여 정무위원회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되 위반주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보험회사의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보험회사 임직원의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 모집종사자의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을 제시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7. 1)

험금 지급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음(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 이에 더하여 개정안에서는 보험금 지급 단계 등에서도 설명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5]
  - 또한, 이러한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업무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제안됨(박용진 의원안)

- 박용진 의원은 손해사정업무 등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제3자에게 재위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보험회사의 자회사들이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
- 이에 업무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재위탁을 허용하자는 것임[6]
- 한편, 박용진 의원안에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 시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탁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음

## 한편,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한도 인상 등 제재 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 임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제재의 내용을 '직무정지의 요구'에서 '직무정지'로 변경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인상(연간 수입보험료의 20% → 50%),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과징금 상한 인상(연간 수입보험료의 50% → 100%), 채권 · 주식 소유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인상(장부가액 합계액의 20% → 100%) 등임
  -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5천만 원 → 1억 원)

---

5) 김해영 의원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절차 미이행 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아울러 발의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정무위원회는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과잉금지원칙 위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탁에 관한 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율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6. 12)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신설·조정함
  -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소유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신설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위반을 과태료 대상에서 과징금 대상으로 변경
  - 부수업무 미신고, 대주주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신설
-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함

##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채권 또는 주식 소유 합계액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이종걸 의원안, 김영주 의원안)
-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을 보험협회가 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협회는 표준약관의 제정 및 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임(김종석 의원안 2개)
-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임(박완주 의원안) kiri

〈표 1〉 계류의안 목록

| 번호 | 의안명 | 제안일자 | 주요 내용 | 진행 상황 |
|---|---|---|---|---|
| 2000395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1인) | 2016. 6. 22 | 자산운용비율 관련 | 소관위 접수 |
| 2000833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2인) | 2016. 7. 12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 소관위 접수 |
| 2001704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2016. 8. 19 | 업무위탁 관련 | 소관위 접수 |
| 200234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1인) | 2016. 9. 20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관련 | 소관위 접수 |
| 2002931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 2016. 10. 26 |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관련 | 소관위 접수 |
| 2003104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등 10인) | 2016. 10. 31 | 기초서류 신고 관련 | 소관위 접수 |
| 2003509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0인) | 2016. 11. 11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 변경 | 소관위 접수 |
| 200400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6. 11. 30 |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 관련 | 소관위 접수 |
| 200412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등 11인) | 2016. 12. 6 | 표준약관 관련 | 소관위 접수 |
| 2004948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 2017. 1. 3 | 자산운용비율 관련 | 소관위 접수 |
| 2005110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3인) | 2017. 1. 16 | 설명의무 관련 | 소관위 접수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 일괄면제규정 일몰과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보험업의 특정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일괄면제규정(BER)이 2017년 3월 31일 일몰과 함께 폐기될 예정임. EU는 보험업 공동행위도 다른 산업과 같이 경쟁촉진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쟁법의 틀 안에서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보험업법상의 근거인 상호협정 운영에 있어 EU에서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상호협정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되 보험회사의 법률 리스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유럽연합(EU)에서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이하 '일괄면제규정'[1]))이 2017년 3월 31일 부로 일몰되어 폐기될 예정임
  - 일괄면제규정의 폐기 후 모든 보험업 공동행위는 EU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쟁제한 공동행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음
  - 본고는 EU의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일괄면제규정이 제정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및 적용제외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봄

- EU 실행조약 제101조[2](이전 EC 조약 제81조와 동일)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적용을 면제하는 조건을 담고 있음
  - 제1항과 제2항에서 유럽 공동시장 내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자들 간의 협정, 협회의 의사결정 및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들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 제3항에서 공동행위가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1) Insurance Block Exemption Regulation,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2)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2008/C 115/1) Article 101

편익의 상당부분을 소비자가 갖는 경우 제1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3]

- EU는 보험업 공동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이후 검토와 개정을 통해 적용면제 대상 공동행위 범위는 점차 축소하여 왔음

  - 1992년 EC 위원회 규칙(Commission Regulation) 제3932/92호가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1993년 4월 1일부터 일부 보험업 공동행위에 경쟁법의 적용이 면제됨[4]
    - 통계의 공동 집적 및 위험보험료 산정, 비구속적 표준약관의 제정, 특정 위험에 대한 공동(재)보험, 안전장치 인가 등 4개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함
  - EC 집행위원회는 2009년 일괄면제규정 운영에 관한 검토 보고서[5]를 제출하면서 경쟁법 적용면제의 범위를 통계의 공동집적과 특정 위험에 대한 공동(재)보험으로 축소하도록 권고함
  - 그리고 지난 2016년 검토 보고서[6]에서는 특정 보험업 공동행위의 특수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경쟁법 적용의 틀 안에서 충분히 공동행위 사안별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림

- EU의 일괄면제규정 폐지와 같이 개별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경쟁법 적용제외의 축소라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넓혀왔음

  - 일본의 경우도 1995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업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지진 등과 같은 손해보험 특정위험의 공동인수로 한정한 바 있음
  - 우리나라도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에는 금융·보험업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1996년 OECD 가입 이후 1999년 개정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근거가 되는 보험회사 상호협정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나 보험회사 법규리스크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보험업법 제125조의 상호협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공동행위[7]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8

3) 즉, 경쟁제한성보다 경쟁촉진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함
4) 2003년 3월 31일 일몰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10년 3월 31일 일몰되는 EC 위원회 규칙 358/2003으로 대체됨
5) EU는 일괄면제규정에 일몰조항을 넣고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최소한 일몰 1년 전까지 경쟁법 적용제외의 현황 및 연장 필요성을 담은 검토 보고서를 EU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이사회 규칙 제1534/91호 제8조)
6) European Commission(2016. 3 .17),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Functioning of Commission Regulation(EU) No 267/2010”
7) 생명보험은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과 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 2건, 손해보험은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협정과 신상품개발이익보호에 관한 협정 외에 공동인수보험계약의 대차청산 협정, 재보험 및 재재보험 대차청산 협정, 해

조[8])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9])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 보험업은 금융위원회의 전문적 금융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 경쟁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 증가문제가 대두되어 왔음[10])

-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일괄면제규정 폐기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우리나라 보험회사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법규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큼[11]) KiRi

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협정,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협정 등 7건의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따라서 상호협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험회사의 공동행위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됨

8)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면제하므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상호협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됨

9)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10) 보험업에 대한 이원적 경쟁규제 및 이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증가사례는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랑(2014),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참조

11) 예를 들어, 생명보험회사의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 사건에서 보듯 보험회사 간 이자율 관련 정보교환과 같은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보험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2014년 대법원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됨. 그러나 담합혐의로 인하여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의 평판이 저하되고, 소송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법률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음(이승준(2014), 「보험회사 이자율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KiRi 리포트』, 제294호, 보험연구원).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상호협정의 급진적인 폐지는 보험회사에 유사한 법규리스크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사회적 인식 개선

이정택 연구위원



요약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강력범죄의 대부분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률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낮은 상태임.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되기 전에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미치료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 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민영보험도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강력범죄 대부분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그 비중이 미미함

- 정신질환자에 의한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2000년 3,349건에서 2015년 6,890건으로 증가하였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1]는 2000년 148건에서 2015년 678건으로 증가함(〈그림 1〉 참조)
-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은 2015년 9.71%로, 비(非)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비중(1.46%)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대부분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함(〈표 1〉 참조)[2]
- 그러나 2015년 전체 범죄 발생건수 1,771,390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6,890건으로 0.39%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전체 강력범죄 중 2.63%로 미미함

1) 살인(미수),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등
2)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정신지체, 인격 장애 등의 중증 정신질환자임

〈그림 1〉 정신질환자의 전체범죄와 강력범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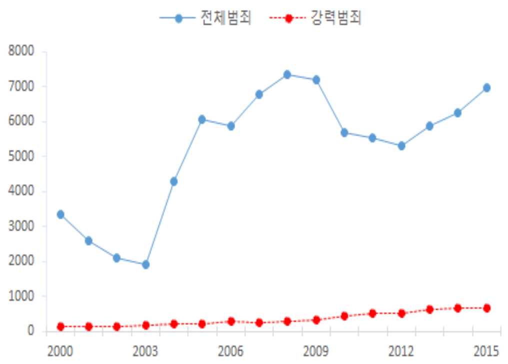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범죄통계

〈표 1〉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

| 구분 | 정신질환자 | 비정신질환자 |
|---|---|---|
| 2000 | 4.42% | 0.76% |
| 2003 | 8.47% | 0.78% |
| 2006 | 4.57% | 0.80% |
| 2009 | 4.29% | 0.90% |
| 2012 | 9.48% | 1.38% |
| 2015 | 9.71% | 1.46% |

자료: 경찰청범죄통계

■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자의 의료이용률은 낮은 상태임

- 기분장애, 신경증 및 스트레스 장애 치료환자는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대표적인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0년 대비 2015년 기준 14%, 조울증은 48% 증가함(〈그림 3, 4〉 참조)[3)]
- 그러나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 22.2%만이 의사나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미치료 기간(DUP)[4)]은 84일로 영국, 미국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임[5)]
- 정신질환 관련 사회적 편견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매우 낮음[6)]
  -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가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주며, 이는 정신질환자의 낮은 의료이용률을 초래함

3) 건강보험통계연보(2004~2015)
4) 증상이 처음 발현한 후부터 처음 치료를 받게 되는 기간
5) Edwards et al(2002),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 and Outcome in Schizophrenia", *Psychol Med*, 32(3); 유정민 외 3인(2011), 「초발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미치료 기간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 2권 0호
6) 국립정신건강센터(2015),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2〉 조현병(F20~F29) 진료환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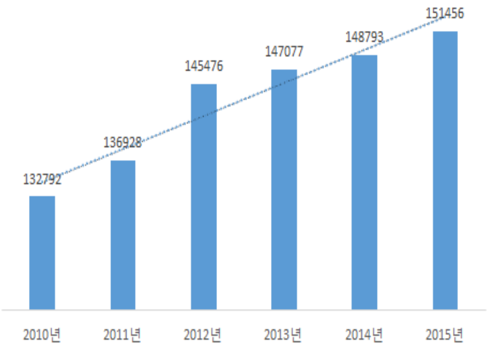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 조울증(F31) 진료환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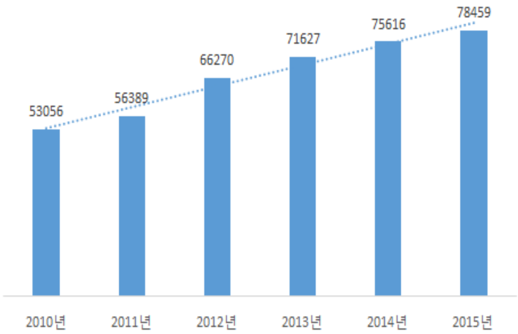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



-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미치료 기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 조현병 환자가 일으키는 폭력의 50%가 발병시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시점 사이에 일어남[7]
  -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미치료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신질환자들이 발병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일반대중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은 물론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함

- 또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 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강제입원제도가 강화[8]되는데,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해 수용 방식의 입원치료 중심으로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가 구

7) Nielssen(2011), “Violence in first-episode psychos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chizophr Res*
8) 현행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성 또는 입원의 필요성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입원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또한 입원심사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고, 현재는 1명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만으로 입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받도록 하고, 1인의 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병원의 의사로 하도록 함; 염형국(2016),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월간복지동향』, 제214호

축되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은 지역 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 공급을 확충해야 함

## 민영보험도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0년간 법제개편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민영보험의 차별은 개선된 상태이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범위는 확대되었음[9)]
- 그러나 실무적으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경험통계 부재로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고, 경증 정신질환자도 해외보험회사와 비교하면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내세워 가입이 어려운 상황임[10)]
  - 정신질환 관련 통계의 미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인수기준과 위험률 부재로 인해 정신 질환 보장 상품을 공급할 수 없고 정신질환 관련 통계를 구축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
- 따라서 건강보험·의료급여 통계와 같은 국민통계를 활용하여 정신질환에 따른 다양한 인수기준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면, 민영보험에서 정신질환 보장은 개선될 수 있음 KiRi

---

9) 2005년 국가인권위의 민간보험에서 장애인차별 개선 권고 이래, 보험업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및 거부 행위를 금지하였고, 상법개정으로 사망보험에서 심신박약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을 유효로 하였음. 또한 2015년 12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으로 2016년 1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하였음
10) 국가인권위원회(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정보통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위험을 전가하는 사이버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들로는 경험통계 부족, 비독립적리스크, 사이버 손실에 대한 인식 결여, 사이버보험의 복잡성 등이 있음. 따라서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통계의 표준화 등의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폰 사용 등과 같은 정보통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일상적 활동의 편의성 및 효율성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에 동반한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G7 국가 중 5개 나라에서 사이버리스크를 경제활동 관련 최고 또는 두 번째로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1]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사이버리스크와 관련된 프로젝트[2]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 차원의 리스크 경감 방안과 대책 등 정책적 대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사이버보험 시장의 확대가 전망됨
  - 본고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의 가속화와 함께 높아지는 사이버보험 시장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봄

- 사이버리스크는 사이버 공격에 의한 또는 우발적인 정보통신체계의 기능장애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

1) World Economic Forum(2017), “Global Risks Report 2016”, 12th Edition
2) OECD는 디지털경제의 정보보안과 사생활(Security and Privacy in the Digital Economy) 작업반을 통해 사이버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재무적 손실이나 평판의 저하를 가져오는 리스크로 정의될 수 있음

- 사이버리스크는 사생활의 침해(privacy breach), 서비스장애(denial of service), 사이버 사기(cyber fraud), 사이버 협박(cyber extortion)과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사이버보험은 개인과 기업이 사이버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위험 등을 보험시장을 통해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리스크 경감유인이 제공됨

- 사이버보험을 찾는 과정에서 계약자는 보유한 리스크의 양과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보장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게 됨
- 보험계약 인수과정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리스크 관리 정도와 실행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보험계약 내용에 반영하면서 계약자가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유인을 제공함
- 특히 기업이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는 만큼 보험료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

■ 사이버보험 시장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며 단독보험의 형태와 함께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보험의 특약 형태로도 공급되고 있음

- 2016년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단독보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35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미국 보험회사가 30억 달러, 유럽 보험회사는 3억 달러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보고됨
- 다른 배상책임의 기업 가입률이 100%에 달하는데 비해 사이버보험은 미국에서 모든 기업의 20~35%와 유럽 중대형회사의 20~25%만 가입한 정도에 불과함

■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들로는 불충분한 경험통계, 독립적이지 않은 리스크, 사이버 손실에 대한 인식 결여, 사이버보험의 보장위험 및 상품의 복잡성 등이 있음

- 사이버리스크는 새로운 리스크로 아직 적정 요율 산출을 위한 경험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사실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피해자 성향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사이버리스크는 공통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이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계약자들 사이의 리스크가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보험 인수에서 오는 리스크를 증폭시킴
- 사생활 침해, 서비스장애 등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많은 기업에서 사이버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에 대한 인식은 결여되어 사이버보험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소비자는 단독형이나 특약형 등 사이버보험의 공급형태와 상품별 보장리스크의 차이 등 사이버보험 구매 단계에서의 복잡성과 보험금 청구 시 불확실성 때문에 구매를 망설임

■ 사이버보험 시장을 통한 사이버리스크 경감과 손실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고려도 필요함

- 우선적으로 사이버보험 시장의 발달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간극을 정부와 국제기구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향후 발표될 OECD 정책보고서[3] 등에 이러한 내용이 담길 예정임

■ 사이버보험 상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가 가용하도록 사이버사고로 인한 피해, 특히 개인정보와 같은 소비자 보호와 연관되는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를 관련 규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사고 및 손실의 유형을 표준화하여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을 용이하게 만드는 효과
- 정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필요 시 제공
- 사고를 당한 기업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유인 또는 요건을 개발

■ 전반적인 사이버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이버리스크 및 디지털보안 관련 정책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전사적리스크관리(ERM)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경제사회 번영을 위한 디지털보안리스크 관리에 관한 2015년 OECD 이사회 권고안[4]은 정책적으로 기업에 사이버리스크 노출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도록 요구
- 기업지배구조 차원에서 사이버리스크를 넓은 개념의 전사적리스크관리에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유도
- 보험감독자를 포함한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담당 정부기관 사이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도 사이버리스크의 정부차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보통신강국인 우리나라도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사이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앞에서 제기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3) OECD 산하 보험 및 사적연금 위원회(IPPC)는 사이버리스크 보험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논의를 담아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임
4) OECD(2015), "2015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Digital Security Risk Management for Economic and Social Prosperity"

-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 및 속도 등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강국이므로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광범위하고 사이버 공격[5])도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정부는 우선적으로 사이버보험 활성화의 주된 장애물인 사이버리스크 관련 경험통계의 부족과 표준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KiRi

5) 예를 들어, 지난 3월 초 롯데면세점은 DDOS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됨

#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

임준 연구위원




**요약**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사기 조사전략 가운데 하나는 이제까지 적발된 보험사기를 유형화하고 그러한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을 집중하는 것임. 이러한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는 보험사기 유형이 변화할 경우 새로운 유형을 조기 인지하여 자원을 신속히 재배치하기 어렵다는 데 있음. 이러한 문제점은 조세(탈세), 안보(테러) 등과 같은 위험통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세무조사 분야의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대처하고 있음. 보험사기 분야의 경우 현행 조사전략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 사례를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사기 조사전략 가운데 하나는 기존에 적발된 보험사기를 유형화하고, 그러한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을 집중하는 것임
  - 특정 유형에 자원을 집중하게 되면 그 유형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그 결과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적발 성과가 제고되어 현행 보험사기 조사제도의 효과에 대해 과신할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보험사기 조사전략은 보험사기 유형이 변화할 경우 새로운 유형을 조기에 인지하고 자원을 신속하게 재배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짐
  -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험사기의 경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조세(탈세), 안보(테러) 등과 같은 위험 통제(risk control)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함[1)]

- 본고에서는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분야의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random inspection) 사례를 소개함[2)]

---

1) Malcolm K. Sparrow(1995),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Oversight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2) 세무조사 사례는 오윤 · 박명호(2007),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인용

- 미국은 탈세혐의자에 집중한 세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 초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인 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이하 'TCMP')을 도입하였음

  - TCMP는 개인 및 개인 유사단체 등 개별납세자의 납세신고서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후에 신고서상의 납세순응행위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제도임
    -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1963년부터 1988년까지 3년을 주기로 개인, 소규모 법인, 조합 등을 대상으로 행해졌음
  - TCMP의 목적은 납세순응 수준을 측정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세무조사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활용하는 데 있었음

- 그러나 성실납세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해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투입 비용 대비 효과 등의 문제로 198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음

- 그런데 TCMP 폐지 이후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2000년에 다시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가 부활하였음

  - 도입 당시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4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음
    - 첫 번째 방안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입하지 않는 것임
    - 두 번째 방안은 무작위 표본 추출이 아니라 탈세 가능성이 높은 혐의자를 선별하여 조사
    - 세 번째 방안은 소규모의 무작위 표본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
    - 네 번째 방안은 매 3년마다 큰 규모의 무작위 표본 세무조사 실시
  - 미국 국세청은 네 번째 안을 채택하고, 2002년 9월부터 2001년 과세연도의 개인소득세 신고서로부터 약 46,000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하기 시작하였음

- 세무조사 분야의 무작위 추출 조사제도는 현행 보험사기 조사전략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단,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 방식과 조사 과정에서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kiri

# 산림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지난 5월 6일 강릉 및 삼척 일원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으며 화재와 병충해 등 산림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는 국토의 63.2%가 산림인 세계 4위의 산림국가이며 소득의 증가에 따라 여가 수요도 크게 늘면서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제도를 통한 산림자원에 대한 위험관리는 미비한 상태임. 산림재해보험은 산주 등 보험가입자가 산림재해에 따른 위험을 보험시장을 통해 전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 과정에서 산불 등 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유인을 제공함. 정부도 보험을 통한 산림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을 추진함. 이번 강원도 화재를 계기로 산림재해보험 도입을 통해 보험시장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위험관리의 촉진과 정부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지난 6일 발생한 강원 강릉 및 삼척과 경북 상주 일원의 산불로 인하여 인명 피해와 함께 산림자원이 황폐화되고 가옥이 불타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면서 산림재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
  - 진화가 완료된 9일까지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면적은 340헥타[1])로 주택 등 43동이 소실되고 이재민 83명이 발생했으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였음[2])
  -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평균 394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478헥타의 산림이 불탔으며,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의 예방과 관리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3])

- 최근 들어 3대 산림재해인 산불, 산사태와 병충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국가적 산림자원의 훼손과 임업인들의 재산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1) 1헥타 = 10,000제곱미터
2) 산림청 보도자료(2017. 5. 10), "중앙산불사고수습본부 합동조사단 가동"
3) 산림청(2017. 2), 『2016 산불통계연보』

- 최근 5년간 재해피해 현황은 산불로 인해 2,266헥타, 산사태 1,698헥타 그리고 병충해는 528,260헥타에 달하였음

- 본고는 빈발하는 산림재해로부터 임업 가구가 입는 피해를 보상하여 소득 및 경영상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산림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과제를 살펴봄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34만 헥타에 달하며, 국토의 63.2%가 산림으로 OECD 국가 중 핀란드(73.1%), 일본(68.5%)과 스웨덴(68.4%)에 이어 세계 4번째 산림국가임[4)]
  - 지속적인 조림 및 녹화사업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은 2015년 헥타당 146입방미터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림자원 가치도 크게 상승하였음

-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여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등산, 캠핑 등 숲 자원을 활용하는 인구가 늘면서 산림자원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도 나날이 커지고 있음
  - 2014년 산림공익기능의 총평가액은 12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5%이며, 산림이 국민 1인당 249만 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음[5)]
  - 산림이 제공하는 대기정화 기능 등 환경적 편익과 숲 자원을 이용한 휴양서비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소득증가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산림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번 강릉 산불 등과 같은 산림재해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통한 위험관리는 미비한 실정임
  - 민영보험회사가 1969년부터 산림화재보험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연간 계약건수가 10건 미만에 불과함
  - 산림재해공제 사업도 197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저조한 운영 실적으로 1998년부터 중단됨
  - 대부분의 산림 소유주가 영세하여 매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험회사도 가입희망 산주가 소수이기 때문에 수익이 낮고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공급에 소극적임

- 보험제도의 장점은 산주 등 보험가입자가 산림재해에 따른 위험을 보험시장을 통해 전가할 수 있도록

---

4) 산림청(2016. 10), 『2015 산림기본통계』
5) 산림청 누리집 〉 분야별 산림정보 〉 연구 · 교육 〉 알기 쉬운 산림지식 〉 산림상식

만들어 주고 이 과정에서 산불 등 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유인이 제공됨

- 산림재해보험에 대한 탐색과정을 통해 보험계약자는 재해 발생 원인과 피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보장규모를 결정함
- 산림재해보험의 인수과정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위험관리를 하는지를 보험계약 내용에 반영하게 되고 이는 보험계약자의 산불예방 유인을 제공함
  - 특히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하는 대가인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위험관리에 투자와 노력을 들이는 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가격을 통한 위험관리라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함



■ 현재 산림화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산림재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이나 관리보다는 피해복구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정책임

-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뒤 조림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하는 지원정책에 불과함
- 피해복구 비용의 보전은 산림자원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산주 등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지 못함

■ 우리 정부도 보험을 통한 산림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서 산림재해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산림자원의 보험시장을 통한 위험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농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에 대한 보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향후 정책성 보험으로서 산림재해보험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

-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에 이미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이중지원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정부정책을 일원화해야 함
- 산림재해보험은 산주의 자발적 위험관리 노력을 제고하는 면도 있으나,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함
- 보험요율과 보험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임목표준금액의 객관적인 산정과 지역별 위험의 차등화 등을 위한 기초적 통계도 마련되어야 함 kiri

#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최근 판례 및 법 개정

백영화 연구위원

요약

최근 대법원은 대형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위 '1mm 깨알 글씨'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고객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였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음에 있어 해당 동의서상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음. 이에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고객의 인식가능성과 가독성이 높은 방식에 의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대형마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권 뒷면에 약 1mm 크기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음[1)]
  - 해당 사건의 원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형마트 및 그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2)]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하여 동의를 받음에 있어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한 사항[3)]이 응모권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 응모권에 기재된 약 1mm 크기의 글씨는 복권,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경품행사 응모자들이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응모함 옆에 응모권 확대 사진도 부착한 점
  -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223 판결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등

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음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4]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또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5]



-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해당 사건의 경품행사를 위해 사용된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이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함
  - 아울러, 해당 사건의 광고를 통해 단순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하게 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봄
  -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6]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
- 이 밖에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음
  - 해당 경품행사의 기획 및 실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해당 경품행사의 목적은 처음부터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었음
  - 그럼에도 해당 경품행사의 광고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에 광고를 접한 고객들은 단순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경품행사가 단순한 사은행사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인지 여부가 해당 경품행사에 응모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경품추첨과는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하였음
  -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큼

4)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5)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6)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1mm 깨알 글씨'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기는 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음에 있어 정보주체의 인지가능성과 가독성이 높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형식적으로 전부 기재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정보주체가 해당 기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임

- 또한, 2017. 4. 1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 해당 동의서상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음[7)]

  - 기존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있었음[8)]
  - 그러나 여기서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애매하다는 문제 제기하에, 동의서상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그 기재 방법과 형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임
  -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서를 받음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9)]
  - 그에 따라 향후 행정자치부는 밑줄 · 괄호 등 기호, 색깔, 굵고 큰 글자 등을 통해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할 예정임

- 이러한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최근 판례 및 법 개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는 고객의 인식가능성과 가독성이 높은 방법에 의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KiRi

7) 2017. 10. 19.부터 시행
8)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1항
9)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최초 발의된 법안에서는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공포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함

#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방안

임준 연구위원



요약

보험산업 내부에 집적된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외부에 집적된 정보도 함께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으나 현재는 외부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존에는 주로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보험사기에 국한하여 정보공유 이슈에 접근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다른 분야와의 정보공유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영국의 Serious Crime Act 2007 사례를 참고해서 좀 더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은 개별 보험회사 차원의 보험사기 적발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정보(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집적하여 보험사기방지에 활용하고 있음
  - 현재는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보험산업 전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보험금 지급정보)가 집적되어 있음

- 보험산업 내부에 집적된 정보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외부에 집적된 정보도 함께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으나 현재는 제한적인 상황임
  - 보험산업 외부의 집적정보 예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료 관련 정보, 그리고 검·경의 범죄자 관련 정보 등이 해당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5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료에 한정되어 있음
  - 이는 아마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험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정보인 보험료만 포함되고, 보험사기적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편, 보험사기방지 목적에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내부기관과 외부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내용 가운데 보험산업 외부의 공공정보활용과 관련된 조항은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제7조 정도가 전부임
- 보험사기방지 관련 비영리기관이 보험사기 인지단계에서 보험산업 외부의 집적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서 보험사기방지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은 없음

■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조항이 담겨져 있는 Serious Crime Act 2007(이하 'SCA')을 제정하여 범죄행위에 대응하고 있음

- 정보공유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은 특정 사기방지기관(Specified Anti-Fraud Organization, 이하 'SAFO')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SAFO에는 보험사기방지 비영리기관인 Insurance Fraud Bureau, Insurance Fraud Investigators Group 등도 포함되어 있음[1)]
- SCA의 정보공유 조항이 타당성을 가지는 논거 가운데 하나는 범죄 간 연관성임
  - 최근 한 연구에[2)] 의하면, 보험사기범의 상당수가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69%는 보험사기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일종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하였음

■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 성과를 거두었음

-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공공 데이터의 공개를 명령하였고, 그 결과 많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 청구 관련 데이터(Medicare billing data)임

---

1) National Fraud Authority(2010), "Report on Data Sharing for the Prevention of Fraud under Section 68 of the Serious Crime Act 2007"
2) Hill Dickinson and Cifas(2015), "Fraud Report 2015". Cifas는 보험, 은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 · 민간 조직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기방지 기관이고, Hill Dickson은 보험사기에 특화된 법률회사인데, 두 기관은 Cifas의 National Fraud DB와 Hill Dickson의 보험사기 DB를 결합해서 보험사기와 다른 범죄 간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음

- 법무부(DOJ), 연방수사국(FBI), 보건복지부(HHS)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조직해서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였음
  - 5년 동안 약 192억 달러를 환수하였는데, 투입 대비 효과를 계산해보면 투입비용 1달러당 환수액은 약 8달러로 나타남

■ 해외사례를 통해 볼 때, 국내 보험사기방지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첫째, 이제까지 주로 보험산업의 관점에서 보험사기에 국한해 정보공유 이슈를 접근하였는데, 영국사례에서처럼 좀 더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포괄적 접근법을 취할 때, 정보공유의 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범죄 간 연관성임
- 둘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의 비영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보험사기 분석조직을 현행보다 좀 더 공익성이 강한 기관에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kiri

보험제도 및 정책

#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백영화 연구위원

요약

최근 자본시장법규 개정을 통하여 일명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수행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보험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되는 경우, 보험업법규상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 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자체를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음

## 최근 자본시장법규 개정을 통하여 일명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수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분야에서의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이하 ‘RA’)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4단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 RA를 활용한 서비스 유형 구분

| 투자주체 / 활용정도 | 고객(자문형) | 금융회사(일임형) |
|---|---|---|
| RA를 Back office에서 활용 | · (1단계) 자문인력이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자문 | · (2단계) 운용인력이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여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 |
| RA가 Front office에서 서비스 | · (3단계)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 | · (4단계)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16. 3. 25),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는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RA는 후선에서 간접적인 업무 수행만 가능하였음(〈표 1〉 1단계 및 2단계)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금지됨[1]

- 사람이 아닌 RA는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운용인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사람이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RA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하는 정도만 가능했던 것임

- 그런데 2017년 5월 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에게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표 1〉 3단계 및 4단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됨[2]

**향후 보험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되는 경우,[3]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관련 규정 정비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호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을 열거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위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4]
- 인공지능은 위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임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다만, 시행령에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 전까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조항이 없었음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조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가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해 분석할 것
   - 해킹, 재해 예방 및 재발방지, 복구 체계 등을 갖출 것
   -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나 종목에 집중되지 않을 것
   - 매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 분석 후 투자자문의 내용이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할 것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 · 보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 ㈜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3) 보험업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모집뿐만 아니라 상품설계, 언더라이팅 등 여러 분야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고객에게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함
4)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그 밖에도,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 우선, 보험모집종사자[5]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방식은 현행 보험업법하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 자체가 어떠한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한다기보다는, 사람이 보험모집 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사용하는 정도라면, 현행 보험업법하에서도 가능할 것임
  - 통신수단이나 사이버몰 등을 이용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별도의 행위 규제나 세부요건 규제(예컨대 IT 보안 관련 사항)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수는 있겠음

■ 단지 인공지능의 기능,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사람이 보험모집 행위를 하는 정도에서 나아가,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에게 보험모집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보험업법 제83조에서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는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인공지능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인공지능에게 보험모집종사자로서의 자격 요건과 등록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등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임
  - 특히 이 부분은 단지 보험업법상의 보험모집종사자 자격 이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모든 분야에 있어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나 책임 소재 등의 이슈와 함께 논의되고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하는 방안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 등의 보험모집 위탁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9조[6] 또는 그 하위 규정

---

5)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보험모집종사자로 표현하도록 하겠음

6)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개정을 통하여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9조 또는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둘 수 있겠음[7)]

– 보험회사 외에 보험대리점 등이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보험모집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 제99조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8)]

– 아울러, 이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별도의 행위 규제나 세부 요건 규제(예컨대 IT 보안 관련 사항)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겠음

■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별도의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임[9)] kiri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7)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법 또는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8) 보험회사의 모집 위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과는 달리,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의 모집 위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서는 별도로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여, 만약 인공지능에 대한 모집 위탁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법 조항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9) 참고로 최근 EU의회에서는 AI와 로봇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관련 산업을 더욱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로봇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2017년 1월 12일), 이에 의하면 향후 로봇 관련 입법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가장 정교화된 자율 로봇(the most sophisticated autonomous robot)에게는 '전자적 인간(electronic person)'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창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port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59.f)항)

KiRi 리포트 2017.7.10.

보험제도 및 정책

# 보험업법 차별금지 조항의 영향 검토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2017년 1월 25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험 직업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과 관련이 있음. 보험회사가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보험가입 거절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일부 보험회사들은 직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더라이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될 경우, 시장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2017년 1월 25일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에는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됨[1)]

-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101조의2(차별금지)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계약자의 차별과 관련되는 것은 보험료 차이와 가입거절 여부로 분류될 수 있으나, 보험료는 보험계약 통계에 근거하여 산출하므로 부당한 차별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보험계약의 가입거절 문제는 2016년 10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당시 박선숙 의원이 지적한 일부 직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거절 내용과 관련이 있음

## 보험가입 거절 논란은 민영보험이 점차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됨

- 과거 민영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사적 영역이고 보험계약 인수는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

1) 의안번호 5272

식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 보험계약을 공적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 이는 민영보험이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실손보험과 같은 공적 보장을 보완하는 보험의 판매 확대와 생명보험·개인연금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민영보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사적·공적 영역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산출과 언더라이팅이 필요함



##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의 직업을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함

- 상해담보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하고 있으며, 질병담보는 직업으로 차별하지 않음
- 일부 직업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들이 있는데, 가입거절 직업은 회사별로 상이하며 직무 수행 중 사고 노출이 많은 직업들이 대부분임
  - 그러나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으며, 일부 저위험 직업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정성적 판단과 보험계약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필요한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 공정한 차별(fair discrimination)은 보험료 산출 기본 원칙의 하나이며, 부과 가능한 보험료로 보장이 불가능할 만큼 위험도가 높거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음
  - 보험회사는 회사 방침에 따라 특정 고위험 직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저위험 가입자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험도와 무관하게 모든 보험계약을 인수하되 (고위험보다는 낮고 저위험보다는 높은) 평균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위험별로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피보험자만 남는 death spiral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일부 고위험 직업 종사자를 가입 거절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실제 위험도에 비해 보험료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보험회사는 고위험 직업 종사자의 상해담보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반영하여 저위험 직업 종사자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고위험 직업의 위험도가 전체 고위험 직업의 평

균 보험료보다도 높다고 판단하면 보험회사는 해당 직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게 됨

– 생명 · 질병 · 상해보험 등은 의무보험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과 같은 공동인수제도는 없음

- 이처럼 보험회사의 인수거절은 합리적인 보험시장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일부개정 법률안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가입 거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통계적 근거 이외에 직업별 위험도의 정성적 판단 및 보험회사별 고유의 인수 지침에 근거하여 인수 거절하는 경우도 있음
  – 보험회사의 정성적 판단은 명확한 통계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가능성이나 위험도를 예측하는 회사별 경험에 근거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보험회사의 정성적 판단이 계약자 차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언더라이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논란 및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든 계약을 인수할 경우,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일부 고위험 직업 종사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확대하여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직업별 보험료 편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새로운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민영보험의 역할이 커지면서 차별 금지를 위한 보험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보험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보험 소비자들이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소비자들이 위험도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님
  – 따라서, 보험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기준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kiri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소고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새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보장 대상자를 확대하고 치매와 관련된 부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할 예정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와 이에 따른 환자 본인과 가족의 부담, 그리고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공적 지원수준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도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됨. 단, 정책이 원활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함

## 새 정부는 치매에서 초래되는 부담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예정임

-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로 인한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치매 질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치매 장기요양 보험 혜택 확대,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그리고 종사자 처우 향상 등으로 구성됨[1)]
  - 또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치매 요양등급 적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을 개인 혹은 가정이 책임지는 것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부담임[2)]

-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장기요양비, 교통비 그리고 시간비용 등 치매환자 한 명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약 2,030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음[3)]
  - 특히, 이 중 장기요양비는 환자 1인당 1,023만 원에 이름
- 많은 국민들이 본인 혹은 가족의 치매 발병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1)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2) 본고에서는 치매의 범위를 노인성 치매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함
3)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수록된 국회 예산정책처(2014) 자료를 재인용

노출되어 있음

- 현재 68.5만 명의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가족의 숫자는 2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4)

- 2010년 47만 명 수준이던 치매환자 숫자는 2016년 68.5만 명을 기록하였고 2050년 271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성 치매 유병률 역시 2050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노인 치매 인구와 유병률

(단위: 천 명, %)

| 구분 | 2010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20년 | 2024년 | 2030년 | 2050년 |
|---|---|---|---|---|---|---|---|---|
| 노인인구 | 5,425 | 6,138 | 6,386 | 6,624 | 8,084 | 9,834 | 12,691 | 17,991 |
| 치매노인인구 | 474 | 576 | 612 | 648 | 840 | 1,008 | 1,272 | 2,710 |
| 치매유병률 | 8.7 | 9.4 | 9.6 | 9.8 | 10.4 | 10.2 | 10.0 | 15.1 |

자료: 보건복지부(2015),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은 모두 충분하지 않은 수준임

- 광역 자치단체 치매센터 17개소, 기초 지자체에 지역 치매센터 45개소 그리고 지역별 치매상담센터 25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5)
  - 이 중 전국 치매상담센터의 인력 중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담요원, 사회복지사 등 전담인력은 677명이며 전담인력 한 사람당 치매환자 수는 957명 수준임
  - 치매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은 총 33.2만여 명으로 치매환자 1,000명당 513.2명 수준임

- 일본의 경우 2017년까지 치매전문병원 500여 개소를 확충하고, 치매 관련 의사 숫자를 4,000명으로, 치매 요양사를 60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 5개년 계획(Orange Plan)"을 추진 중에 있음
  - Orange Plan의 연장선상에서 치매 요양사를 2020년까지 1,200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추진되고 있음6)
  - 일본 정부는 2010년 280만 명이던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2025년 46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7)

4) 중앙치매센터(2017),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
5) 중앙치매센터(2016), 대한민국 치매현황
6) The Japan Times(2017. 6. 17)
7) 일본 후생노동성(2013),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2iau1-att/2r9852000002iavi.pdf

## 우리나라의 치매에 관한 공적 보장은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에 준하여 제공되고 있음

- 과거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은 1~3단계로 구분되었으나, 등급평가가 신체기능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증치매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8)]
- 2014년 경증치매 등급인 5등급을 신설하고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을 "1~5등급"으로 개편함
  -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을 경우 등급에 따라 월 84.3만 원에서 125.2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14년 61.5만 명의 치매 환자 중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 1~4등급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한 치매환자 숫자는 23만 711명에 불과함[9)]
  - 1~4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38.5만 명의 치매환자 중 치매특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는 5,133명에 불과함
  - 나머지 약 38만 명의 치매환자는 등급 외로 분류되어 국가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표 2〉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월 한도액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자료: 보건복지부(201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현재 민영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로 중증치매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총 103개의 치매 보험상품이 있으며 대부분 중증치매 이상을 보장하고 있음[10)]
  - 생명보험회사들은 치매임상평가척도(CDR: Clinical Dementia Rating)[11)] 기준에 따라 중증에 해당하는 3점 이상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함
  - 손해보험회사들은 경우 노인장기요양인정등급 1~4등급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5등급 및 등급 외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8) 남현주(2014), 「독일의 새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 시안에 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1호
9) 중앙치매센터(2016), 대한민국 치매현황
10)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8. 2)
11) CDR 기준은 기억력, 지남력(시간이 지남에 대한 기억의 소실정도), 판단력, 사회활동, 집안 생활, 위생/몸치장 등을 영역별로 관찰하고 각 영역 점수를 종합하여 판단함. CDR 0.5는 최경도 치매, 1은 경도 치매, 2는 중등도 치매, 3 이상은 중증 치매로 분류함

-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은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던 치매환자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공공 및 민간 치매보험 모두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단, 1인당 연간 평균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치매환자 요양 및 치료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함 KiRi

# 미국 금융선택법안의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 완화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이번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금융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은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예상되는 미국 금융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임.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대규모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의 폐기와 그 배경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 일변도의 금융규제 기조를 흔들 수도 있으므로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변화 추이에 대한 면밀한 감시도 필요함

- 미국 하원의회는 지난 6월 8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을 폐기하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을 통과시킴
  - 금융선택법안은 볼커룰,[1] SIFI[2] 규제 등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강화된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폐기하고 영업행위 감독은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전환함

-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금융규제 흐름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공화당은 지나친 금융규제는 미국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하여 왔음
  -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평가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도드프랭크법의 폐기를 통한 금융규제 완화는 예견되어 왔음
  - 찬성 233 반대 186 기권 11의 투표 결과에서 보듯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의원이 대부분 당론에 따라 찬성과 반대 투표를 하였음[3]

1)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단기적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못하도록 규제
2)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3) North Carolina 출신 Walter Jones 공화당 하원의원 1명만 소속 정당과 다른 반대의견을 냄

- 본고는 금융선택법안의 내용 중 FSOC[4]의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SIFI 규제 폐기와 그 배경 논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도드프랭크법 제1장 금융안정법(Financial Stability Act)[5]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FSOC의 조직 구조와 SIFI 지정 절차에 대해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음

- 도드프랭크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높아진 금융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FSOC를 설치하고 비은행 금융그룹을 포함한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함
  - FSOC는 양적 기준을 만족하는 금융그룹 중에서 부실화로 인하여 미국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금융그룹을 SIFI로 지정하고 연준의 강화된 금융감독을 받도록 함[6](〈표 1〉 참조)
  - 이에 따라 FSOC는 MetLife 등 4개 비은행 금융그룹을 SIFIs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GECC[7]는 금융회사의 매각을 통해 SIFI 지정 요건을 해소하여 2016년 6월 지정이 취소되었음(〈표 2〉 참조)

- 금융선택법안은 FSOC의 조직구성이 편향적이고 SIFI 지정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고 자의적이어서 행정권한의 남용에 가깝다는 인식을 바탕에 가지고 제정됨[8]
  - 금융선택법안은 이러한 FSOC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FSOC의 SIFI 지정과 그에 부속된 권한 등을 도드프랭크법에서 삭제하여 비은행 금융그룹의 SIFI 관련 규제를 폐기시킴[9]

- 특히 FSOC의 조직구성은 보험그룹 등에 대한 SIFI 지정 시에도 보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는 SIFI 결정 과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음(〈표 3〉 참조)
  - 보험그룹에 대한 SIFI 결정 시 보험시장 내지는 보험감독에 전문성을 가진 멤버는 투표권을 가진 10명의 멤버 중 1명에 불과하고 다른 보험권역 출신 2명은 아예 투표권이 없음[10]
  - 실제 보험그룹에 대한 SIFI 결정 시 보험권역 전문성을 가진 멤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최종 의사결정은 보험권역 전문성이 없는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례도 있음[11]

---

4)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금융안정감시위원회
5) 도드프랭크법의 제1장(Title 1)은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으로 불리며 연방 재무성 내에 FSOC를 설치하고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FSOC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음
6) 비은행 금융그룹의 SIFI 지정 결정은 FSOC 위원장의 찬성표를 포함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SIFI로 지정된 금융그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강화된 금융감독을 받게 됨
7) General Electric Capital Corporation, GE에 소속된 금융지주회사
8)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2017. 4. 24), “The Financial CHOICE Act – Creating Hope and Opportunity for investors, consumers and entrepreneurs”, pp. 37~49
9) 금융안정법 제113조-117조를 삭제
10) FSOC 위원 중 연방보험청장과 주 보험감독관 1명 등 보험권역 출신 위원은 SIFI 지정 결정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표 1〉 SIFI 지정 양적 기준

| SIFI 지정 양적 기준 | | |
|---|---|---|
| (1)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 | (A) | CDS 파생 회사채 총액 300억 달러 이상 |
| | (B) | 파생부채 35억 달러 이상 |
| | (C) | 총부채 200억 달러 이상 |
| | (D) | 연결기준 레버리지 배율 15 이상 |
| | (E) | 12개월 미만 단기채무 대비 연결기준자산 비율 10% 이상 |

주: (1)을 만족하고 (A)~(E) 중 하나를 만족하면 SIFI 지정을 위한 양적 요건 충족
자료: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

〈표 2〉 미국 FSOC 지정 SIFI

| 금융그룹 | 지정 당시 자산규모 | 주력 금융업종 | 최초 SIFI 지정일 | SIFI 지정 취소일 |
|---|---|---|---|---|
| AIG | 5,490억 달러 | 보험업 | 2013. 7. 8 | - |
| MetLife | 9,090억 달러 | 보험업 | 2014. 12. 18 | - |
| Prudential | 7,090억 달러 | 보험업 | 2016. 9. 19 | - |
| GECC | 5,390억 달러 | 저축대부업 | 2013. 7. 8 | 2016. 6. 28 |

자료: 각 회사 별 Basis of the FSOC's Final Determination, 2012년 말 재무제표

〈표 3〉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조직구성

| 투표권 있는 위원(10명) (voting members) | 투표권 없는 위원(5명) (non-voting members) |
|---|---|
| 재무장관(위원장) | 연방보험청장 |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 |
| 통화청장 | 금융연구청장 |
| 금융소비자보호국장 | |
| 증권거래위원장 | 주(State) 보험감독관 |
| 연방예금보험공사사장 | |
| 파생선물위원장 | 주(State) 은행감독관 |
| 주택금융국장 | |
| 신협 이사장 | 주(State) 증권감독관 |
| 대통령 지명 독립 위원[12] | |

자료: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

- 또한 FSOC의 SIFI 지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글로벌 보험그룹인 MetLife, Inc.에 대한 SIFI 지정 과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소송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음[13]

  -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보험그룹의 재무적 스트레스와 미국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

11) FSOC, Dissenting and Minority Views on MetLife Designaiton(2014) (Views of the Council's Independent Member Having Insurance Expertise)
12) Roy Woodall은 켄터키 주 보험감독청장 출신의 보험감독 전문가
13) 이승준(2016. 4. 11), 「MetLife의 SIFI 지정취소 소송 승소의 의미와 시사점」, 『KiRi Weekly』, 제379호

한 FSOC의 평가가 자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SIFI 지정 논의 초기부터 FSOC의 보험업 사업모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SIFI 지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14)

- FSOC가 SIFI 지정에 사용된 데이터 및 방법론에 대한 MetLife의 접근을 막아 법에 정해진 정당한 반론권 행사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소송과정에서 드러남

## 미국 금융선택법안의 SIFI 규제 폐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비은행 금융그룹 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새로운 금융규제의 도입 과정에서 규제를 받는 금융권역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들 권역 전문가의 의견이 규제도입 과정에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함
- 금융규제가 도입된 후에는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규제당국과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시장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미국 SIFI 규제의 폐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 일변도로 진행되어 온 금융규제의 국제적 기조를 흔들 수도 있으므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변화에 대한 면밀한 감시도 필요함

- SIFI 규제가 실제 폐기되려면 금융선택법안의 미국 상원 통과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이에 필요한 절대 의석인 60석에는 미치지 못하여 규제가 폐기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그러나 향후 공화–민주 양당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수정을 거치는 경우, 해당 법안이 상원의 회를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규제변화 방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kiri

14) 예를 들어, 보험은 장기에 걸쳐 있는 사업모형 특성상 대규모 인출사태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낮아 전통적 보험영업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SIFI 지정 결정 시 비보험권역 전문가들은 은행업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보험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사용함

# 전세금보장상품 판매 이슈 검토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임차인이 적시에 적합한 전세금보장상품을 인지 · 구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금보장상품의 판매대리점 또는 홍보 창구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임.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계약이라는 주요 상품에 부가하여 전세금보장상품을 판매할 때 임차인이 사전에 전세금보장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임차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임차인이 전세금보장상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전세금보장상품 판매 및 홍보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17년 6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76.4%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해 갭(gap)투자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하락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거론되고 있음[1]
  - 2017년 6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전국 75.5%, 서울 72.4%, 수도권 76.4%임(〈그림 1〉 참조)[2]

---

1) 부동산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확보하고 구입한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이며,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하락하여 주택을 매도하여도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전세를 소위 깡통전세라고 함
2) 동 기간 전용면적 85㎡~102㎡ 중형아파트의 매매평균가격은 서울 5억 6,467만 원, 수도권 3억 9,363만 원이며, 전세평균가격은 서울 4억 861만 원, 수도권이 3억 243만 원임

〈그림 1〉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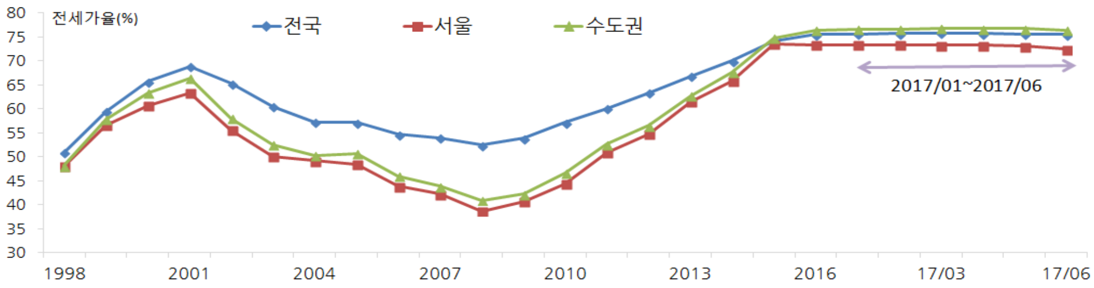


주: 1998년~2016년 기간은 각 연도 12월 값이며, 2017년부터는 매월 값을 보고함
자료: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http://nland.kbstar.com/quics?page=B046962&cc=b057528:b057528

■ 매매가격에 근접한 전세가격과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의 취약성으로 인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금융 상품의 필요성이 커짐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함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그러나 우선변제권의 경우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를 거쳐야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법령에서 제시된 최우선변제금액은 1,700~3,400만 원으로 실제 임차보증금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임차보증금 보호가 취약함[3)]

■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제공함
  - 2013년~2015년까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건수는 38,019건(보험가입금액 4조 6,625억

3)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서울 1억 원 이하, 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 3,400만 원 이하, 수도권 2,700만 원 이하임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10,276건(1조 8,572억 원)임

- 두 상품은 가입대상, 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 체결여부, 보증료율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있으나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할인율이 높음[4)]
  -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이거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어려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음(<표 1> 참조)[5)]
- 지난 6월 정부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킴[6)]
  -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는 달리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가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표 1〉 SGI서울보증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보장상품

| 구분 |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 인수기준 |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br>• 선순위설정총액+임차보증금≤주택가격 | |
| 가입대상 | • 아파트: 제한 없음<br>• 아파트 외 주택: 10억 원 이하 | • 수도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br>• 수도권 외: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
| 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br>• 임대차기간 1년인 경우는 5개월 이내 | 전세계약기간의 50%를 경과하기 전 |
| 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 | 가입 필수조건 아님 | 가입 필수조건 |
| 보증료율<br>(개인) | • 아파트 0.1536%, 아파트 이외 주택 0.1744%<br>• 채권양도약정 미체결 시, 아파트 0.192%, 아파트 이외 주택 0.218%<br>• LTV 60% 이하 20% 할인, LTV 50% 이하 30% 할인 | • 아파트 0.128%, 아파트 이외 주택 0.154%<br>•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30% 할인<br>• LTV 80~60% 시 10~30% 할인 |
| 가입채널 | 홈페이지, 지점, 단종보험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 홈페이지, 지사, 6개 위탁은행(부동산 중개업소 홍보) |

주: 1) LTV=(선순위설정총액+임차보증금)/추정시가
2)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자료: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웹페이지

4) 국가유공자가구,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 등이 사회배려계층에 포함됨
5) 2017년 6월 서울 기준 5분위 평균전세 아파트가격은 1분위 1억 9,755만 원, 2분위 3억 829만 원, 3분위 3억 9,020만 원, 4분위 4억 8,715만 원, 5분위 7억 2,955만 원으로,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가구가 상당수 존재함(5분위 평균전세 아파트가격은 아파트 전세가격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한 5개 분위별 평균전세 아파트가격임)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6. 1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임차인이 적시에 적합한 전세금보장상품을 인지·구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금보장상품의 판매대리점 또는 홍보 창구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임

- 2017년 6월 기준 65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2017년 말까지 350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맹대리점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함[7]

■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계약이라는 주요 상품에 부가하여 전세금보장상품을 판매할 경우 임차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금보장상품의 존재 및 비용을 전세계약 체결의 최종단계에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처럼 전세계약의 현장에서 전세계약이라는 주요상품에 부가하여 전세금보장상품이 소개 및 판매될 경우에는 임차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음[8]
  - 구체적으로 첫째, 임차인의 적극적인 가격비교 및 탐색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 둘째, 전세계약과 전세금보장상품의 판매가 결합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정보과다(information overload)상태에서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셋째, 전세금보장상품의 가입권유시점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위해 이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 후이기 때문에 결정피로증(decision fatigue)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넷째, 전세금보장상품이 임차인의 주요관심 상품이 아닌 부차적인 상품이고 주요상품인 전세가격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금보장상품의 가격이나 조건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
- 임차인이 전세금보장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판매사가 임차인이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전세금보장상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임차인이 전세금보장상품 구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전세금보장상품 판매 및 홍보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KiRi

---

7)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도자료(2016. 11. 18),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금보증 MOU 체결"
8) 전세금보장상품처럼 재화·용역의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하여 모집할 수 있는 보험을 부가보험(add-on insurance)이라 하며 부가보험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송윤아·권오경(2017. 5. 15), 「부가보험 활성화를 위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검토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보험연구원은 2017년 7월 12일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공청회를 개최함.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의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장해지급률이 장해 정도에 비해 적정하지 않거나 장해판정 기준이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것으로 평가됨. 이처럼 장해판정 기준의 객관성과 장해지급률의 합리성이 향상될 경우 보험회사의 효율성과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빈번한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효율성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장해분류표 운영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난 7월 12일 보험연구원은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정 공청회를 개최함

- 장해분류표는 장해급여금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면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중요한 기준임
- 지난 2005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상이하게 운영하던 장해분류표를 통합·개정하였음
  - 2005년 이전에는 장해급여금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8%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3년간은 그 수치가 2.1%(3년간 평균)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12년간 장해분류표가 개정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험업계는 장해분류표 개정을 요청함
  - 현행 장해분류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학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객관성이 결여된 장해판정 기준이 있고, 지급률이 적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장해가 있다는 것임
  - 이 외에도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있다는 것이 개정 이유임

## 장해분류표의 개정 기준은 크게 장해판정 기준의 객관성 및 장해지급률의 합리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장해판정 기준의 객관성은 장해를 진단하는 의사나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따라 동일한 장해가 다르게 판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 요소 개입을 최소화하였으며, 모호한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현재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함
- 장해지급률의 합리성은 심도가 유사한 두 장해가 있을 때, 두 장해의 지급률은 비슷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장해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하나의 장해로 인한 파생장해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현재의 가장 높은 지급률을 최종 지급률로 정하는 방식 대신 파생장해는 합산하는 방식을 제안함
  - 귀의 장해 중 평형장해처럼 중한 장해임에도 불구하고 장해분류표에서 제외된 장해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귀의 평형장해가 포함된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함
  - 그러나, 개정 장해분류표에서는 지급률 10%만 인정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급률을 15~20%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

**장해분류표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향상될 경우, 민원의 감소로 보험회사의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향상되며,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부적절한 지급률 감소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즉,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빈도와 심도 이외에, 보험금 확정에 대한 리스크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임
-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보다 객관적인 장해판정 기준이 수립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비용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장해보험금 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 선의로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급에 임한다 하더라도, 장해판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양측이 모두 상대방의 장해심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여 보험금 지급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예상치 못한 부적절한 지급률 감소가 생긴다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장해분류표 개정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

1) 국가장애등급에서는 귀의 평형장애를 심도에 따라 3~5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보다는, 보험금이 부적절하게 감액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됨

■ 이러한 방식의 장해분류표 개정은 의학기술이 발전하면 또 다시 장해판정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새로운 방식의 장해판정 기준 마련 검토가 필요함

- 의학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15년마다 주기적으로 장해분류표를 개정할 경우, 보험회사는 많은 장해분류표를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에 직면하게 됨
  – 소비자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장해분류표를 오해하여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개정된 장해분류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은 30~40년 후가 될 수도 있으며, 그 시점에서는 또다시 장해판정 기준이 의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연령 30세의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장해의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0세 이후가 되기까지는 40년이 지나야 하고, 지금의 장해분류표는 미래의 의학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게 됨

■ 장해분류표 개정이 장해판정 세부 기준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장해분류표를 매번 변경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에서 장해판정 세부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장해분류표 개정 없이도 장해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 보험종류별 예금보호 금액의 차등화 필요성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은행 예금과 달리 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적 금융상품으로 조건부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금도 손해사정을 거쳐 사후에 확정됨. OECD 주요국은 이러한 보험의 특성에 따라 예금보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종류에 따라 예금보험금의 지급액도 차이를 두고 있음. 금융소비자가 구매한 금융상품의 기능에 따라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융회사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예금보험 또는 계약자보호제도는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1998년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와 상호저축은행을 포괄하는 통합 예금보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25개, 손해보험 22개 회사가 가입되어 있음[1)]

-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예금보험에 가입된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함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예금보호 상한액 없이 전액보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부분보장으로 환원된 후 예금보험 상한액은 현재까지 5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보장성이나 저축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성격에 관계없이 보험회사 단위로 은행예금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함

  - 이는 보험상품이 갖는 고유의 보장 기능을 간과하고 은행예금과 같은 저축성 기능만을 고려하여

1) 2017년 6월 30일 현재

은행예금과 보험의 적립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임

- 보험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Protection) 기능과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Savings) 기능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함
- 한편, 예금자가 기대하는 은행예금의 기능은 현금을 안전하게 맡아 도난이나 멸실로부터 보호하고 원금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것임



■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청구권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은행예금과 보험상품은 차이가 있음[2)]

-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가 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되는 금액은 은행예금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음[3)]
- 특히 자동차사고로 계약자나 보험회사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합예금보험의 틀 안에서 5천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4)]

■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보험회사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은행방식의 예금보험이 아닌 별도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를 운영함

- 보험계약자보호제도(policyholder protection schemes)는 보험회사의 갹출을 통해 기금을 정기적으로 거두는 사전적립방식과 필요할 때 갹출하는 사후갹출방식으로 나누어짐

■ OECD 주요국도 은행 대상 예금보험과 별도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망보장과 연금 등 보험 종목별로 보험회사 지급불능 시 보장액이 다름(〈표 1〉 참조)

- 영국과 일본에서 손해보험의 자동차배상책임과 같은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시 전액을 보장하며, 일본에서는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지진보험에 대해서는 전액을 보장함
  - 그 외 의무보험이 아닌 여행자보험, 임의가입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서는 영국은 85%를, 일본은 80%를 각각 보장함
- 미국 전미보험감독자협회(NAIC[5)])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장액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 성대규(2012), 『보험업법 개정판』, 도서출판 두남
3) 물론 보험도 은행예금처럼 저축기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액이 확정된 적립금을 가질 수 있음
4)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파산 등 지급불능 시에도 의무보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의 사후갹출방식에 의한 제3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예금보험 보장액인 5천만 원 이상 피해자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짐
5)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300,000달러로 정하고 있으며, 환급금은 100,000달러로 권고함

- 또한 NAIC는 계약자보호를 위해 연금은 250,000달러, 주요 의료보험은 500,000달러를 보장하며 기타 의료보험은 100,000달러까지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는 공동보험 형태로 80%까지 보장하되 상한은 NAIC 권고액이며, 뉴욕은 사망보험, 개인연금, 의료보험 등의 보장 상한이 500,000달러로 NAIC 권고안보다 높음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6]))에서 250,000달러까지 보장하며 이는 NAIC의 개인연금 보장상한 권고액과 같은 수준임

◦ 캐나다의 경우, 사망보험은 200,000캐나다 달러, 건강보험은 60,000캐나다 달러, 환급금은 60,000캐나다 달러까지는 전액을 보장하지만, 초과액에 대해서는 85%까지만 보장함

- 단, 예금 성격의 저축성보험은 100,000캐나다 달러까지 전액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DIC[7]))의 은행예금에 대한 예금보험 보장액과 동일함

◦ 프랑스의 경우, 사망보험에 대한 보장 상한은 125,000유로이며 그 외 모든 생명보험은 98,000유로까지 보장하고 있음[8])

〈표 1〉 OECD 주요국의 보험계약자보호제도 주요상품 보장액

| 국가 | | 보험기금 | 생명보험(사망보장) | 손해보험 |
|---|---|---|---|---|
| 미국 | NAIC 권고 | 생명, 손해 | 300,000달러 | 300,000달러 |
| | New York | | 500,000달러 | 500,000달러 |
| | California | | Max[80%, 300,000달러] | 500,000달러 |
| 캐나다 | | 생명, 손해 | 200,000캐나다 달러 | 250,000캐나다 달러 |
| 프랑스 | | 생명 | 125,000유로 | 전액보장 |
| 대한민국 | | 통합 | 5,000만 원 | 5,000만 원 |

자료: OECD(2013), New York State DFS Homepage; 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 Homepage

## 우리나라도 통합예금보험제도상에서 금융상품별 및 보험종류별 예금보험금의 지급액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각 금융권역 소비자가 구매한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각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하므로 금융회사의 지급불능 시에도 금융상품의 기능을 고려한 예금보험금 지급이 예금자보호의 취지에 맞음 kiri

6)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7)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8) 참고로 은행예금은 프랑스 예금보장기금(FRDR)에서 100,000유로까지 보장하고 있음

# 데이터 이코노미와 보험

임준 연구위원



요약

데이터 이코노미의 경우 정보유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규제 강화와 프라이버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체계 구축이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주요국들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유출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상체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 측면에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임. 미국 자동차 산업의 배상체계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데이터 이코노미의 배상체계 구축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혜택도 증가하지만, 그와 함께 사고나 환경오염 등에 의한 피해도 증가함
  - 산업 발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억제하고 적절한 피해구제를 위해 안전규제(safety regulation)를 강화하고 배상체계(compensation system)를 구축해왔음

- 전통적인 의미에서 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들어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중심 경제(data-driven economy)가 부상하고 있음[1)]
  - 데이터 이코노미 역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정보유출(data breach)에 의한 피해발생이라고 하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데이터 이코노미의 경우에도 정보유출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안전규제 강화와 프라이버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체계 구축이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1) '데이터 중심 경제'와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표현은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2017), 『데이터 이코노미』, 한스미디어를 참조하였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유출 위험에 대해 주요국은 개인정보보호규제(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유럽의 경우에는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였는데, 위반 시 최대 2천만 유로 또는 연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2]
- 반면, 배상체계와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3] 아직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의 도입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임

■ 본고에서는 데이터 이코노미에서의 배상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함[4]

-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이 배상체계에 있어서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확립된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함

■ 미국 뉴욕 주의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도입 과정은 다음과 같음[5]

- 1기는 1928년 이전까지로 자유선택(free choice) 시기
- 2기는 1929년부터 1948년까지로 제한적 의무보험(limited-compulsory insurance) 시기
- 3기는 1949년부터 1955년까지로 강화된 제한적 의무보험(extended limited-compulsory insurance) 시기
- 4기는 1956년 이후로 의무보험(compulsory insurance) 시기

■ 자동차산업 초창기인 1기에는 배상자력의 입증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었으나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사고도 증가하게 되자, 1929년 자동차 등록 시에 배상자력의 입증을 의무화하였음

- 배상자력 입증 수단으로는 보험(motor vehicle liability policy), 채권(approved bond), 금전이나 그 밖의 담보물의 예치(deposit of a sum of money or collateral) 등이 가능
- 만약 자동차 등록 시에 배상자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후에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

2) 함인선(2016), 『EU개인정보보호법』, 마로니
3) 미국과 유럽의 보험 관련 학회에서 사이버 보험(cyber insurance)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음
4) 항공 산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산업과 유사한 논의와 경로를 거쳐 의무보험이 도입되었음(Robert Homburg 1933), "Compulsory Aviation Insurance", *Air Law Review*, Vol. 4, pp. 274~277; W. R. B.(1947), "Compulsory Aviation Insurance", *Virginia Law Review*, Vol. 33, No. 3, pp. 336~342 참조)
5) Robert E. Helm(1968), "Motor Vehicle Liability Insurance: A Brief History", *St. John's Law Review*, Vol. 43, No. 1, pp. 25~56

않을 경우 면허 정지

- 1929년 규제의 목적은 배상자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위험한 운전을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도로로 나오는 것을 막는 데 있었으나, 규제 도입 이후에도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보상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내었음

■ 1929년에 도입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949년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였음

- 자동차 등록 시에 배상자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후에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외에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도입 이전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자, 1956년 의무보험을 도입하였음

■ 앞에서 논의한 자동차 산업 사례에 근거하여 추론해보면, 데이터 이코노미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그로 인해 프라이버시 피해 규모도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개인정보보호규제와 같은 안전규제의 강화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배상체계의 구축이 필요한데, 자동차 산업 사례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KiRi

#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9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함.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부재는 한방물리요법의 청구단가 상승 및 진료비 급증과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를 초래하였음. 금번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신설은 불필요한 시술과 청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국토교통부는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9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함[1]

- 대부분의 한방물리요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상대가치점수 없이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어 왔음[2]
  - 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도 보장함
-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초음파 · 초단파 · 극초단파요법 등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함(〈표 1〉 참조)[3]
  -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부터 한방물리요법을 12개 코드(허-2-1, 93023~93034)로 세분화하여 청구하도록 함[4]

---

1)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4737호)

2)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임.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3)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 노력 등 업무량, 인력 · 시설 · 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며, '진료수가 = 상대가치점수 × 종별가산율 ×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임

4)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과-3554호)

- 또한 치료실 요건, 시술자, 시술기준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시술기준을 마련함
  -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진료수가를 산정

〈표 1〉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변화

<table>
<tr><th>적용일자</th><th colspan="3">내용</th></tr>
<tr><td>2015. 9. 31. 이전</td><td colspan="3">• 한방물리요법에 단일 코드(허-2, 49020)적용하고 실제소요비용 청구</td></tr>
<tr><td>2015. 10. 1</td><td colspan="3">• 모든 한방물리요법이 동일 코드(허-2, 49020)로 청구되면서 청구 및 심사의 정확성이 떨어져 혼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과-3554호)<br>• 2015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 세분화(허-2, 49020 → 허-2-1, 93023~93034)<br>• 세부산정기준 마련</td></tr>
<tr><td rowspan="8">2017. 9. 11</td><td colspan="3">• 한방물리요법(허-2, 49020)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4737호)<br>• 실제소요비용으로 산정하던 7개 항목에 상대가치점수 부여 등</td></tr>
<tr><td>93023</td><td>초음파 · 초단파 · 극초단파요법[1일당]</td><td>20.37</td></tr>
<tr><td>93026</td><td>경피전기자극요법(TENS)</td><td>45.93</td></tr>
<tr><td>93027</td><td>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td><td>45.93</td></tr>
<tr><td>93028</td><td>경추견인</td><td>82.76</td></tr>
<tr><td>93029</td><td>골반견인</td><td>80.48</td></tr>
<tr><td>93030<br>93031</td><td>도인운동요법 [1일당]-1부위<br>도인운동요법[1일당]-2부위 이상</td><td>138.84<br>208.26</td></tr>
<tr><td>93032<br>93033</td><td>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1부위<br>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2부위 이상</td><td>50.38<br>75.57</td></tr>
</table>

■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부재는 한방물리요법의 청구단가 상승 및 진료비 급증과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를 초래하였음

-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연평균 197%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는 환자 수와 한방물리요법의 단위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함(〈표 2〉 참조)
  -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에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통원진료비는 연평균 260%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환자 수는 연평균 66%, 청구단가는 125% 증가함(〈표 3〉 참조)

- 또한 동일상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순위별로 상·하위 10% 환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 행위별 진료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환자 간 진료비 편차가 현저히 높게 나타남
  - 2016년 한방병원을 이용한 S134(경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위 10%의 평균진료비는 654,073원, 하위 10%의 평균진료비는 4,443원으로 상·하위 10% 환자 그룹 간 진료비 편차가 147배로 매우 높게 나타남[5)]

〈표 2〉 2014~2016년 자동차보험 한방비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 구분 | 첩약 | 추나요법 | 약침 | 한방물리요법 | 기타 |
|---|---|---|---|---|---|
| 한방병원 | 39.6% | 26.4% | 47.1% | 197.3% | 32.0% |
| 한의원 | 25.6% | 25.9% | 35.4% | 47.5% | 34.6% |

주: 한방의료기관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의미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3〉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 구성

| 구분 | | 총진료비 연평균 증가율(2014~2016년) | | | 1인당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2014~2016년) | |
|---|---|---|---|---|---|---|
| | | 총진료비 | 환자 수 | 1인당 진료비 | 1인당 청구건수 (진료이용량) | 청구건당 진료비(청구단가) |
| 한방병원 | 입원 | 119.6% | 35.4% | 62.1% | 3.9% | 56% |
| | 통원 | 259.9% | 65.9% | 116.9% | -3.8% | 125.4% |
| 한의원 | 입원 | 48.2% | 22.8% | 20.7% | -0.4% | 21.1% |
| | 통원 | 47.5% | 12.8% | 30.7% | -1.1% | 32.2% |

주: 1인당 진료비 = (청구건수/환자 수) × (총진료비/청구건수) = 1인당 진료이용량 × 청구단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금번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신설은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1조 6,586억 원 중 한방물리요법 진료비(290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미미하기 때문에, 진료수가 신설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으나 적어도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압력은 통제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방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

5) 전술한 편차는 전체 상해등급 내 동일상병 환자 간 진료비 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동일 상해등급 내 동일상병 환자 간 진료비 편차는 이보다 작을 수 있음

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KiRi

#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와 주택연금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주택소유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특히 주택소유자가 가장 많은 40~50대 연령에서 여성 소유자 증가 규모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여성 주택소유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음.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자녀 없는 독신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향후 주택연금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발간된 『주택소유통계』[1)]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중 남성의 비율(56.9%)이 여성(43.1%)보다 높으나, 여성 소유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여성 소유자 비중은 통계조사를 시작한 2012년 41.4%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이 여성 인구 비중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대비 2015년 여성의 인구는 0.02%p 증가한 반면,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0.7%p 증가했음

- 특히 주택소유자 비중이 가장 높은 40~50대 연령에서 여성 소유자 증가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2014년 대비 2015년 주택소유자는 39만 4천 명 증가하였는데, 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였음
    - 주택소유자 증감 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주택소유자 증

---

1) 주택소유통계는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2012년 11월 1일 기준)부터 개인별 주택 소유현황에 대해 매년 작성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작성 범위를 가구 단위까지 확장하였음

감인원 7만 5천 명 가운데 6만 9천 명인 92%가 여성이었으며, 40대는 80%로 나타남

- 주택 소유자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60대였음

〈표 1〉 성별, 연령별 주택 소유자 현황

(단위: 천 명, %)

| 구분 | 2014년 | | | 2015년 | | | 증감 | | | |
|---|---|---|---|---|---|---|---|---|---|---|
| | 남 | 여 | 전체 | 남 | 여 | 전체 | 전체 | 남 | 여 | 구성비 (여성) |
| 전체 | 12,650 | 7,282 | 5,368 | 13,045 | 7,421 | 5,624 | 394 | 139 | 255 | 64.7 |
| 20대 이하 | 240 | 134 | 106 | 275 | 152 | 123 | 35 | 18 | 17 | 48.6 |
| 30대 | 1,841 | 1,074 | 768 | 1,856 | 1,089 | 767 | 15 | 15 | -1 | 0.0 |
| 40대 | 3,232 | 1,801 | 1,431 | 3,281 | 1,811 | 1,469 | 49 | 10 | 39 | 79.6 |
| 50대 | 3,302 | 1,864 | 1,438 | 3,377 | 1,870 | 1,507 | 75 | 5 | 69 | 92.0 |
| 60대 | 2,090 | 1,218 | 872 | 2,244 | 1,285 | 958 | 154 | 67 | 86 | 55.8 |
| 70대 | 1,304 | 749 | 555 | 1,337 | 759 | 578 | 33 | 10 | 23 | 69.7 |
| 80대 이상 | 326 | 174 | 152 | 367 | 193 | 173 | 41 | 19 | 22 | 53.7 |
| 사망자* | 316 | 268 | 48 | 309 | 260 | 48 | -7 | -7 | 0 | 0.0 |

주: 개인 소유자에는 통계작성 시점 소유권이 유지(명의 미이전)되어 있는 사망자도 포함되며, 금년부터 연령별 현황에서 사망자를 별도 구분('12~'14년 자료 KOSIS 소급 수정). 구성비는 전체 증감 인원 중 여성의 비중임

자료: 통계청(2016),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 여성 주택소유자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 성별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50~69세 남성의 자가비율은 17%인 반면, 여성의 자가비율은 35%로 나타남[2)]
  -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50세 미만과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자가비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50~69세 연령대에서 여성의 자가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고 그 격차가 큰 편임

##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의 주된 수요층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짐

- 청·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는 만혼과 비혼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중·노년층의 1인 가구는 이혼과 사별로 인한 여성 독거노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임

2)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슈리포트(2016. 12. 23), "1인 가구 전성시대, 주택·주택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음[3)]

- 자녀 없는 독신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향후 주택연금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자녀 없는 1인 노인 가구는 상속유인이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임
  - 의료요양시설이나 돌봄서비스와 연계된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층 1인 가구 특히 여성이 미래 노후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자산 축적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kiri

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17. 7. 25)

#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발생하는 상해 · 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현재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견종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견주들에게 맹견(猛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보험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이고 견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정부와 국회는 효과적인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등록제 의무화 이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 ·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반려견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건수는 2011년 245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2017년(8월 기준) 1,046건으로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음[1)]
  -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 2010년 17.4%, 2012년 17.9%, 2015년 21.8%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이 반려동물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됨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전체의 30.9%) 중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 비중은 각각 82.5%, 16.6%로 반려동물 중 대부분이 반려견임[2)]
- 반려견 수의 빠른 증가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7. 7. 6),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2) 황원경(2017), 「반려동물 양육 실태 조사」, 『KB연구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참조

## 정부와 국회가 반려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음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음[3)]
  - 반려견으로 인한 대인사고(상해 · 사망 사고) 발생 시 견주 처벌 근거 규정 마련, 맹견[4)]에 포함되는 견종 확대, 목줄 ·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인상, 신고 포상제 등
- 현재 국회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반려견 관리 강화 관련 법 개정 추진 내용

| 법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연월일 | 주요 내용 |
|---|---|---|---|---|
| 동물보호법 | 2009951 | 정병국 의원 | 2017. 10. 27 | 맹견 소유자의 교육 의무화, 모든 지역에서 맹견의 등록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 출입 금지 |
| 동물보호법 | 2009789 | 주호영 의원 | 2017. 9. 29 | 맹견에 대한 정의 명확화, 국가 · 지자체 동물복지 · 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맹견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화,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시 소유자 동행 의무화, 외출 시 목줄 · 입마개 의무화, 벌칙 및 과태료 |
| 동물보호법 | 2008945 | 주승용 의원 | 2017. 9. 1 | 맹견 관리의무 강화,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 제한, 처벌 규정 |
| 동물보호법 | 8128 | 장제원 의원 | 2017. 7. 21 | 맹견의 정의 및 관리, 맹견의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인사고를 유발한 맹견에 대한 조치(격리 등), 맹견 소유자 안전교육, 벌칙 등 |

주: 발의연월일의 역순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참조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5)]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견주 가입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과 보상한도가 낮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1억 원의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으나 견주 가입 현황이 조사된 바가 없고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계약 건수가 적고 보상한도가 낮아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음
  - 2015년 현재 1억 원 한도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건수는 192만 건이고 보험료 총액은 34억 원 수준인데 이에 대한 견

---

3) 농림축산식품부 긴급브리핑(2017. 10. 23),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4)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맹견을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및 이들의 잡종, 그리고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 개정 이후 맹견에 포함되는 견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5) '애견보험'이라 불리기도 함

주의 가입률 통계가 부재함[6]

– 5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책임 보상한도를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의 경우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2천여 건의 보험 계약이 존재함[7]

■ 현재 미국에서 39개 주와 많은 지자체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법으로 정하고 이들 견종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맹견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8]

- Walden(2012)에 따르면 현재 미국 39개 주와 지자체들이 맹견관리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400~500만 명의 미국인이 개에 물리고 이들 중 약 80만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아동 개물림 사고가 아동의 응급실 입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미국 대다수 주들이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에게 맹견 등록과 맹견보증보험 또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9]
- 미국 일부 주의 맹견보증보험·맹견배상책임보험 최소 의무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음
  - 워싱턴 주: 25만 달러(2억 7천 5백만 원),[10] 조지아 주: 1.5만 달러(1,650만 원),[11] 펜실베이니아 주: 5만 달러(5,500만 원),[12] 앨라배마 주: 10만 달러(1억 천만 원),[13] 미네소타 주: 30만 달러(3억 3천만 원)[14]

■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견주에게 구상(求償)하는 보험임

- 맹견보증보험을 구입한 견주의 반려견이 대인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험회사는 신속히 피해자에게

---

6)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장기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통계는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보 2016』 참조. 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경과계약건수 경과보험료 기준,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담보함
7) 일부 반려동물보험은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김세중·김석영(2017. 8. 21),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연구원 참조
8) Walden(2015), "Brief Overview of Dangerous Dog Laws", Report,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Smith(2012), "Dangerous Dog Laws and Posting Surety Bonds", Report, BuySurety 참조
9) Smith(2012) 참조
10) 1달러를 1,100원으로 환산(이하 동일).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RCW 16.08.080 Dangerous dogs
11) 2010 Georgia Code, TITLE 4 – ANIMALS, CHAPTER 8 – DOGS, ARTICLE 2 – DANGEROUS DOG CONTROL § 4-8-25 – Requirements for possessing dangerous or potentially dangerous dog
12) Pennsylvania Statutes and Consolidated Statutes. Title 3. Agriculture. Chapter 8. Dogs. Dog Law
13) Alabama House Bill 231
14) Minnesota Regulations 347.50, Regulation of Dangerous Dogs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견주에게 구상[15)]함

〈그림 1〉 맹견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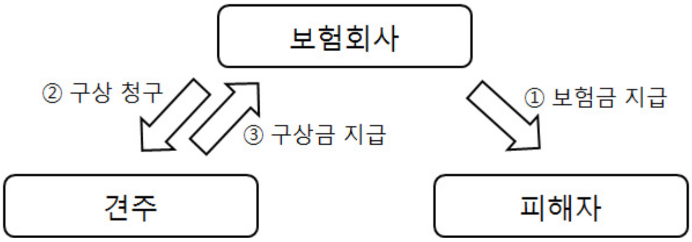


## 맹견보증보험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도덕적 해이 발생 억제, 저렴한 보험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맹견보증보험의 경우 견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해 충분히 피해를 보상할 수 없을 시에도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함
- 맹견보증보험 보험금이 지급될 시 보험회사가 견주에게 손해를 구상하므로 견주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음(〈그림 1〉, 〈표 2〉 참조)
- 맹견보증보험의 보험료는 견주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구상금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보다 저렴함(〈표 2〉 참조)

〈표 2〉 맹견보증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차이

| 보험 구분 | 견주에 대한 구상 |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 보험요율 산출 방법 |
|---|---|---|---|
| 맹견보증보험 | 있음 | 없음 | 예상손해배상액+소송비용+마진+사업비−예상구상금 |
| 배상책임보험 | 없음 | 있음 | 예상손해배상액+구상비용+마진+사업비 |

## 보험회사는 미국 맹견보증보험 사례를 고려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맹견보증보험 개발·판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맹견 견주의 맹견보증보험 가입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맹견보증보험

15) 보험회사가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개발·판매된 사례가 없음

- 인터넷 채널을 통한 맹견보증보험 판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16]
  - 인터넷 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완화되어 인터넷을 통한 맹견보증보험 판매가 가능함
  - 인터넷 채널을 통한 맹견보증보험 판매로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정부와 국회는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당국과 국회는 맹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 등록제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험관리를 위해 미국과 같이 등록제 이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 등록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었으나 2016년 말 현재 등록 동물 수는 107만 마리로 전체 800만 마리(추정)의 13.3%만 등록되어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맹견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사각이 존재함 KiRi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2. 4),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참조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과정에 환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망사고의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음.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질병이나 상해 등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규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법규와 표준약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1)]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함

    -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1)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8일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2월 시행에 앞서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함

-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려면 환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표명되어야 하며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해당 등록기관[2])을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거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8조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음(<표 1> 참조)

〈표 1〉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

| 환자 의사 | 확인 방법 |
|---|---|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 • 연명의료계획서(말기 · 임종 기 환자 작성 가능)<br>•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와 담당의사의 확인 |
|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사 2인의 확인<br>•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br>* 가족: ① 배우자 ② 직계 존 · 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br>*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
|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인의 확인<br>•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br>* 행방불명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외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10. 22),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수 있음

- 첫째,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과정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살과는 다른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보험 상품은 생존 · 사망에 관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불확정한 사고”(상법 638조[3]))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참조

또는 "우연한 사건"(보험업법 2조 1호[4])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 둘째,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음

-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시점에서는 급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함

■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에 있음

-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성격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해 보임
  - 보다 세부적으로는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에는 해당되나 보험금지급 면책 조항의 예외[5])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적, 의료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재해사망의 기준이 되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여부는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kiri

---

3)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4) 보험업법 제2조 1호에서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5) 자살보험금 지급 면책의 예외조항으로 현행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방안

김규동 연구위원



요약

인터넷, SNS, 휴대용 통신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상에서 확산되어 개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개인이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또한, 명예훼손 이외에도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는 다양하므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임

- 인터넷, SNS, 휴대용 통신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상에서 확산되어 특정인이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의도적으로 공개하여 다수로 하여금 특정인과 그 주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9월에 발생한 240번 시내버스 사건[1] 및 2012년 2월 발생한 채선당 사건[2]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함[3]
    -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에 언론 보도까지 가세하면서 특정인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정신적 ·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됨
    - 최초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이 피해의 경중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특정 판사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의도적으로 공개하

1) 아이 엄마(A씨)의 부주의로 아이만 버스에서 하차한 후 시내버스가 출발하였고, 이후 A씨가 사실을 인지하고 버스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행 중 안전을 이유로 버스기사는 다음 정류장에서 A씨를 하차하게 하였는데, 다른 탑승객 B씨는 상황을 잘못 인지하여 버스기사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였고 이로 인해 버스기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사건임
2) 임산부 A씨는 외식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에서 식사 중 종업원과 말다툼 도중에 종업원으로부터 배를 걷어 차였다는 거짓을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점주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해당 점주는 1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임
3) 헤럴드경제(2017. 9. 14), "[뉴스탐색] 채선당 · 국물녀 · 240번 버스... '마녀사냥'에 피해자만 양산"

여 당사자와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명 '신상털기' 식의 개인정보 유포로 주변인까지 피해를 보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허위정보 및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여 특정인 및 가족들에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기가 어려움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4)]
  - 타인을 비방하거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방식이 합법적이고 접근에 제한이 없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행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되더라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음

-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특약형태로만 판매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기업의 물적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입게 된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음
  -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는 사이버 명예훼손보장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보장 위험률을 개발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처분 결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임

---

4)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에 특약형태로 부가하고 있으며, 특약의 보험료도 연 100원 수준으로 저렴함

- 그러나 현재 판매 중인 사이버 명예훼손보장 상품은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사이버 명예훼손 특약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많지 않고, 장기상해보험 등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고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수반되어야만 함
  - 또한, 보험금도 소액(50~100만 원)으로 정액 보상에 한정하고 있어,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독상품으로 판매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수반되는 보장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상품이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상품 운영이 필요해 보임**

-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향후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더 늘어나면 오프라인보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더욱 증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에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보임
  - 채선당 사건처럼 명예훼손으로 인해 개인이 실제로 입은 물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정확한 위험률 산출과 안정적인 보험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처럼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임
  - 명예 훼손의 원인이 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사이버상에서 포스팅 된 횟수, 언론에서 보도된 횟수, 사회적인 영향력 등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보임
-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사이버 명예훼손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오히려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품설계 시 주의가 필요함

**이 외에도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므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경우,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음
  - 이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처럼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이 외에도, 피싱,[5] 스미싱,[6] 파밍[7]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 또는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및 휴대폰 불법 개설 등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해 보임
  -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여 기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되어야 할 것임 KiRi

5)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임

6)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해킹하는 방식임. 해커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깔리고 해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는 것을 말함

7) 파밍(pharming)은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진짜 웹사이트로 오인 ·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범죄수법임. 넓은 의미에서 피싱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싱은 사용자가 주의하면 식별할 수 있는 반면 파밍은 주의하더라도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

정원석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소득원 확보가 중요함. 하지만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저소득층 연금저축은 감소하고 있음. 그 이유로 저소득층 과세미달자 증가로 인한 연금저축 납입유인 감소가 지목되고 있음. 저소득 과세미달자에 대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과세표준이 0원이더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급해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저소득층 연금저축이 2013년 수준으로 제고될 경우 증가하는 연금자산은 1조 1,845억 원, 해당 계층 납입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약 1,77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국민이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준비는 필수적이나[1] 대표적인 개인연금인 세제적격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의 가입률과 납입수준은 높지 않음
  -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3.16%, 평균납입액은 261만 원으로[2]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연금저축이 노후소득에 기여하는 비중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은 정체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세액공제 도입 이후 고소득층의 연금저축은 유지된 반면 저소득층의 연금저축은 감소함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률과 평균 납입액이 2013년 1.17%와 159만 원, 2014년 0.83%와 62만 원, 그리고 2015년 0.37%와 39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연소득 8,0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은 소폭 감소함

1) 강성호 · 류건식(2016), 「공 · 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방향」, 『KiRi Report』, 제395호, 보험연구원
2) 2015년 국세통계 연보자료를 재구성

〈표 1〉 소득수준에 따른 연도별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액

(단위: %, 만 원)

| | ~2천만 원 | | 2천만 원~4천만 원 | | 4천만 원~6천만 원 | | 6천만 원~8천만 원 | | 8천만 원 초과 | |
|---|---|---|---|---|---|---|---|---|---|---|
| | 가입률 | 평균 납입액 | 가입률 | 평균 납입액 | 가입률 | 평균 납입액 | 가입률 | 평균 납입액 | 가입률 | 평균 납입액 |
| 2012 | 1.16 | 129 | 11.6 | 192 | 34.0 | 247 | 52.8 | 286 | 66.3 | 320 |
| 2013 | 1.17 | 159 | 10.0 | 201 | 31.6 | 249 | 51.3 | 289 | 65.7 | 323 |
| 2014 | 0.83 | 62 | 7.9 | 156 | 28.9 | 242 | 49.5 | 287 | 64.4 | 322 |
| 2015 | 0.37 | 39 | 6.1 | 147 | 25.4 | 236 | 47.6 | 281 | 63.3 | 319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

- 세액공제 도입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감소는 과세미달자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급해 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세미달자의 경우 연금저축을 납입한다 해도 환급받을 세액공제액이 없으므로 연금저축을 납입할 유인이 없음
    -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연소득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과세미달 비율은 2013년 8.7%에서 2014년 35.1%로 4배 이상 상승하였음

〈표 2〉 소득수준별 과세미달 근로자 비율

(단위: %)

| 구분 | 전체 | ~2천만 원 | 2천만원~4천만원 | 4천만원~6천만원 | 6천만원~8천만원 | 8천 만 원 초과 |
|---|---|---|---|---|---|---|
| 2012 | 32.7 | 61.6 | 9.5 | 1.2 | 0.1 | 0.0 |
| 2013 | 31.3 | 60.7 | 8.7 | 1.0 | 0.1 | 0.0 |
| 2014 | 48.1 | 81.0 | 35.1 | 12.9 | 1.2 | 0.2 |
| 2015 | 46.8 | 81.2 | 32.8 | 11.8 | 1.0 | 0.2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재구성

- 2015년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 연금저축을 납입한 과세미달 근로자의 숫자는 약 20만 명, 이들이 납입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2,542억 원,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376억 원으로 나타남
  - 따라서 단순계산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인한 과세미달 연금저축 납입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은 약 376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임
    - 이 중 연소득 2,000~4,000만 원 소득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247억 원, 4,000~6,000만 원 소득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102억 원으로 나타남

- 따라서 환급형 세액공제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376억 원 중 약 263억 원(70%)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계층에 집중됨

〈표 3〉 소득수준별 과세미달 근로자 연금저축 납입 현황

| 구분 | ~1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계 |
|---|---|---|---|---|---|---|
| 가입자 수 | 359명 | 26,588명 | 132,688명 | 37,654명 | 4,052명 | 201,341명 |
| 납입금액 | 0.49억 원 | 105억 원 | 1,649억 원 | 695억 원 | 93억 원 | 2,543억 원 |
| 공제세액 | 0.07억 원 | 16억 원 | 247억 원 | 102억 원 | 11억 원 | 376억 원 |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5년 자료를 재구성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용해 해당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이 2013년 수준으로 제고될 경우 동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1조 1,84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인 4,483억 원의 약 2.6배임

- 2015년 소득분포 및 과세미달자 비율에 2013년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가입률과 평균납입액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1조 1,84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비용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소득계층에 대한 총 세액공제액은 1,776억 원이며 이중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733억 원으로 예상됨
  - 1,776억 원의 재정지출(세액공제)로 약 1조 1,845억 원의 노후소득원 적립을 유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시 납입액 및 세액공제액

| 구분 | ~2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합계 |
|---|---|---|---|
| 근로소득자 수(2015년)A | 7,657,059명 | 4,858,285명 | 12,515,344명 |
| 가입률(2013년)B | 1.7% | 10.0% | - |
| 평균납입액(2013년)C | 159만 원 | 201만 원 | - |
| 총납입액(D=A×B×C) | 2,070억 원 | 9,775억 원 | 11,845억 원 |
| 세액공제(E=D×15%) | 310억 원 | 1,466억 원 | 1,776억 원 |
| 과세미달률(2015년)F | 81.2% | 32.8% | - |
| 과세미달자에 대한 세액공제 총액(G=E×F) | 252억 원 | 481억 원 | 733억 원 |

주: 국세통계연보 2013년과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단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환급형 세액공제로 인한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률 및 납입액 제고 효과는 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정밀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kiri

# 3. 고령화


1.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최장훈
2.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 | 이정택
3.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와 고려사항 | 정원석 마지혜
4.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평가와 제언 | 정원석 마지혜
5.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 강성호
6. 암치료 기술의 발전과 영향 | 김세중
7. 치매와 우울증의 관계 | 이정택
8. 연령과 금융자산에 따른 즉시종신연금 선호도 차이 | 최장훈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검토

최장훈 연구위원

요약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함.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연금급여, 은퇴연령, 그리고 보험료에 적용할 수 있는데, 국제통화기금은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함. 은퇴연령이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금고갈 시점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함[1)]
  - 아시아 국가들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고 특히 한국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므로 한국의 연금 재정 지출을 가속화시켜 연금 재정안정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함(〈그림 1〉 참조)
  - 또한, 급속한 고령화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함
  - 자동조정장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복적인 연금개혁 없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함

〈그림 1〉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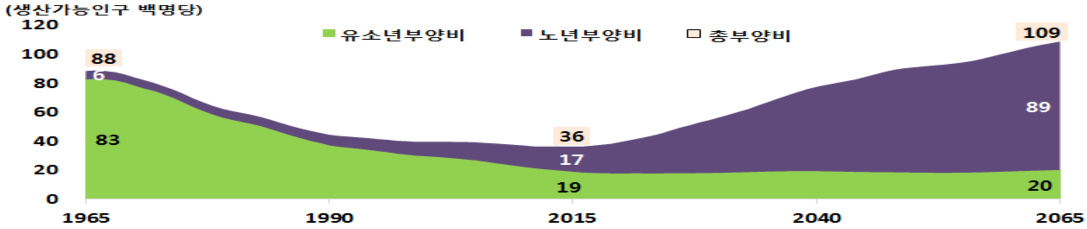


주: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 수/15~64세 인구 수
자료: 통계청(2016. 12),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1) Elif C. Arbatli et al.(2016. 12), “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 in Asian Pension Systems?”, IMF Working Paper

■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연금급여, 은퇴연령, 그리고 보험료 조정장치로 구분될 수 있음[2)]

-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연금급여가 임금(또는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또는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임
  - 각각 임금(또는 물가)이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급여가 낮아지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되는 장치를 의미함
- 은퇴연령 조정장치는 기대여명 또는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따라 은퇴연령이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경우임
  - 각각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은퇴연령이 늘어나고, 가입기간 또는 수급기간이 변할 경우 가입기간과 수급기간 비율이 일정해 지도록 은퇴연령이 조정되는 장치를 의미함
- 보험료 조정의 경우는 법으로 규정된 재정안정화 수준에 연계된 경우로 재정이 재정안정화 임계 수준보다 낮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임
  - 보험료가 올라간 경우 급여는 변하지 않도록 함

■ 국제통화기금은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함

- 급여를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와 세금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특히 인구 구조나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동조정장치의 적용은 급여나 보험료 수준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음
- 이에 반해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연장할 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음
  - 기대여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연령도 늘어나면 수급기간이 계속 늘어나지 않고 일정해지기 때문임

■ 은퇴연령이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기 어려우므로 보험료나 연금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정도 연장해 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2060년이나 2063년 기금고갈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짐
  - 이 장치는 연금 수급 기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므로 장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른 연금 재

2) Elif C. Arbatli et al.(2016. 12)

정악화를 막을 수 있음

- IMF의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연장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나 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재정안정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연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거나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kiri

KiRi 리포트 2017.2.6.

고령화

#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의 특징

이정택 연구위원

요약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운전자 중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는 저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고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침범과 같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 강화 및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1])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운전자 중 6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그림 1〉 참조)

- 40대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50대 · 60대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인구의 61.0%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2])
- 2015년 기준 60대 이상 고령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39%가 증가한 반면, 전체 운전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 운전자는 7% 증가했음[3])
  - 40대 운전자는 2011년 9,705천 명에서 2015년 10,439천 명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운전자는 같은 기간 3,616천 명에서 5,711천 명으로 증가했음

1)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며,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는 $\frac{\text{연령별실업자수+연령별취업자수}}{\text{연령별총인구수}}$ 임

2) 통계청(2015), “2015 고령자 통계”

3) 사이버경찰청 경찰통계자료(2016),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그림 1〉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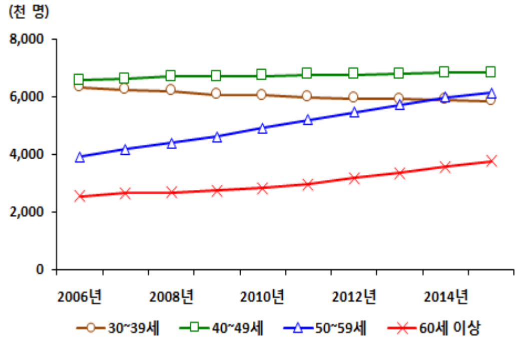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2〉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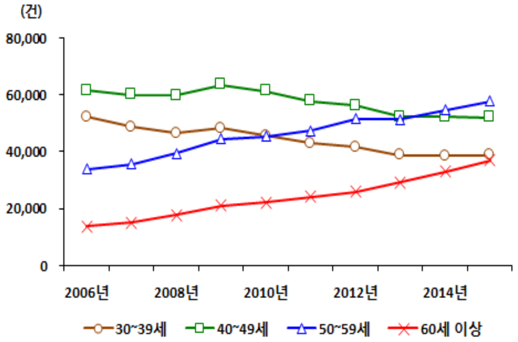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고령운전자의 비중 증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는 저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음

- 30대 · 40대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50대 · 60대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6년 대비 약 20% 감소하였으나, 50대 교통사고는 71%,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약 167% 증가했음(〈그림 2〉 참조)
- 또한,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는 6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저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아, 교통사고 피해액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에서 높음을 예상할 수 있음
  - 2015년 기준 4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당 중상자 수는 0.40명인데 반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2.75명으로 교통사고 건수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3〉 참조)

〈그림 3〉 가해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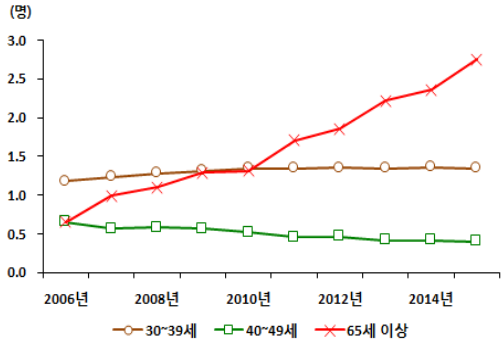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그림 4〉 가해운전자 연령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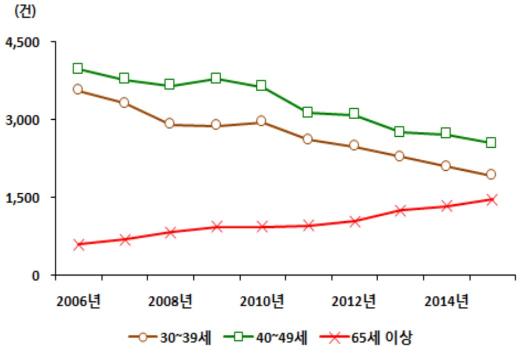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고령자 교통사고의 특징은 다수의 중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중앙선침범과 같은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임(〈그림 4〉 참조)

- 고령운전자의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구성비를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교차로 위반, 중앙선침범 순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슷함
- 그러나 저연령층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확연히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기준 1,45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연령대별 운전면허자 수를 고려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중앙선침범 사고는 저연령층에 비해 확연히 높음4)

■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 강화 및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의 시인성을 개선해야 함
  - 시계가 불량한 지역의 경우 가로수 정비, 전방신호등 설치, 교통표지판 글자크기 상향 조정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함5)
-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개발하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를 연령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6)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사고 1건당 중상자 수의 증가는 고령운전자의 손해율 추세 변화를 의미하므로, 손해율 추세 변화를 고려해 자동차 보험요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kiri

4)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2,706,276명, 30~39세는 8,166,181명, 40~49세는 10,439,336명으로 연령대별 면허소지자 수를 고려하면 고령자의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발생빈도는 다른 연령대의 2배 이상임
5) 또한, 고령자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현재 신호체계는 4색 신호등을 기본으로 하나 간단한 3색 신호등 도입과 예각으로 지어진 교차로의 교차각을 직각에 가깝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주기는 5년, 비고령자의 경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KiRi 리포트 2017.2.20.

고령화

#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와 고려사항

정원석 연구위원, 마지혜 연구원


요약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연금저축 알림서비스의 정보전달 내용과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가입자는 연금저축의 수익률 및 예상연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연금자산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임. 단, 가입된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 혹은 여타 연금저축 수익률과 비교하여 제시한다면 가입자의 연금자산 관리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함[1)]
  -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함
    - 이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등 중요사항을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게 됨
- 기존 연금저축 수익률 알림서비스가 비효율적이며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기존의 서비스는 보고 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확인하는데 시간 간격이 발생하였으며, 예상연금액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음
  - 또한, 보고서 전달 방법이 우편 및 이메일로만 한정되어 있어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보고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였음
  - 이러한 수익률 보고는 분기별 1회 이상 우편, 이메일 혹은 SMS로 수익률이 보고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보고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2. 1),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 · 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

〈표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보고 비교

| 구분 | 연금저축(기존) | 퇴직연금 | 연금저축(개선안) |
|---|---|---|---|
| 알림주기 | 1년 1회 | 분기별 1회 | 반기별 1회 |
| 전달방법 | 우편, 이메일 | 우편, 이메일, SMS | 우편, 이메일, SMS |
| 전달정보 | 적립금 현황, 수익률 | 적립금 현황, 수익률 | 적립금 현황, 수익률 |
| 추가정보 | - | - | 연금수령 시 예상연금액<br>중도해지 시 예상수령액 |

-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 방안은 가입 중인 연금저축에 대한 정보 전달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기존 금융회사가 연 1회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 수익률 및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발송하도록 하여 수익률 보고 빈도를 강화함
  - 수익률보고서에는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을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도 함께 제공됨
  - 이와 더불어 보고서 통지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발송을 추가하도록 함

- 연금저축 알림서비스 강화 시 가입자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수익률 정보 전달 시 연금저축상품 평균 수익률 혹은 수익률 상위 상품의 수익률을 함께 제시한다면 가입자가 가입 중인 연금저축 운용성과를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연금저축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적립금 이동이 자유로운 상품인 만큼 여러 상품과 수익률을 비교한 정보는 소비자의 연금자산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단, 상품수익률 비교 시 수수료 체계 등을 고려한 수익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수익률 정보보다 연금저축 평균 대비 수익률 혹은 여타 상품과 수익률을 비교한 정보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정보경제학[2)]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음
  - Milgrom(1981)은 의사결정자가 제품의 평균적인 품질을 알고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함을 이론적으로 증명함[3)]

2)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 정보가 없는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임. Akerlof는 1970년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실린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등의 논문으로 정보경제학의 영역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보경제학은 현대 미시경제학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음

- Chackobaty and Harbaugh(2010)는 상품의 특징 혹은 품질을 비교하는 형태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의사결정자와 정보전달자 모두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함[4]

## 연금저축 정보전달 강화로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익률 정보 전달주기를 1년에서 반년으로 단축하여 필요한 정보 전달의 적시성이 강화되었으며,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 시 세액 및 실수령액 정보제공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자산 관리가 용이해졌음
- 이에 더하여, 수익률에 관한 정보 전달 시 평균 대비 혹은 여타 상품 대비 수익률을 함께 제시해 준다면 고객의 수익률 평가와 연금자산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kiri

3) Milgrom(1981), "Good news and bad news: representation theorems and applications",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4) Chakraborty and Harbaugh(2010), "Persuasion by Cheap talk", *American Economic Review*

#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평가와 제언

정원석 연구위원, 마지혜 연구원

요약

금융당국은 노후소득원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설계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저축 설계 정보는 연금저축 가입을 유인하여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것임. 또한 정보제공 범위를 IRP와 다른 사적연금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배가될 것임. 한편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는 가입자의 연금저축 선택과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상품 판매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수 있을 것임

## 금융당국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노후대비에 꼭 필요한 금융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은 노후자금 계산부터 연금저축상품 선별, 노후재무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이 가능한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금융당국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 2월 9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제공됨[1)]

##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노후재무진단 및 맞춤형 연금저축 상품을 알려주는 ‘연금저축 설계서비스’와 ‘전문가 상담 연계서비스’ 그리고 ‘유용한 연금저축정보 제공서비스’로 구성됨

- 연금저축 설계서비스는 소비자가 간단한 기본정보와 연금수령정보를 입력하면 노후에 부족한 연금자산 금액과 필요한 추가납입 금액 정보를 제공함
  - 또한, 원금손실 부담 여부 및 납부방법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하여 개별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저축상품 정보도 함께 제공함

1) http://fine.fss.or.kr/fine/index.jsp

- 전문가 상담 연계서비스는 연금저축 설계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재무진단결과와 연금저축상품정보에 대해 금융전문가와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금융자문 서비스임
  - 이와 같은 전문가 금융자문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전화·대면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음
- 유용한 연금저축 정보제공 서비스는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알아야 하는 연금저축의 개요 및 특징, 소비자 유의사항, 절세 노하우 등 연금저축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안내함

■ 재무설계 관련 정보제공은 경제주체의 재무 및 노후설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Clark et al.(2006)에 따르면 재무설계 강좌를 수강한 사람들 가운데 노후 소득원확보를 위한 은퇴자산 추가적립에 나서는 사람들의 비중이 25%에 이름[2]
-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설계를 받은 근로자의 월 평균 연금 투자액이 17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약 82%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음[3]

■ 특히,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는 중립적인 기관의 신뢰도 높은 연금설계로 가입자에게 적절한 연금저축 설계와 상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연금·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보 제공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함
  - 연금 및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연금·재무설계를 함께 제공할 경우 고객의 이익보다 금융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존함
  -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는 금융회사에게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연금·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신인의무 규정(Fiduciary Duty Rule)을 도입한 바 있음
- 신뢰도 높은 정보 전달로 인해 개인은 자신에게 맞는 연금자산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사회효용이 증가함
  - 정보 전달의 편이(Bias)가 감소하여 신뢰도(Credibility)가 높아질수록 경제주체가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효용이 높아진다는 점은 정보경제학[4]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음[5]

---

2) Clark R. L., d'Ambrosio, M. B., McDermed A. A. and Sawant K. S.(2006), "Retirement plans and saving decisions: the role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ance*
3) 한국재무설계 홈페이지, http://www.koreafp.co.kr/
4) 정보를 가진 조언자가 정보가 없는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여 사회후생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임. George Akerlof는 1970년 발표한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 그러나 현재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의 노후설계서비스는 추가적인 연금자산 축적을 위한 정보를 연금저축에 한정하여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음

-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한도는 연간 4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한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한 IRP와 기타 사적연금을 포괄하는 정보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적합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임[6)]

■ 연금저축 어드바이저가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의 연금설계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판매방식 개선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특히 과거와 달리 연금저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고객의 연금저축 선택과, 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판매방식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kiri

---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등의 논문으로 정보경제학의 영역을 개척한 공로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보경제학은 현대 경제학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음

5) Chakraborty and Harbaugh(2010), "Persuasion by Cheap talk", *American Economic Review*

6) Blackwell, David.(1953), "Equivalent comparisons of experiments", *The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24(2) 265.272

# 연금세제 변화 인지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유인

강성호 연구위원

요약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연금세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대와 달리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도 연금저축이 감소함. 이는 과세미달자 규모 증가, 낮은 세액공제율, 수수료 변화 외에 소득계층별 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특히, 본 분석은 중산층 이하 계층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득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가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중산층 이하 계층의 인지수준을 높여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연금세제 개편(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이후 중산층[1] 이상 계층의 연금저축[2] 가입은 감소하고 그 이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3] 중산층 이하 계층 또한 감소함

- 2013~2014년 동안 연금저축 가입은 전체 기준 6.2%(15.2만 명) 감소한 반면,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기준 34.7%(3.3만 명), 5천만 원 이하 소득자 기준 14.2%(11.1만 명) 감소함[4]
  - 2014~2015년의 경우에도 연금저축 가입은 전체기준 1.4%(3.2만 명) 감소하였으나, 2천만 원 이하 소득자 기준 54.1%(3.4만 명), 5천만 원 이하 소득자 기준 16.3%(11만 명) 감소
- 정원석 · 마지혜(2017)[5]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과세미달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세액공제율은 높지 않아,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가입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보았음

---

1) 2013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중산층 이하는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 5,500만 원(과세표준 약 4,500만 원)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2) 납부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적격 개인연금 상품으로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이 있음
3) 제도 설계상 근로자의 총급여(연간) 기준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연금저축 가입으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방식의 한계세율(과세표준 기준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이하 15%) 적용보다 가처분소득이 높아져 연금저축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4) 본고의 소득기준은 근로자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급여는 연간급여액(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함.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를 제외한 소득으로 소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득임
5) 정원석 · 마지혜(2017), 「연금저축의 감소 원인과 시사점」, 『KiRi 리포트』, 제412호, 보험연구원

- 김세중 · 최원(2014)[6]은 보험업권의 연금저축이 감소한 이유로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하[7]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음

- 그러나 최근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납부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과세미달자 규모 증가, 낮은 세액공제율, 수수료 인하 외에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8]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났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음

  - 연금세제 개편 전인 2013년의 소득증가율, 연금저축 증가율(2012년 대비)은 각각 2.9%, 2.3%로 소득과 연금저축 가입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함(〈표 1〉 참조)

〈표 1〉 연금세제 개편 전후의 소득 및 연금저축 변화율

(단위: %)

| 구분 | 2012년 대비 2013년 | | 2013년 대비 2014년 | | 2013년 대비 2015년 | |
|---|---|---|---|---|---|---|
| | 소득 증가율 | 연금저축 증가율 | 소득 증가율 | 연금저축 증가율 | 소득 증가율 | 연금저축 증가율 |
| 총급여 | 2.9 | 2.3 | 4.0 | -2.2 | 6.6 | -0.8 |
| 2천만 원 이하 | 0.9 | 20.4 | 3.2 | -60.4 | 3.7 | -75.2 |
| 2천만 원~5천만 원 | 0.0 | 1.8 | -0.3 | -12.4 | -0.4 | -14.4 |
| 5천만 원~1억 원 | 0.2 | 0.5 | 0.1 | -0.3 | 1.0 | -1.9 |
| 1억 원~10억 원 | 0.1 | 0.1 | -0.1 | 0.2 | 0.1 | -0.6 |
| 10억 원 초과 | 0.0 | 0.1 | -2.8 | -0.6 | -5.5 | -1.0 |
| 과세대상자 | 1.7 | 2.1 | 18.4 | 3.5 | 20.4 | 2.9 |
| 과세미달자 | -1.3 | 17.6 | 66.3 | -25.5 | 63.9 | -35.5 |

주: 1) 1인 기준으로 환산함
2) 과세대상자 + 과세미달자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

  - 그러나 연금세제 개편 후인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4.0%) 불구하고 연금저축은 감소(-2.2%)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음영부문 참조)
    - 특히, 2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동 기간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이 60.4%

6) 김세중 · 최원(2014), 「보험회사 세제적격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KiRi 리포트』, 제311호, 보험연구원을 참조하였으며, 여기서 연금저축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분석함
7) 생보사는 방카슈랑스채널의 수수료(예정신계약비)를 300% 내외에서 250% 내외로, 손보사는 대면채널과 방카슈랑스채널의 수수료(예정신계약비)를 각각 500% 내외에서 300% 내외, 300% 내외에서 250% 내외로 인하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1. 14),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 안내"
8) 보험소비자조사(2016)에 의하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5%)라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는 72.7%였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았음(저소득층의 90.6%가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

나 크게 감소하였음

- 이는 2천만 원 이하 계층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보장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정적 인식[9] 확산으로 연금저축 납부중지(혹은 해약)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됨

- 한편, 세제개편 2년차인 2015년의 경우 소득증가에도 연금저축은 여전히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었으나, 그 정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2014년의 상황보다 더욱 심화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점을 볼 때 저소득층의 경우 제도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금저축에 의한 노후준비는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함

**연금세제 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낮아 오해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로, 제도 변화가 없었던 대체가능한 금융상품은 가입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임**

- 한국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중산층 이하(5,500만 원[10] 이하) 근로자의 금융상품 가입 및 중단(혹은 해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에 비해 다른 금융상품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표 2〉 참조)
  - 퇴직연금, 연금보험,[11] 보장성보험, 저축보험, 자동차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A)는 가입중단(4.2%)보다 새로 가입(4.4%)한 비율이 약 0.2%p 높았음
  - 퇴직연금,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B)는 가입중단(4.0%)보다 새로 가입(4.1%)한 비율이 약 0.1%p 높았음
  - 단일 상품으로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금보험의 경우는 가입중단(4.9%)보다 새로 가입(5.1%)한 비율이 약 0.2%p 높았음

9) 보험소비자조사(2016) 결과를 통해 볼 때,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균소득이상자(예: 5,500만 원 이상)는 세제혜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평균소득 이하 자에도 그렇게 적용될 것이라고 인식된 것으로 보임
10) 총급여 기준 (연간)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이 15%(그 이상은 12% 적용)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함
11) 연금소득에 비과세되는 비적격 개인연금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만 취급하고 있음

〈표 2〉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대체성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상태 변화(2013년 대비 2014년 변화)

(단위: %, 명)

| 구분 | 금융상품군(A) | | 금융상품군(B) | | 연금보험 | |
|---|---|---|---|---|---|---|
| | 변화 비율 | 변화 빈도 | 변화 비율 | 변화 빈도 | 변화 비율 | 변화 빈도 |
| 계속 가입 | 22.7 | (3,684) | 18.7 | (2,434) | 2.9 | (93) |
| 가입중단 | 4.2 | (675) | 4.0 | (515) | 4.9 | (160) |
| 새로 가입 | 4.4 | (713) | 4.1 | (533) | 5.1 | (165) |
| 계속 미가입 | 68.8 | (11,163) | 73.2 | (9,506) | 87.1 | (2,829) |
| 합계 | 100.0 | (16,235) | 100.0 | (12,988) | 100.0 | (3,247) |

주: 1) A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
2) B는 퇴직연금,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중 최소 하나 이상 가입한 경우
3) 계속 가입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가입, 가입중단은 2013년에 가입하고 2014년에 미가입, 새로 가입은 2013년에 미가입하고 2014년에 가입, 계속 미가입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미가입한 경우임

자료: 한국재정패널조사 2013년 및 2014년 기준(7차, 8차 조사)으로 분석한 것임

- 이는 2013년에서 2014년 동안 중산층 이하 계층에 유리하도록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변경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에 비해 다른 금융상품이 상대적으로 선호된 것은 연금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오해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연금세제 및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연금세제 개편 후 중산층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들 집단이 연금세제 개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무엇보다 연금저축이 재테크가 아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kiri

KiRi 리포트 2017.5.29.

고령화

# 암치료 기술의 발전과 영향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기존의 치료방법들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 맞춤형 치료법인 면역치료법의 등장으로 향후 암치료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혁신적인 개인 맞춤형 암치료 기술의 개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음. 미래에 혁신적인 암치료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암보험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임.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질병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치료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기존의 치료방법들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2015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27.9%가 암으로 사망하며, 40세 이후 모든 연령에서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남
  - 인구 10만 명당 암사망자 수는 2005년 133.8명에서 2015년 150.8명으로 증가함
-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과 같은 암치료법들은 초기 암의 치료만 가능하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암세포 이외에 정상세포까지 파괴되는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
- 비교적 최근 개발된 표적 항암치료제의 경우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음

## 그러나 최근 개인 맞춤형 치료법인 면역치료법의 등장으로 향후 암치료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1]

- 면역치료법은 암환자에게 수술이나 약물 투여를 하지 않고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 암환자의 면역체

1) 국립암센터(2016), "Chimeric Antigen Receptor(CAR)를 이용한 암 면역치료" 참조

계를 강화시켜 인체가 스스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기존 치료법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면역치료법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치료법은 CAR(Chimeric Antigen Receptor)-T 치료법으로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T세포)를 추출한 후 면역세포가 특정 암세포에 반응하도록 변형 후 증식시킨 뒤 이를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방식임
  - 2015년 미국의 한 바이오회사는 CAR-T 치료법을 통해 생존율이 10~20%로 낮은 백혈병환자 22명의 생존율을 91% 수준까지 제고하는데 성공함
- CAR-T 치료법과 같은 면역치료법의 암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표 1〉 시대별 암 치료방법

| 구분 | 외과적 수술 | 방사선 요법 | 화학요법 | 표적 함암제 | 면역치료 |
|---|---|---|---|---|---|
| 개발시기 | 1800년대 | 1900년대 | 194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
| 방법 | 암세포를 수술로 제거 | 방사선을 암세포에 쪼여 암세포 사멸 | 독성이 있는 약을 투여하여 암세포 사멸 | 약을 투여하여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 억제 | 인체 면역반응을 증진하여 암질환 치료 |

자료: 국립암센터(2016), "Chimeric Antigen Receptor(CAR)를 이용한 암 면역치료" 재구성

- **아직까지 면역치료법은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성공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혁신적인 개인 맞춤형 암치료 기술의 개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음**

-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법은 대량생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2016년 임상시험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
- 또한 CAR-T의 성공적인 임상결과는 주로 혈액암에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형암(위암, 간암 등)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음
- 그러나 유전공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 개념적으로만 가능했던 암치료법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으며, 기술개발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암치료 기술의 개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됨

- **미래에 혁신적인 암치료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암보험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임**

- 암은 대표적인 사망원인으로 암 발생 시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암보험상품을 공급하고 있음

- 면역치료법과 같은 기술이 일반화된다면 외과적 수술과 입원 등에 대한 급부 니즈는 감소하고 신의료기술 치료에 대한 보장 니즈가 커질 것임
- 또한 맞춤형 암치료 기술은 높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액의 암치료비를 보장하는 고가의 암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질병치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와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주요 선진국들은 환자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병을 진단하고 적합한 치료제를 선정하는 정밀의학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IT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융합은 진단뿐 아니라 질병치료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질병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변화할 것임
-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의 니즈변화에 적합한 상품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kiri

# 치매와 우울증의 관계

이정택 연구위원

요약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면서 치매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 치매 발병의 다양한 위험요인 중 우울증이 있으며, 치매 환자들은 우울증 병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치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어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의 전조 정신질환인 우울증에 대한 다각도의 관리와 연구가 필요함

- 의학의 발전 및 출산율 감소에 따라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하게 높아지면서, 사망의 원인질환이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 중 치매의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은 9.2%이며 환자 수는 54만 1천 명으로 추정되고,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1)]
  - 건강보험 치매 환자 수는 2016년 약 46만 7천 명이며,[2)] 치매 환자의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1조 5천억 원, 본임부담금 1조 9백억 원이 사용되었음

- 치매 발병의 다양한 위험요인 중 우울증이 있으며, 치매 환자들은 과거 병력으로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3)]
  - 전체 치매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우울증의 과거 병력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음[4)]

---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5. 2)
2)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기타 치매 입·내원 환자를 합산함
3) 김보라 외 3인(2011), 「후기 발병 우울증과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생과의 관련성」,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4) Speck et al.(1996), “History of Depression as a Risk Factor for Alzheimer’s Disease”, Epidemiology; Buntinx et al.(1996), “Is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Followed by Dementia?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Based in General Practice”, Age Aging; Zubenko et al.(2003), “A collaborative study of the emergence and clinical

- 또한 청·장년기(45세 이전)에 발병한 우울증보다 후기(45세 이후)에 발병한 우울증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5]
  - 후기 발병 우울증을 정의하는 연령 기준은 45세부터 65세 이후로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후기 발병 우울증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치매환자의 대부분은 80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우울증 환자[6]는 50~70대에 집중되어 있음

- 2016년 8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고, 70세 이상은 91%를 차지함(〈그림 1〉 참조)
- 60세 이상 우울증 환자는 전체 우울증 환자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50세 이상은 61%를 차지함(〈그림 2〉 참조)
- 우울증 환자는 50~7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치매 환자는 70~80대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울증이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그림 1〉 2016년 치매 환자 연령별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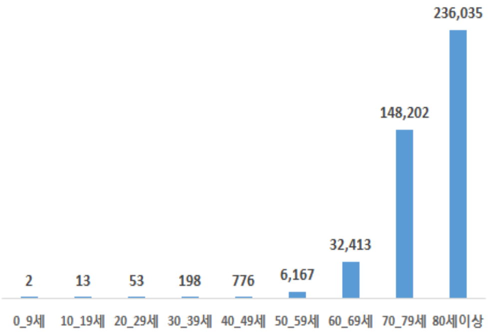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2010~2016)

〈그림 2〉 2016년 우울증 환자 연령별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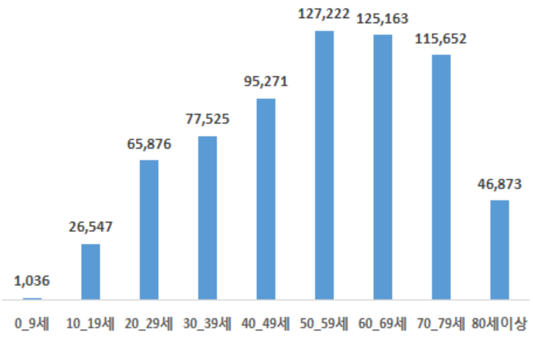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2010~2016)

■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시한 이후, 새 정부는 그 일환으로 치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할 예정임[7]

---

features of the major depressive syndrome of Alzheimer's disea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5) Alexopoulos GS(1996), "Geriatric Depression in Primary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6) 우울에피소드(F32), 재발성우울증(F33)의 입·내원 환자를 집계하였음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8. 18)

- 치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 77.9%에 비해 낮음
- 이에 정부는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연간 최대 120일간의 산정특례[8])를 적용할 예정임
  -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임

**치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어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의 전조 정신질환인 우울증에 대한 다각도의 관리와 연구가 필요함**

- 우울증이 치매의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우울증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공·사 건강보험이 향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치매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울증과 같은 치매의 전조 정신질환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임 kiri

8)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임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제도

# 연령과 금융자산에 따른 즉시종신연금 선호도 차이

최장훈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는 최근 개인연금 가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금융자산 대비 개인연금자산 비중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음. 정체되어 있는 연금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특성들 중 어떤 요인들이 고객의 연금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Banerjee(2017)[1]는 저축보유액이 중위계층인 사람이 다른 계층에 비해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이 낮다고 제시함.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연령이 낮거나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즉시종신연금 가입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와 정부는 연령과 금융자산 수준에 따른 선호도 차이에 대한 원인과 니즈 파악을 통해 즉시종신연금시장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개인연금 가입이 정체되어 있으며 금융자산 대비 개인연금자산 비중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음(〈표 1〉 참조)[2]

  - 최근 낮은 이율로 인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정체되어 있음
    - 2015년 개인연금보험 가입률 상승 폭은 전년 대비 0.1%p에 불과함

〈표 1〉 금융자산 대비 개인연금자산 비중(2014년 기준)

(단위: %)

| 구분 | 한국 | 미국 | 영국 | 스웨덴 | 독일 | 이탈리아 |
|---|---|---|---|---|---|---|
| 한국 | 3.8 | 31.2 | 48.5 | 29.6 | 14.1 | 6.3 |

자료: OECD Factbook 2015-2016

- 정체되어 있는 연금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특성들 중 어떤 요인들이 고객의 연금 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2017. 2. 8), “How Does the Level of Household Savings Affect Preference for Immediate Annuities?”
2) OECD Factbook(2016. 8. 26)

- 연금은 장수리스크와 은퇴 후 자금 관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
- 하지만 노후 건강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와 연금 가입 시 높은 초기 수수료 등 연금가입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음

■ Banerjee(2017)[3]는 2013년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저축보유액[4]이 중간 계층인 사람이 다른 계층의 사람보다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이 낮다고 주장함(〈그림 1〉 참조)

- 분석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들로 총저축보유액이 최소한 $1,000 이상인 사람들임
- 설문조사를 각각 총저축액 모두를 연금화할 의향이 있는지, 50%를 연금화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25%를 연금화할 의향이 있는지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연금선호도는 3가지 조사에 대해 저축 5분위별로 모두 U자 형태를 나타냄

〈그림 1〉 미국 가구의 저축 5분위별 연금화 선호도

(저축의 100% 연금화) (저축의 50% 연금화) (저축의 25% 연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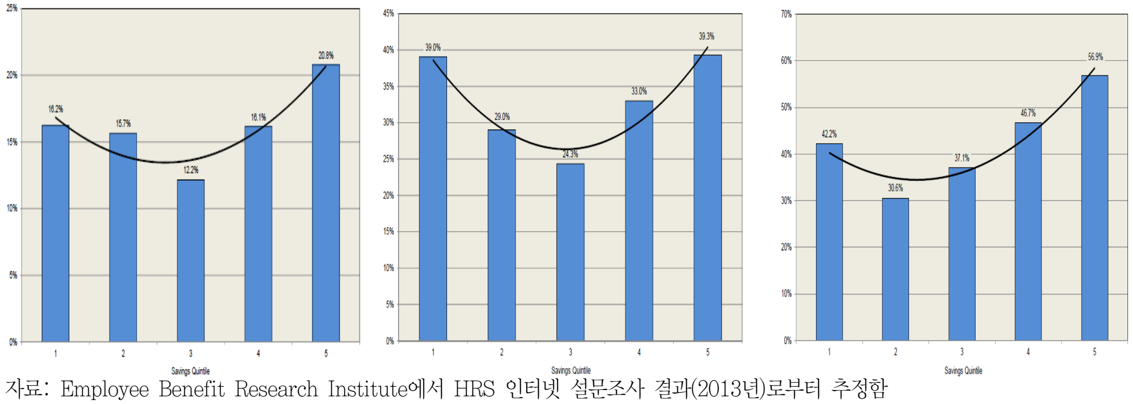


자료: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에서 HRS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2013년)로부터 추정함

■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축보유액이 중위계층인 사람의 연금 가입의향이 낮은 이유는 은퇴 시 자금이 만일에 대비하여 충분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수 있다고 함

- 저축수준이 낮은 사람은 은퇴 후 저축액이 단기간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음

---

3)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2017. 2. 8), "How Does the Level of Household Savings Affect Preference for Immediate Annuities?"

4) 예·적금, 주식, 펀드, IRA 포함

- 반면 저축수준이 높은 사람은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고 자식에게 유산을 남긴 후에도 연금을 가입할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 하지만 저축수준이 중간 계층인 사람은 은퇴 시 이용 자금이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선호하고 가능하다면 자식에게 유산도 남길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함

■ 반면 우리나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리고 고연령층에서는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은퇴시점에서의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표 3> 참조)

- 설문문항은 "귀하는 은퇴시점에서 즉시종신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임
- 연령대별 분석은 20~69세 연령을 10세 단위로 구분하였고 <표 2>와 같이 나타났음
  - 20대의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 비율이 55.8%로 가장 높고 60대의 경우 30.4%로 가장 낮게 조사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입의향이 낮아지는 것은 세대별 선호도에 차이가 있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질병에 대비한 유동성 자산의 중요성이 연금보다 높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음

<표 2> 우리나라 연령대별 가구의 즉시종신연금 선호도

(단위: 만 원, 명, %)

| 연령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합계 |
|---|---|---|---|---|---|---|
| 평균 금융자산 | 5,083 | 5,388 | 7,656 | 9,947 | 11,172 | 8,308 |
| 전체인원(A) | 120 | 395 | 583 | 587 | 335 | 2,020 |
|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 인원(B) | 67 | 164 | 224 | 215 | 102 | 772 |
| 가입의향 비율(B/A) | 55.8 | 41.5 | 38.4 | 36.6 | 30.4 | 38.2 |

자료: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2017년)

- 금융자산 분위별 분석은 50~69세를 대상으로 하였고 <표 3>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음
  -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 비율은 1분위 24.2%에서 5분위 43.2%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 금융자산이 적은 계층은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 우리나라 50~69세 가구의 금융자산 5분위별 즉시종신연금 선호도

(단위: 명, %)

| 금융자산 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합계 |
|---|---|---|---|---|---|---|
| 전체인원(A) | 182 | 184 | 187 | 184 | 185 | 922 |
| 즉시종신연금 가입의향 인원(B) | 44 | 59 | 66 | 68 | 80 | 317 |
| 가입의향 비율(B/A) | 24.2 | 32.1 | 35.3 | 37.0 | 43.2 | 34.4 |

주: 1) 분석대상 가구주 연령: 50~69세
2) 금융자산범위(1분위: 650만 원 이하, 2분위: 650~2,250만 원, 3분위: 2,250~5,898만 원, 4분위: 5,898~15,290만 원, 5분위: 15,290만 원 이상)

자료: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2017년)

- 보험회사와 정부는 연령과 금융자산 수준에 따른 선호도 차이에 대한 원인과 니즈 파악을 통해 즉시종신연금시장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는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즉시종신연금에 대한 홍보 또는 중도인출기능 강화 및 보장기능을 추가한 연금상품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고연령층에 대한 연금교육과 금융자산이 낮은 계층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kiri

# 4. 보험경영


1. 『장애와 건강 통계』를 통해 본 장애인 건강위험의 특징과 활용 | 오승연
2. 최근 RBC비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 | 김해식 조재린
3.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성과 | 조영현
4. 중국 리스크와 해외사업 지역다변화 | 전용식 이소양
5. 연성보험사기와 행동경제학 | 임 준
6. 보험회사, 자산관리 대중화시대에 대비할 필요 | 최장훈 임준환
7. 비대면채널 자동차보험 가입자 특성 및 시사점 | 기승도 이규성
8.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비교와 시사점 | 전용식
9. 헬스케어서비스와 건강나이 도입 | 김석영
10. 2016년 11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 기승도 한성원
11. 보험회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 | 오승연
12.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동향 | 조영현 한성원
13. 미국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 전용식
1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최창희
15.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사고위험 | 황현아
16.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 오승연
17. 보험회사의 포인트제도 활용 전략 | 김세중
18. 금리상승과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 관리 | 조영현
19. 중국 기업의 해외 금융회사 M&A와 소유·지배구조 | 전용식 이소양
20. 보험회사 상품구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 김해식
21.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 | 전용식
22.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 김석영 손민숙
23. 디지털 건강관리플랫폼 현황과 고려사항 | 오승연

# 『장애와 건강 통계』를 통해 본 장애인 건강위험의 특징과 활용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장애인의 건강위험을 추정할 수 있는 통계가 부재하여 보험상품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작년 9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발간한 『장애와 건강 통계』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장애인은 성, 연령,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건강상태, 의료이용, 사망률이 매우 다른 이질적인 집단임. 장애인 특성에 따른 사망률, 유병률, 진료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와 건강 통계』를 위험률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사망 및 건강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애인의 건강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보험산업의 통계가 부재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정책성 보험인 장애인전용 곰두리보험은 사망과 암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최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1]를 분석하여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함
  - 이번 통계집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2,510,574명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장애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애와 건강 통계』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및 검진 결과, 주요 질환, 의료이용 및 진료비, 사망률, 사망 원인과 사망 연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2]
    - 분석 대상 장애인의 특성 변수로는 성, 연령, 거주 지역, 장애 관련 변수(유형,[3] 등급, 진단일

---

1)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는 보건복지부의 등록 장애인 자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과 의료이용 자료, 통계청의 사망 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국가단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임
2)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보도자료(2016. 9), "우리나라 장애인 건강실태, 한눈에 밝히다"
3) 장애 분류 및 장애 유형

자 등)를 포함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 대비 유질환자의 비중이 성, 연령,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별 차이는 전체 인구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전체 장애인의 49.8%가 60세 이상이며, 58.2%가 남성이고, 84.8%가 외부신체기능장애임
  - 전체 인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유질환율이 각각 18.5%와 18.9%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과 다르게, 장애인은 여성(40%)이 남성(30%)에 비해 10% 정도 유질환율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와 장애인의 연령별 유질환율을 비교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으나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의 유질환율이 높게 나타남
  - 장애 유형별 유질환자의 비중은 외부신체기능장애가 34.6%, 내부기관장애가 44%, 정신장애가 14.1%로 내부기관장애의 질병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특성별 건강검진 결과 비교

(단위: 명, %)

| 구분 | | 장애인 | | | 전체 인구 | | |
|---|---|---|---|---|---|---|---|
| | | 검진 수검 인원 | 유질환자 수 | 비중 | 검진 수검 인원 | 유질환자 수 | 비중 |
| 성 | 남 | 389,480 | 116,844 | 30.0 | 7,152,110 | 1,325,135 | 18.5 |
| | 여 | 243,817 | 96,788 | 39.7 | 6,061,210 | 1,147,577 | 18.9 |
| 연령 | 20~44세 | 89,364 | 6,505 | 7.3 | 5,178,359 | 162,484 | 3.1 |
| | 45~64세 | 337,636 | 101,148 | 30.0 | 6,316,803 | 1,419,266 | 22.5 |
| | 65세~ | 206,297 | 105,979 | 51.4 | 1,718,167 | 890,962 | 51.9 |
| 장애 유형 | 외부신체 | 579,587 | 200,292 | 34.6 | - | - | - |
| | 내부기관 | 19,278 | 8,481 | 44.0 | - | - | - |
| | 정신 | 34,432 | 4,859 | 14.1 | - | - | - |

주: 건강검진은 1차 기본검진이며, 장애인은 2012년, 전체 인구는 2015년 수치임
자료: 『장애와 건강 통계(2016)』와 『2015 건강검진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작성함

- 장애인의 10대 사망원인은 일반인과 유사하나, 사망원인별 조사망률5)은 장애인이 전체 인구보다 3~6배 정도 높으며, 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조사망률은 2,164.8명(10만 명당)으로 전체 인구 조사망률인 530.8명보다 약 4배 더 높음

---

| 중분류 | 소분류 |
|---|---|
| 외부신체기능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
| 내부기관장애 | 신장, 심장, 간, 장루·오루, 호흡기, 뇌전증 |
| 정신장애 | 정신, 지적, 자폐성 |

4) 건강검진 수검 인원 중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정받은 수검 인원의 비율
5) 조사망률은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인구 수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 사망원인 1순위는 장애인과 전체 인구 모두 악성신생물(암)이며, 암으로 인한 장애인의 조사망률(457.7명)이 전체 인구보다 3.1배 높았음
- 장애인의 만성질환 조사망률은 당뇨병의 경우 전체 인구의 6.7배, 고혈압성 질환의 경우 4.2배 높게 나타났음

◎ 장애 유형별로 사망률에 차이가 나는데 내부장애, 외부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조사망률이 높았음
- 대체로 장애와 관련된 요인들이 주요 사망원인이었음

◎ 장애인 기대수명은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데, 사망 시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장애는 자폐성 장애(28.2세)였으며, 가장 높은 장애는 청각장애(80.34세)였음
- 지적장애(50.6세)나 간장애(57.6세) 등도 전체 인구 기대수명(2012년, 81.4세)보다 훨씬 낮게 나타남

**『장애와 건강 통계』는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별로 사망률, 유병률, 진료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험률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은 성, 연령, 장애 유형 등에 따라 사망률과 질병위험 그리고 의료이용에 있어 차이가 매우 커서 동질한 위험률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기 어려움

◎ 특히, 장애 유형별로 사망률 차이가 매우 크므로 위험률 산출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KiRi

# 최근 RBC비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

김해식 연구위원, 조재린 연구위원

요약

최근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금융당국의 자본규제 강화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감소임.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위험계수 상향 조정이 2016년 말까지 진행된 데 이어 2017년에는 금리연동형 계약과 변액보험에 대한 금리위험 산출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 가용자본의 경우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이익이 줄어들고 후순위채권 등의 발행비용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의 탄력적인 로드맵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보험회사도 기존 자본확충 수단에 제약이 커진 만큼, 보다 보수적으로 자본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 원인은 지속적인 자본규제 강화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재원의 감소임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선진화 로드맵'에 따라 지난 2년간 위험계수가 상향 적용되어 RBC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보험회사는 가용자본[1])을 확충하여 RBC비율 하락을 최소화함
    - 보험 및 금리위험에 이어 지난 12월에는 신용위험에도 더 높은 위험계수가 적용되면서 2016년 12월 보험회사 RBC비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2])
  - 그동안 보험회사는 저금리 환경에서 채권 가치 상승을 통한 채권평가이익과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행함으로써 가용자본을 확충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권평가이익 감소가 보험회사 RBC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됨
-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예고'를 통해 2017년 상반기부터 금리연동형 계약과 변액보험의 금리위험 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요구자본 산출 강화 방안을 추진함

---

1) RBC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2) 장기손해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2016년 9월과 비교하여 12월에 적게는 20%p에서 많게는 80%p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이번 조치의 특징은 저금리 추세를 염두에 두고 금리연동형과 변액보험의 금리위험에 대하여 무위험수익률(= 공시이율 – 신용스프레드)과 금리시나리오를 적용한 시가기준의 지급여력평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있음
- 특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계약의 경우 금리위험은 현행 공시이율에서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한 이자율 수준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하여 산출하므로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에 대한 RBC 요구자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금리연동형 계약의 금리위험은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아져서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정도로 측정되는데,
  - 이때, 신용스프레드를 차감한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비교하므로 요구자본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다른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금리연동형 계약의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나 보험회사 RBC비율(= 가용자본 / 요구자본)에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됨

■ 그러나 금융당국의 요구자본 증가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확충 수단은 매우 제한적임

- 현재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조달 원천에는 당기순익 및 이익잉여금,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채권 등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과 주식 발행이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저금리가 지속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채권의 발행비용이 상승하고, 평가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서 채권의 발행 및 평가이익을 가용자본을 확충하는 대안으로 삼기 어렵고 증자도 쉽지 않은 실정임

■ 단기적인 금리 상승 환경에서 재무건전성 로드맵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고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는 자본확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금융당국은 저금리 추세를 염두에 둔 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수익 관리와 보수적인 이익 유보를 통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임 kiri

#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성과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2013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이 상승하고 있음. RAROC 상승은 생명보험산업의 사업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러한 RAROC 상승의 요인으로는 위험손해율 하락에 의한 보험부문 이익 증가를 들 수 있음. 아울러 2013년부터 본격화된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원 · 점포 감축에 의한 비용 절감도 최근의 RAROC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생명보험회사들의 최근 사업효율성 제고는 손해율 개선 등 질적 개선과 임직원 · 점포 감축을 통한 양적 개선을 병행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질적 개선을 통한 RAROC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13년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1]이 상승하고 있음

- RAROC은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위험대비 이익률을 의미하며, 이 값이 높을수록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RAROC은 2013년 9.7%에서 2016년 9월 13.6%(연율화)로 상승세이며, 특히 대형사와 외국사의 RAROC 증가가 두드러짐
  - 단, 2016년 4/4분기에는 변액보증준비금 적립과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육류담보대출 충당금 등의 일회성 비용발생으로 2016년 전체의 RAROC은 13.6%보다 낮을 전망임
- 특히, 2014년부터 RBC제도가 강화되어 동일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본고에서 사용한 RAROC의 분모)이 증가[2]하였음에도 RAROC이 상승한 점에 주목할 만함
  - 한 예로써, 생보사 요구자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위험액의 신뢰수준이 95%에서 단

1) RAROC(Risk-adjusted Rate on Capital)은 기대당기순이익을 경제적 자본으로 나눈 값이며,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 창출하는 순이익을 의미함. 본고에서는 데이터 제약으로 인하여, 조정된 당기순이익과 RBC제도의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을 각각 기대당기순이익, 경제적자본의 대용치로 하여 RAROC을 추정하였음. 또한 지급여력기준금액 이상의 자본은 무위험자산(국고채 1년)에 투자되었다고 가정하여 그 이자수익만큼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정함

2) 2016년 9월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은 2013년 말 대비 44% 증가함

계적으로 99%(2016년 말)까지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동일 신용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1.5배 증가시켰음

〈표 1〉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 추정치

(단위: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9월 |
|---|---|---|---|---|---|
| 대형사 | 9.9 | 8.8 | 9.7 | 11.4 | 12.6 |
| 중소형사 | 16.7 | 8.7 | 7.1 | 11.7 | 10.0 |
| 외국사 | 23.8 | 16.2 | 17.4 | 14.0 | 22.7 |
| 전체 | 12.7 | 9.7 | 10.3 | 11.9 | 13.6 |

주: 1) 대형사는 교보, 삼성, 한화이며, 그 외 최대주주가 외국사인 경우는 외국사, 국내사인 경우는 중소형사로 분류함
2)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함
3)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계산, 2016년 9월의 RAROC은 연율화함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함

■ 이러한 RAROC 상승의 요인으로는 위험손해율 하락에 의한 보험부문 이익 증가를 들 수 있음

- 위험손해율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부문 이익(위험률 차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2〉 생명보험산업의 위험손해율

(단위: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9월 |
|---|---|---|---|---|---|
| 대형사 | 85.9 | 84.6 | 85.1 | 80.8 | 80.0 |
| 중소형사 | 97.2 | 95.2 | 95.9 | 91.5 | 90.3 |
| 외국사 | 93.7 | 91.2 | 90.0 | 84.3 | 80.2 |
| 전체 | 89.5 | 87.9 | 88.0 | 83.5 | 81.9 |

주: 1) 위험손해율은 사망보험금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
2)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함
3)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함

■ 아울러 2013년부터 본격화된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원·점포 감축에 의한 비용 절감도 최근의 RAROC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임직원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9월까지 11.7%가 줄어들었으며, 감원율은 대형사가 17.0%로 가장 높음
  - 인력 감축은 당기에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으로 일시적인 비용증가가 수반되므로 당기의 수익성을 악화시키지만, 이후에는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예를 들어, 인력감축을 실행한 A사(대형사)는 조정수입보험료 대비 인건비율이 3.5%(2013년)에서 2.7%(2016년 1~9월)로 0.8%p 하락하였음3)

- 점포는 2012년 말부터 2016년 9월까지 17.5%가 감소하였으며, 외국사의 경우 24.5%로 가장 높은 감축 비율을 보임

〈표 3〉 생명보험산업의 임직원 및 점포 현황

(단위: 명, 개, %)

| 구분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9월 | 증감률 |
|---|---|---|---|---|---|---|---|
| 임직원 | 대형사 | 15,783 | 16,131 | 14,217 | 13,322 | 13,381 | -17.0 |
| | 중소형사 | 7,272 | 7,279 | 7,059 | 7,126 | 7,083 | -2.7 |
| | 외국사 | 5,760 | 5,901 | 5,648 | 5,599 | 5,412 | -8.3 |
| | 전체 | 28,815 | 29,311 | 26,924 | 26,047 | 25,876 | -11.7 |
| 점포 | 대형사 | 2,496 | 2,374 | 2,172 | 2,118 | 2,062 | -17.4 |
| | 중소형사 | 1,145 | 1,139 | 996 | 988 | 1,004 | -12.3 |
| | 외국사 | 866 | 805 | 738 | 634 | 654 | -24.5 |
| | 전체 | 4,507 | 4,318 | 3,906 | 3,740 | 3,720 | -17.5 |

주: 1) 대형사는 교보, 삼성, 한화이며, 그 외 최대주주가 외국사인 경우는 외국사, 국내사인 경우는 중소형사로 분류함
2)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제외함
3) 임직원 증감률 계산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이며, 점포 증감률 계산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임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들의 최근 사업효율성 제고는 손해율 개선 등 질적 개선과 임직원·점포 감축을 통한 양적 개선을 병행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질적 개선을 통한 RAROC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양적 감축은 비용절감 효과보다 중장기적 성장성 및 평판 악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4)

-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부문별 RAROC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위험 대비 이익이 높은 사업(혹은 상품)의 확대 및 유지율 제고, 손해율 개선, 자산운용의 효율성(투자위험 대비 수익) 제고 등이 강화되어야 함 KiRi

3) 조정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를 제외하고, 일시납은 10%만 반영한 수입보험료임; A사 IR자료 참조
4) 김해식, 김세중, 김현경(2016),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참조

# 중국 리스크와 해외사업 지역다변화

전용식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요약

2016년 7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자국 산업에 영향이 미미한 관광, 문화콘텐츠, 유통,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임. 일본과의 영토분쟁 사례에서 나타난 중국의 관광 분야에서의 경제적 압력은 약 2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중국의 경제적 압력 조치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됨.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중국 리스크(China Risks)"로 인식될 수 있는데, 해외사업 지역다변화를 통한 중국 리스크 분산이 필요함

## 2016년 7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발표를 전후로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일반여행수입 수지는 2016년 6월 15억 10만 달러에서 2017년 1월 12억 850만 달러로 약 2억 9,160만 달러 감소(월평균 3.04% 감소)함(〈그림 1〉 참조)
  - 전년동기 일반여행수입 수지가 월평균 4.3% 증가한 것에 비하면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큼
- 중국에 대한 수출건수는 2016년 6월 209,811건에서 2017년 1월 127,268건으로 7개월간 평균 6.9% 감소하여 전년동기의 5.9%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 반면 수출금액은 같은 기간 월평균 0.8% 증가하였고 2017년 1월 무역수지는 28억 463만 7천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8.5% 증가함

## 지난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압력 수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불투명함[1)]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해 이웃 국가인 한국의 정국이 안정을 유지하

1) 新浪新闻(2017. 3. 10), "朴槿惠遭弹劾下台，下届总统会停止部署萨德吗"

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인했지만, 비판 수위가 한층 낮아졌음[2]

- 이는 중국이 우리나라 차기 정부의 사드 배치 속도 완화나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압력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서 나타난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됨(〈그림 2〉 참조)

- 2010년 발생한 일본과의 영토분쟁 직전인 2010년 8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171,503명에서 2011년 5월 58,608명으로 감소함
  -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선박이 나포된 이후 중국은 장관급 교류 중단, 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 일본여행 자제를 요청함[3]
-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귀속 조치 이전인 7월 204,207명에서 2012년 11월 51,993명으로 감소함
  - 2012년 7월 수준인 20여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약 2년이 소요됨(2014년 7월 281,309명)

〈그림 1〉 우리나라 일반여행수입 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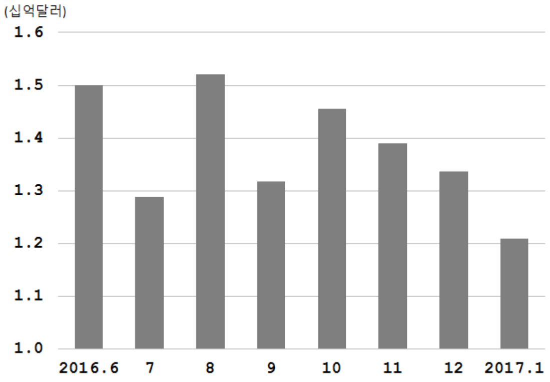


주: 국제수지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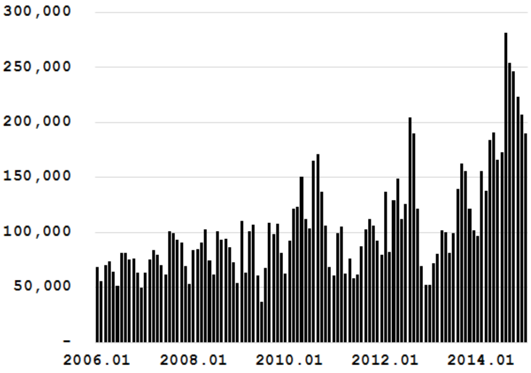


자료: 일본정부관광국, 「訪日外客數」

■ 현재까지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자국에 대한 충격이 적은 문화콘텐츠, 관광, 화장품 및 소비재 그리고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향후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기업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음

2) 腾讯新闻(2017. 3. 10), "朴槿惠被弹劾,中国外交部:希望韩国保持政局稳定"
3) 일본정부관광국, 「訪日外客數」, 각 호

- 2010년 중국 선박 나포 이후 약 1년 7개월 후인 2012년 4월에서 9월 기간 동안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감소함
-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귀속 조치 이후 중국 관영 언론들의 대일본의 비판 공세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반일시위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벌어졌음
  - 또한 중국인의 폭력적인 반일 시위로 인해 중국 내 일부 일본 자동차기업의 공장 생산 중단 및 편의점 영업중단 사건도 발생하였음

■ 경제적 압력 조치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합자기업의 형태로 중국에서 국내 기업이 아닌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 중국에 진출한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고객 대부분이 주로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중국 내 반한 시위로 국내 제조업 공장의 생산이 중단되면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손해보험 대형 3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 독자(현지) 법인이며 경영성과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고객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임
  -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12년 8월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14,394개인데, 반일 폭동과 파업으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피해규모는 최대 100억 엔에 이름4)

■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해외사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압력이 확대될 경우 해외사업의 위험이 확대될 수도 있음

- 2016년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국점포 총자산은 202.2억 달러로 전체 해외점포 총자산 888.6억 달러의 25%에 이름5)
  - 미국 131.9억 달러, 홍콩 115.2억 달러이며 싱가포르 56.8억 달러, 인도네시아 43.1억 달러, 베트남 41.3억 달러 순임
- 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의 35%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은 11개인데 중국 3개, 인도네시아 3개, 베트남 2개, 싱가포르 2개, 홍콩 1개임
  - 생명보험회사의 아시아 지역 현지법인은 중국 3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각 1개로 중국 진

4) 박정희(2012), 「일 대형손보사, SRCC 특약의 신규 계약을 중단」, 『KiRi 리포트』, 제203호, 보험연구원
5) 금융감독원(2016. 10. 4), "2016년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지표 평가 결과"

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해외사업 지역다변화를 통해 “중국 리스크(China Risks)”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 Iida(2015)에 따르면 “중국 리스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위험으로 2010~2012년간 촉발된 반일감정 확산 등인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한감정도 우리 기업에게는 정치적 위험임6)
- 일본의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China Plus One 전략을 2003년 사스발생 이후부터 추진하고 있음7)
  - China Plus One 전략은 일본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태국, 베트남, 홍콩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임
  -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은 2003년 79%에서 2010년 33%, 2015년 27%로 감소함(〈그림 3〉 참조)
- 중국 리스크 분산 전략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직접투자가 2011년 전후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4〉 참조) kiri

〈그림 3〉 일본 기업의 아시아 국가별 직접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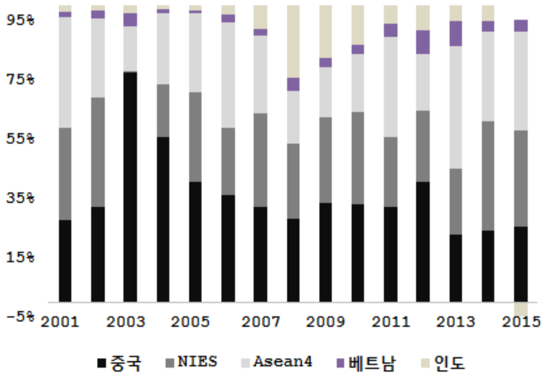


주: 1) 해외직접투자 기준
2) NIES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대만, Asean 4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임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

〈그림 4〉 일본 기업의 지역별 직접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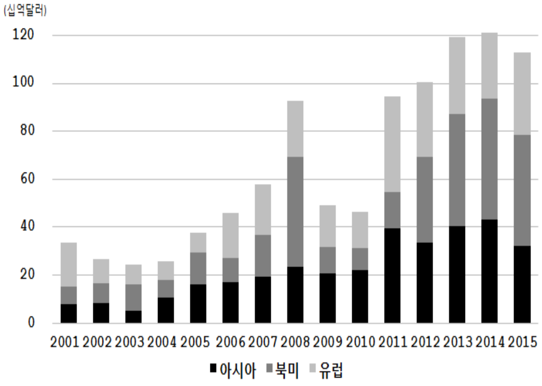


6) Keisuke Iida(2015. 8), “Political Risks and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ea: A Case Study of China-Plus-One”,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3-2, pp. 383~410
7) 일본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감소 원인은 정치적 위험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 세제혜택 감소, 위안화 변동성 확대 등 중국 시장의 매력도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함

KiRi 리포트 2017.3.20.

보험경영

# 연성보험사기와 행동경제학

임준 연구위원

**요약**

부정행위에 대한 행동경제학 연구결과를 연성보험사기에 적용하면, 연성보험사기는 소수의 사람들이 저지르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나 기회가 되면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행동경제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형량강화나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대책은 연성보험사기 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연성보험사기 대책으로는 홍보 · 교육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직 초보적인 수준임. 향후 연성보험사기 억제정책 개발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봄
  - 행동경제학은 합리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인간의 행위를 심리적 요인 등 합리성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설명하는 학문분야임

- 전통적인 경제학에 의하면, 범죄행위는 ① 범죄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 ② 발각될 가능성, ③ 체포되었을 때 예상되는 형량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됨[1)]
  - 첫 번째 요소는 범죄행위의 기대편익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범죄행위의 기대비용을 구성하는데 기대편익이 기대비용보다 클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됨
  - 전통적 경제학의 범죄결정이론에 의하면, 범죄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형량을 강화하는 것임

---

1)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범죄 경제학 이론은 'Simple Model of Rational Crime'이라고 불리는데, 게리 베커(Gary Becker)에 의해 고안되었음

보험경영

- 행동경제학자인 댄 애리얼리(Dan Ariely)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범죄결정이론이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음[2)]

  - 애리얼리가 관심을 가졌던 부정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기회가 되면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거짓말에 관한 것임

- 애리얼리는 일군의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그룹 A, B)으로 나누고 실험대상자들에게 20개의 문제를 주고 5분 동안 풀도록 한 후 정답 1개 당 50센트를 상금으로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음

  - 그룹 A의 경우에는 문제를 푼 후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하면 감독관이 채점하고 맞은 개수만큼 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 부정행위는 발생하지 않음(통제 상황으로 지칭)
  - 그룹 B의 경우에는 문제를 푼 후 답안지를 파쇄기에 넣어 파기한 후 감독관에게 맞힌 개수를 이야기하면 감독관이 맞춘 개수만큼 상금을 지급함(파쇄기 상황으로 지칭)
  - 통제 상황에서의 평균 정답 개수는 네 개였고, 파쇄기 상황에서의 평균 정답 개수는 여섯 개로 파쇄기 상황에서 평균 정답수가 더 많게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것은 아님
  - 흥미로운 사실은 파쇄기 상황의 평균이 높았던 것은 소수의 사람이 실제 맞춘 개수보다 더 많이 맞추었다고 거짓말을 한 결과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조금씩 더 맞추었다고 거짓말을 한 데 있음

-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에 일부 변화를 주었는데, 하나는 보상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답안지를 절반만 파쇄시키는 것이었음

  - 보상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답안지를 절반만 파쇄시키는 것은 발각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기대비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 보상금액이나 발각 가능성에 변화를 준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의 경우에도 평균 정답 개수는 여섯 개로 첫 번째 실험 파쇄기 상황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음
  - 이러한 결과는 사소한 거짓말의 경우에 부정행위의 수준이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도덕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함
  - 위 실험의 경우에는 피실험자들이 두 문제 정도 더 맞추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2) 댄 애리얼리(2012),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청림출판(원서의 제목은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에서 인용

■ 위 실험의 결과처럼 사소한 거짓말 여부가 내적인 도덕성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이러한 유형의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부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음[3)]

- 학자들은 실험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정직하게 작성하겠다는 서명을 그룹 A는 신고서 서두에 서명하게 하였고, 그룹 B는 신고서 말미에 서명하도록 하였음
- 실험결과 그룹 A의 부정행위 수준이 그룹 B보다 더 낮았음

■ 애리얼리의 연구결과를 보험사기, 특히 연성보험사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4)]

- 첫 번째 실험결과에 의하면, 연성보험사기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나 기회가 되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
-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결과에 의하면, 연성보험사기는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도덕성 기준에 의해 결정됨

■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고 보험사기 적발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5)] 앞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노력들은 경성보험사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연성보험사기 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형량이 강화되었고, 보험사기적발시스템 고도화는 조직적 보험사기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연성보험사기의 경우에는 경성보험사기와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 현재 대책들 가운데에서는 홍보와 교육 등이 연성보험사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의 연성보험사기 대책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성보험사기에 비해 연구나 정책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3) L. Shu, N. Mazar, F. Gino, D. Ariely, and M. Bazerman(2013), “Curtailing Fraud One Signature at a Time”, Working Paper, Harvard Kennedy School, Mossavar-Rahmani Center for Business and Government에서 인용
4) 경성보험사기는 의도된 또는 계획된 보험사기를 의미하고, 연성보험사기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후에 손실을 과장하는 기회주의적 보험사기를 의미함. 우연한 사고 후에 입원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연성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5) 금융위원회(2017. 1. 18),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 세부 추진계획”

■ 향후 연성보험사기 억제정책 개발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전문인력 활용을 고려해볼만 함[6] KiRi

6) 신생 P2P 보험회사인 Lemonade는 행동경제학적 연구결과를 보험회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댄 애리얼리를 Chief Behavioral Officer로 영입. 미국의 연구기관 가운데 ideas24가 있는데, 이 기관은 행동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조직임. 최근 국내 심리학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거짓말이나 준법정신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일반인을 위한 도서에 김형희(2016),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 허태균(2015), 『어쩌다 한국인』, 중앙books 등이 있음

# 보험회사, 자산관리 대중화시대에 대비할 필요

최장훈 연구위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요약

최근 자산관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고객 중 특히 중상류층 고객은 단순한 보험가입보다는 다양한 투자상품과 상속·절세 등에 대한 자문니즈가 강함. 보험회사가 개인 투자자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과학적인 기법에 의한 보험수요 창출과 이에 상응하는 판매채널의 고도화를 통해 보험가입 유지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법률상의 제한으로 실제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는 신 수익원으로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인 투자자문의 자산관리시장에 인가를 받아 공식적 진출을 통한 조직적인 대규모의 사업전개가 필요함

## 최근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표 1〉 참조)

- 자산관리 규모가 2013년 1,216조 6,198억 원에서 2016년 말 1,741조 241억 원으로 동 기간 동안 연 13% 증가율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자산관리 중 자문은 미미한 수준임
- 자산관리 서비스[1]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일임, 자문, 신탁 관련 서비스 등을 포함함

## 보험회사의 고객은 소득계층에 따라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바, 중상류층 시장에서는 단순한 보험가입보다는 다양한 투자상품과 상속·절세 등에 대한 자문니즈가 강함

- 미국 등 선진국 보험회사는 자산관리 시장에 진출하여 중상류층 보험고객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투자자문 보수를 취하는 수수료 기반 영업(Fee-Business)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미국 Metlife, Prudential보험회사, 유럽계 Allianz, Axa 등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들은 자산

1) ① 펀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 ② PEF: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③ 일임: 투자운용담당직원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④ 신탁: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일

관리시장에 이미 진출하여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2)

- 국내 보험회사도 저축보험, 연금, 변액보험 등 다양한 투자상품 외에 무료 투자자문을 하는 영업조직을 구축하여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무 인가상태로 소규모 수준에 불과함
- 최근 보험계약자는 고령화 및 저금리에 직면하여 보장성 수요뿐만 아니라 은퇴 설계, 재무 상담, 세제혜택 등 종합적 투자자문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적극적 부응이 필요함
  - 예컨대,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종신 사망보험 상품의 수요가 존재함3)

〈표 1〉 자산규모 추이

(단위: 천억 원)

| 구분 | 펀드 | PEF | 일임 | 자문 | 신탁 | 합계 |
|---|---|---|---|---|---|---|
| 2013년 | 3,284 | 32 | 3,753 | 126 | 4,971 | 12,166 |
| 2014년 | 3,714 | 32 | 3,904 | 177 | 5,461 | 13,289 |
| 2015년 | 4,136 | 40 | 5,043 | 134 | 6,013 | 15,366 |
| 2016년 | 4,624 | 28 | 5,478 | 129 | 7,151 | 17,410 |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 보험회사가 개인 투자자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경우 과학적인 기법에 의한 보험수요 창출과 이에 상응하는 판매채널의 고도화를 통해 보험가입 유지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사망률, 계약자 행위 모형 등의 보험모형과 장기적 위험/수익 모형과 같은 투자모형을 결합하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투자자문의 선취형, 후취형, 하이브리드 등을 통한 수수료 체계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음4)
- 연고 중심의 보험판매에서 벗어나 자문서비스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의 정확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보험가입 만족도를 높이고 유지율 제고에도 기여가 가능함
  - 보험회사는 설계사·보험법인 대리점(GA) 일변도 채널에서 인-바운드(In-bound) 중심의 자문점포 운영으로 모집비용 개선 등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채널다변화를 구축할 수 있음

## 이러한 투자자문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법률상의 제한으로 실제적으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2)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투자자문업진출에 대한 사례분석은 이와는 별도로 추후에 소개할 예정임
3) 종신 사망보험 가입 이후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하여 동 자금을 상속세로 납부하게 됨. 종신 사망보험 상품이 부재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건물의 매각, 차입 등을 통해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4)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투자 관련 수수료(변액보험 및 연금 관련 보증수수료)는 선취형만 존재하나 은행 및 증권의 경우 투자상품의 자문 관련 수수료는 다양한 수수료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보험회사는 투자자문업을 겸영업무로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를 받지 못해 실제로 투자자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투자자문업은 「보험업법」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5] 및 「보험업법 시행령」 16조 2항[6]에 법률근거를 두고 있음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고 있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따라서 보험회사는 신 수익원으로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인 투자자문의 자산관리시장에 인가를 받아 공식적 진출을 통한 조직적인 대규모의 사업전개가 필요함**

- 나아가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법인고객까지 투자자문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시장 진출 전략-본체 내 또는 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인수, 자산관리 대상의 선택, 수수료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앞서 정책당국자는 타 금융권과 대비하여 종합적인 투자자문업 서비스제공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보험회사의 자문업 진출인가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봄 kiri

5)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6)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2. 7. 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신탁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7.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보험경영

# 비대면채널 자동차보험 가입자 특성 및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이규성 연구원

요약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CM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과거 CM채널을 포함한 비대면채널 가입자 특성을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 발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나이는 약 44세 미만, 소득수준은 약 3,7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주로 비대면채널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를 목표시장으로 한 마케팅 믹스전략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자동차보험 비대면채널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30.7% 수준임

- 보험개발원 통계연감에 따르면, 비대면채널의 시장점유율이 과거 5년간 연평균 4.1%씩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30.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1)]
- 특히 비대면채널 중 CM(Cyber Market)부문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이후로 연평균 26.2%씩 성장하고 있으며, TM부문의 시장점유율은 연평균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비대면채널 시장점유율 증가율

(단위: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연평균 증가율 |
|---|---|---|---|---|---|---|
| 대면 | 73.9 | 71.3 | 70.7 | 69.4 | 69.3 | -1.6 |
| 비대면 | 26.1 | 28.7 | 29.3 | 30.6 | 30.7 | 4.1 |
| TM | 22.8 | 24.2 | 23.9 | 23.8 | 22.3 | -0.6 |
| CM | 3.3 | 4.5 | 5.3 | 6.7 | 8.42 | 26.2 |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17. 손해보험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역", 각 연도

1) Datamonitor에 따르면, 영국 자동차보험에서 직접판매방식 보험회사(Direct Line Insurer)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에 34.6%인 것으로 나타남; Datamonitor(2015), "UK Broker Industry Strategic Trends 2015", p. 4 참조

- 보험소비자에게 정보제공 목적으로 도입된 보험료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와 CM상품 허용 등으로 비대면채널 자동차보험 시장(특히 CM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11월 30일에 출범한 『보험다모아』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2] 그 중 22%가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함[3]
  - 최근 2017년 1월에 손해보험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료를 내리면서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더 크게 하였고, 다른 손해보험회사들도 적극적으로 CM전용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등 CM 시장을 둘러싼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있음[4]

- 이에 본고에서는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데이터[5]를 활용하여 비채면채널 가입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분석은 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6]과 ②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7]의 두 가지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실시함(통계분석 결과는 별첨 참조)

-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연령과 소득수준이 적을수록 비대면채널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대면채널 가입소비자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변수는 연령과 소득인 것으로 나타남(별첨 〈분석 1〉 참조)
    - 즉, 연령의 경우 30대 이하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입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의 경우도 소득이 낮아질수록 비대면채널에 가입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특히 소득구간이 3천만 원 중반대 계층의 비대면채널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1. 30), “「보험다모아」 1년, 방문자 수 100만 명 돌파 및 저렴하고 가입도 간편한 온라인 보험 활성화 등 성과”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1. 2), “새해부터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 · 조회 대상이 확대됩니다”
4) 파이낸셜뉴스(2017. 1. 11), “삼성화재 온라인 자동차보험료 인하..가격경쟁 불붙나”
5)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설문조사(표본 수: 총 1,200명), 본 분석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약 500명의 표본을 사용함
6) 로지스틱모형(Logistic model)이란 2개의 반응범주를 취하는 이항변수 Y를 공변량(Covariate) X로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형(본 분석에서는 비대면채널 가입을 Y=1로, 대면채널 가입을 Y=0으로 나타낸 반응변수 Y를 예측변수 X로 설명함)임
7)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도표화하여 관심대상이 되는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분석방법임; 최종후 · 서두성(1999),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의 응용」, 『통계분석연구』, 제4권 제1호

〈그림 1〉 비대면채널 가입지 수(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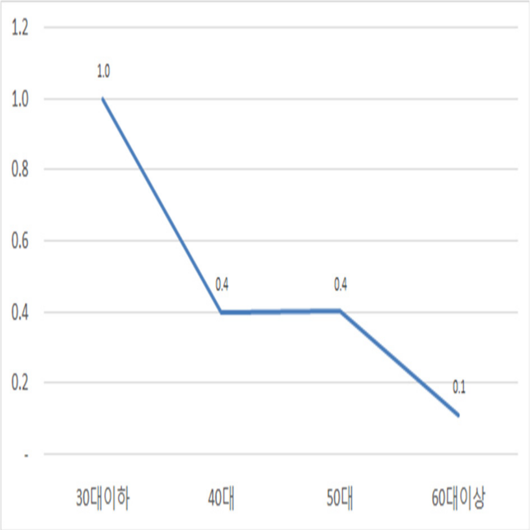


〈그림 2〉 비대면채널 가입지 수(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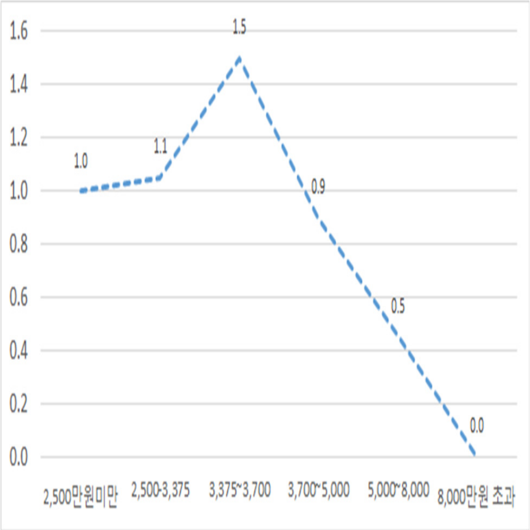


- '연령', '소득' 변수 및 다른 변수를 포함한 시장을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 연령이 44.5세 미만이면서, 직업은 직장인 혹은 주부이며, 소득이 3,375~3,700만 원 수준의 소비자가 비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관측됨(별첨 〈분석 2〉 참조)
- 이상 분석결과를 볼 때, 비대면채널에 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 비대면채널에 익숙한 연령계층(45세 미만 연령층)이면서 보험료절감 필요성이 높은 소득계층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는 비대면채널 가입자 특성에 부합한 마케팅 경쟁전략을 수립 · 시행하는 등 비대면채널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연령측면에서는 20~30대 또는 45세 미만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하여 이들 소비자들의 행동양태에 부합한 마케팅 믹스전략[8])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소득측면에서는 연 3,700만 원 이하이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kiri

8) 마케팅 믹스전략이란 마케팅 실행전략으로서 세분시장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도록 4P(Price, Place, Product, Promotion)를 조합하는 방법임

## [별첨] 통계분석 결과

〈분석 1〉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 구분 | Coefficient | Standard error | Z-statistic | P-value |
|---|---|---|---|---|
| 상수항 | -13.9 | 1620 | -0.009 | 0.9931 |
| 나이 | -0.0571 | 0.015 | -3.816 | 0.0001*** |
| 성별 | -0.578 | 0.388 | -1.489 | 0.1364 |
| 학력[고졸/중졸 이하] | 15.7 | 1620 | 0.01 | 0.9923 |
| 학력[대졸 이상/중졸 이하] | 15.6 | 1620 | 0.01 | 0.9923 |
| 학력[대학원 이상/중졸 이하] | 16.9 | 1620 | 0.01 | 0.9917 |
| 학력[무응답/중졸 이하] | -0.925 | 2030 | 0 | 0.9996 |
| 소득 | -0.00021 | 0.000111 | -1.86 | 0.0629* |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351.61
Mcfadden $R^2$ : 12.63%
AUC(Area Under the ROC Curve): 72.53
$\chi^2_7 = 35.6$

주: 1) p-value 〈 10%의 경우 *, p-value 〈 5%의 경우 **, p-value 〈 1%의 경우 ***
2) AUC(로지스틱모형의 예측력 정도): Good(0.8 〈 AUC ≦ 1), Fair(0.7 〈 AUC ≦ 0.8), Bad(0.5 〈 AUC ≦ 0.7)
3) AIC 비교를 통해 종속변수(비대면채널 가입여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찾은 결과, 나이, 성별, 학력, 소득이 독립변수로 채택됨

〈분석 2〉 의사결정나무 분석(C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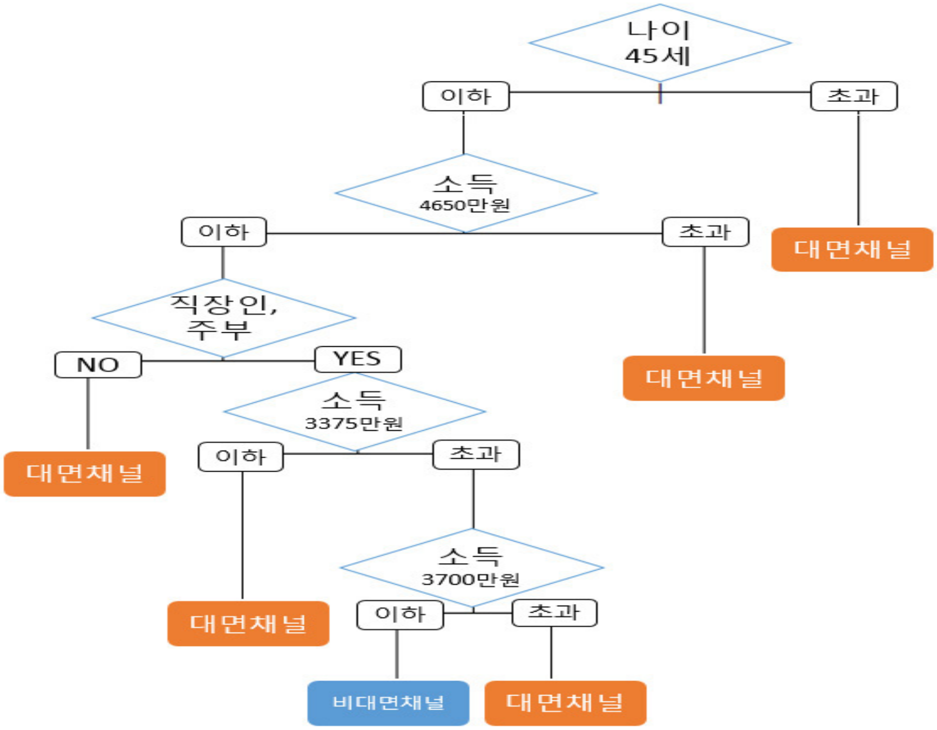


보험경영

KiRi 리포트 2017.4.17.

보험경영

#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비교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익률 기준 수익성이 금리하락 추세와 병행하여 하락하고 있음. 금리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확대하며 수익성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장포화로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국 보험회사들의 경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수료 수익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 수익은 변액연금 및 보험상품, 자산관리 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음. 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는 보험회사에게 이익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에게는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금융위험을 복합적으로 관리하여 장기 자산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 ·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생명보험산업의 자본이익률은 4.1%로 2015년 5.8%에 비해 1.7%p 하락함

- 생명보험 종목 가운데 비중이 큰 저축성보험이 감소하였고 대출손실 등 일회성 요인이 작용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6,9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함[1)]
- 반면 손해보험의 자본이익률은 11.3%로 2015년 9.6%에 비해 1.7%p 상승함

〈표 1〉 국고채 5년물 금리와 생명보험 자본이익률

(단위: %)

| 분류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국고채 5년물 금리 | 4.3 | 3.9 | 3.24 | 3.0 | 2.84 | 1.97 | 1.53 |
| 생명보험 ROE | 10.4 | 8.4 | 7.6 | 5.5 | 5.9 | 5.8 | 4.1 |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2. 21), "2016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금리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2021년 보험부채시가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는 줄어들고 있음
- 그러나 보험시장의 시장포화 현상으로 보장성보험 수요는 정체된 것으로 보임
  - 2016년 개인 보험가입률은 93.8%로 10명 중 9명 이상이 보험상품을 보유하고 있음[2)]

## 반면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금리 및 시장위험이 적은 수수료 사업 비중이 크며 수수료 수익 가운데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포함됨

- 1999년에서 2009년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의 수익(Revenue)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의 평균은 10년간 12% 수준임[3)]
  - 변액연금 등 보험상품과 관련된 수수료, 연금계좌 유지 수수료 이외에도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 수수료 등도 부과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대형 생명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 프루덴셜, 뉴욕라이프, 프린시펄의 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은 13.6%, 17.1%, 12.5%, 30.5%임
  - 뉴욕라이프의 2015년 수익(Revenue)은 261.3억 달러인데 유니버셜보험과 투자형상품 관련 수수료 규모는 14.8억 달러, 투자자문 서비스 수수료는 17.9억 달러임
  - 프루덴셜의 경우 변액연금 상품 관련 수수료 규모는 59.7억 달러, 자산관리 및 서비스 수수료는 37.7억 달러임
  - 변액연금, 퇴직연금 사업비중이 큰 프린시펄의 2015년 수익은 119.6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전체 수수료 수익은 36.5억 달러이고 퇴직연금 자산운용서비스, 투자신탁 수수료 수익은 15.6억 달러임

〈표 2〉 미국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2015년 수수료 수익 비중과 특별계정 자산 비중

(단위: %)

| 구분 | 메트라이프 | 프루덴셜 | 뉴욕라이프 | 프린시펄 |
|---|---|---|---|---|
| 수수료 수익 비중 | 13.6 | 17.1 | 12.5 | 30.5 |
| 특별계정 자산 비중 | 34.4 | 37.7 | 11.9 | 62.6 |
| 자본이익률 | 7.5 | 13.3 | 10.1[1)] | 12.5 |

주: 1) 뉴욕라이프는 상호회사이므로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이익률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2015년 자본이익률을 주식회사의 자본에 상응하는 자본잉여(Surplus, 186억 달러) 대비 영업이익(18억 7,500만 달러) 비율로 추정함
자료: 각 보험회사 연차보고서

2) 보험연구원(2016),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 참조
3) Columbia University(2010. 11), "Analysis and Valuation of Insurance Companies"

## 영국의 프루덴셜, 독일의 알리안츠 등은 자산운용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

- 영국 프루덴셜은 1980년대 후반 자산운용회사를 인수하면서, 독일 알리안츠는 1990년대 후반 자산운용을 확대하기 시작함[4)]
  - 영국 프루덴셜의 2016년 자산운용사업 비중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13.4%이고 미국 사업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의 74%가 변액연금 관련 수수료 수익임[5)]
  - 독일 알리안츠의 2016년 자산운용사업 비중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3% 수준임
- 독일 알리안츠의 투자자문(Investment Advisory) 수수료 수익은 87억 유로로 전체 수익의 7.9% 수준임
  - 알리안츠의 경우 연금수요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자산관리 및 운용 수요 증가를 전망하였고 보험회사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함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적 · 전략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보험회사의 투자자문,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는 이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6)]
  - 2016년 국내 생명보험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은 904.9억 원, 신탁보수는 189.8억 원,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수익은 1조 3,137억 원으로 총수익의 0.08%, 0.02%, 1.15% 수준임
  - 수수료 수익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수입한 금액(유가증권 인수 수수료, 주식대여 수수료, 대출 수수료 등)이며 신탁보수는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에 대해 신탁계정으로부터 받는 보수임
  -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경우 80년대 후반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과 은행 파산을 경험하면서 이자수익 비중을 줄이고 수수료 수익 비중을 확대함[7)]
-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의 사망위험(기대수명 연장)과 투자위험을 복합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다각화 검토가 필요함 kiri

---

4) 전용식 · 조영현(2016),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주요 해외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5) 영국 프루덴셜의 미국 사업비중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48%임
6) 전용식 외(2014), 「캐나다 생명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 전략」, 『KiRi 리포트』, 제312호, 보험연구원
7) 1991년 미국 상업은행의 총대출 대비 상각액 비율은 1.6%로 2008년 1.3%에 비해 높았고 1985년에서 1992년 기간에 1,632개 은행이 파산함

# 헬스케어서비스와 건강나이 도입

김석영 연구위원

**요약**

헬스케어서비스는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줄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상품의 개발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헬스케어서비스에 보험계약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건강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함. 건강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재정 개선,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그리고 개인 의료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 헬스케어서비스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Bio 기술의 결합으로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 상품의 개발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를 통하여 고객의 건강정보가 의료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건강변화를 관찰하여 사전에 질병 발생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음
  - 고객의 위험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고객별 위험측정 및 관리가 가능해짐
  - 서비스를 통한 건강관리는 고객의 질병발생 확률을 떨어뜨려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에도 유리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강해진 피보험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니즈 및 유지하고자 하는 니즈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은 초보단계[1] 수준에서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상품을 소개하고 있음

---

1)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계약자에게 건강상담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계약자가 헬스케어를 하도록 유도하는 상품의 단계를 의미함

- 하루에 몇 보 이상 걸을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가입당시 보험사가 정한 일정 수준의 건강상태에 해당하면 우량체 보험료를 적용하는 등의 상품을 판매하였음
-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특정 보험상품 가입 이후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서비스, 2차 견해 및 치료 플래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험급부금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또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

- 헬스케어서비스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양한 건강정보 및 상담을 통해서 계약자의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현재의 보험료 산출체계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가 변화하여도 위험률 운용상의 한계로 인해 이를 바로 보험가격 산출에 반영할 수 없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자 수가 적어 헬스케어서비스 기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있음[2)]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3)] 개발을 준비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상품 개발 검토

■ 건강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건강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에서의 보험료 산출은 현재의 보험나이 기준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4)]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자의 실제 건강리스크를 반영하는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임
  -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건강나이를 측정하여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면 보험계약자의 건강나이가 젊어질 경우 보험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

---

2)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131010018933
3) 외국에서는 운동 또는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하여 갱신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4) 보장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보장기간 동안의 평준보험료

◉ 피보험자는 질병위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피보험자는 실제나이와 관계없이, 현재의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됨

〈그림 1〉 보험나이 기준 보험료 산출방식과 건강나이 기준 보험료 산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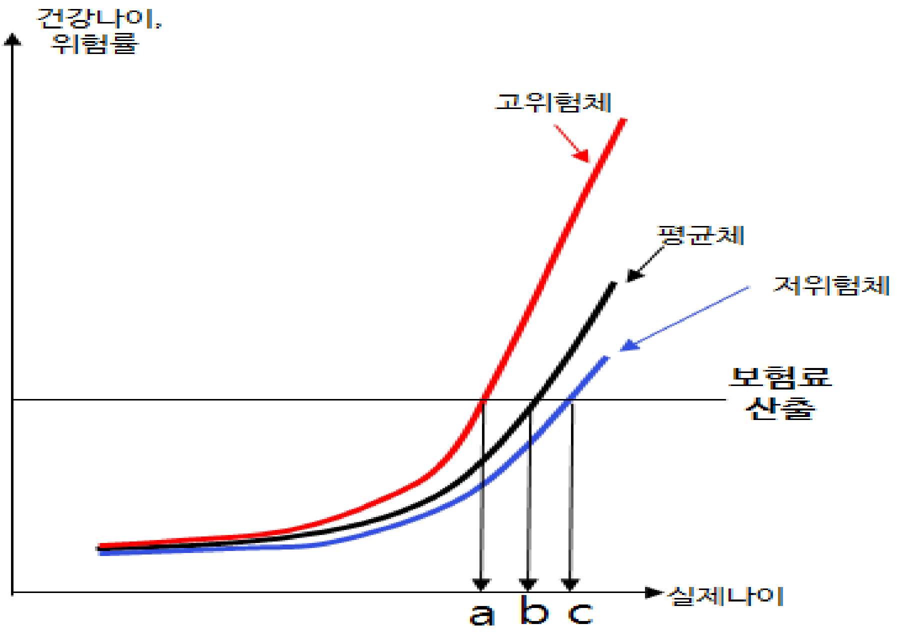


주: 실제 나이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시 a, b, c는 평균체 위험률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료를 내야 하나 건강나이 기준 보험료 산출방식에서는 건강나이가 동일하여 모두 다 실제나이 b의 보험료를 내게 됨

■ 건강나이 기준 보험료 산출방식은 갱신형 상품 또는 간편심사 상품에서 발생하는 포트폴리오 리스크[5]를 해소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위험군도 합리적인 보험가격 지불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할 것임

◉ 갱신형보험은 갱신시점, 그리고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상품 가입 시 역선택자의 대량 유입으로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발생하여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간편심사보험은 연령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건강리스크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동일한 보험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은 집단이 대량 가입할 경우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매우 큼

5) 고위험집단과 저위험집단의 평균보험료는 고위험집단에게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원하지만 저위험집단은 보험료가 오히려 비싼 편이기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게 됨에 따라 실제 가입자는 고위험집단이 더 많아지는 현상으로 생기는 리스크

- 건강나이 기준 보험료 산출방식은 피보험자의 건강리스크에 맞추어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다른 건강리스크를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 리스크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음
- 다만, 건강나이 기준의 보험료 산출체계를 위해서는 건강나이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 및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 헬스케어서비스가 건강나이에 기반한 보험상품에 도입되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정부, 보험회사,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줄 수 있음

-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 재정 개선효과 예상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기대
- 피보험자는 자신의 건강을 꾸준히 유지 관리하게 되어 의료비 절감 효과 kiri

# 2016년 11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로 2014년보다 약 6.2%p 개선되었지만, 예정손해율(약 78% 수준으로 추정)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실적 손해율 개선 효과는 사고발생률 감소와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보험료 인상효과는 보험금 원가인 1사고 당 손해액을 상쇄하는 수준이었음. 예정손해율보다 높은 현 실적 손해율 82.6%는 여전히 적자가 예상되는 수준임. 따라서 운행행태별 요율차등화제도 도입,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단속 강화 등 사고감소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로 2014년보다[1] 약 6.2%p 개선되었지만, 예정손해율(약 78% 수준으로 가정)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1〉 2014년 대비 2016년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증감률

(단위: %, %p)

| 구분 | 2014년 12월 (A) | 2016년 11월 (B) | 증감률 (C=B-A) |
|---|---|---|---|
| 손해율 | 88.9 | 82.6 | -6.2 |

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2014년 12월 말 및 2016년 11월 말 기준

-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 감소와 보험금 원가(1사고 당 손해액) 증가 수준을 대체하는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14년보다 2016년 손해율이 낮아졌음

  - 2016년부터 시행된 보복운전 처벌 강화, 1차선 주행단속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달라진

1)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추이는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2014년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임. 이러한 손해율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세부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이유로 본 자료의 분석 기준 시점을 2014년으로 정하였음

교통법규 제도의 영향으로 사고발생률은 손해율 감소에 6.4%p 영향을 주었음

- 자동차보험산업 적자규모가 가장 컸던 2014년 이후,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도록 점진적으로 인상된 보험료 효과가 반영되어 대당보험료 증가는 손해율 감소에 8.7%p 영향을 주었음
- 반면 보험금 지급 원가(수리비 단가, 인건비 등)의 인상효과가 반영된 1사고 당 손해액은 손해율 증가에 8.9%p 영향을 주었음

〈표 2〉 2016년 11월 말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감 요인별 분석

(단위: 천 원, %, %p)

| 구분 | 2014년 12월 말 (A) | 2016년 11월 말 (B) | 증감률 (C=B-A) |
|---|---|---|---|
| 손해율 | 88.9 | 82.6 | -6.2 |
| 사고발생률 | 45.5 | 42.2 | -6.4 |
| 대당보험료 | 639 | 702 | -8.7 |
| 1사고 당 손해액 | 1,249 | 1,374 | 8.9 |
| 기타 복합요인 | - | - | 0.0 |

주: 1) 전체 보험종목을 합산한 손해율 분석임
2) 사고발생률, 대당보험료 및 1사고 당 손해액의 값은 전체담보를 단순 합산한 값으로, 실제 값이 아니며 손해율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임의의 수치임
3) 서영길(1992),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조변화 분석모형」, 『보험개발연구』, 제6호, 보험연구원에서 제시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분석함

$$\text{당기손해율} - \text{전기손해율} = \text{전기손해율} \times \frac{-(\text{당기대당경과보험료} - \text{전기대당경과보험료})}{\text{당기대당경과보험료}}$$
$$+ \text{전기손해율} \times \frac{\text{당기사고발생률} - \text{전기사고발생률}}{\text{전기사고발생률}}$$
$$+ \text{전기손해율} \times \frac{\text{당기1사고당손해액} - \text{전기1사고당손해액})}{\text{전기1사고당손해액}} + \text{기타복합요인}$$

## 담보별로 손해율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를 제외한 전체 담보의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담보의 손해율 개선이 두드러짐

- 모든 담보에서 사고발생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담보와 자기신체사고담보의 사고발생률이 크게 줄어듦
- 1사고 당 손해액은 무보험차상해를 제외한 모든 담보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기차량손해와 대인배상Ⅱ에서 크게 늘어남
- 대당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등 물적담보의 보험료 인상이 전체적인 손해율 개선에 큰 영향을 주었음

〈표 3〉 담보별 손해율 변화 지수

| 구분 | 손해율 | 사고발생률 | 1사고 당 손해액 | 대당보험료 |
|---|---|---|---|---|
| 대인배상Ⅰ | 1.086 | 0.880 | 1.078 | 0.873 |
| 대인배상Ⅱ | 1.012 | 0.997 | 1.241 | 1.223 |
| 대물배상 | 0.892 | 0.947 | 1.073 | 1.140 |
| 자기신체사고 | 0.792 | 0.829 | 1.057 | 1.107 |
| 자기차량손해 | 0.815 | 0.741 | 1.207 | 1.098 |
| 무보험차상해 | 0.617 | 0.907 | 0.737 | 1.083 |
| 전체 | 0.930 | 0.928 | 1.100 | 1.098 |

주: 1) 비율은 2016년 11월 실적(A) / 2014년 12월 실적(B)으로 계산함
　　2)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보험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2014년 12월 말 및 2016년 11월 말 기준

- 2016년 11월 말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 82.6%는 예정손해율(약 78% 수준으로 추정)에 비해 여전히 높기[2]때문에 손해율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보험제도와 사회 전체 수준의 제도운영 효율화를 통해 사고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보험제도 측면에서 운행행태별 요율차등화제도 도입 등과 같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단속 강화, 음주단속 강화,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사고발생률을 줄이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이외에도 법률제도 및 보험약관 중에서 운전자 및 피해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정비 등을 통한 보험금 원가 증가요인을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kiri

2) 실적손해율이 예정손해율보다 높다는 것은 현 수준의 보험료로 자동차사고 보상금(또는 배상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 또는 자동차보험 산업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뜻임

# 보험회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 혜택을 주로 건강군이 받게 되는 형평성 문제와 건강군이 위험군보다 건강생활서비스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역선택 문제가 있음.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선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군이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보험가입자가 건강생활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건강군에서 위험군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인센티브 설계 시 주의가 요구됨

-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생활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임[1)]

- 건강생활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건강생활서비스의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미국은 주로 기업들이 건강보험을 제공하면서 건강생활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전체가 건강생활서비스의 대상임
  -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건강 위험군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어려워 위험군에게는 오히려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 위험군이 될 확률이 높고,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한 조건인 건강 프로그램 참여 혹은 건강 목표 달성 등을 수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

1) 건강생활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조용운 · 오승연(2017), 「건강생활서비스의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식」, 『KiRi 리포트』, 제418호 참조

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2)]

–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는 인센티브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음[3)]

- 건강군이 위험군보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더 높은 일종의 역선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생활서비스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4)]
  – 일반적으로 역선택은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건강생활서비스에 적용하면 건강군이 위험군보다 프로그램 참여율이 더 높은 현상을 말함

##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형평성과 역선택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 기존 보험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됨
  –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가입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보험금 지출 감소를 위해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함
- 건강생활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상품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기존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면 인상분만큼 보험가입자가 건강생활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형평성 문제보다 역선택 문제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음

-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 위험군이 건강생활프로그램과 인센티브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생활서비스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건강 위험군이 건강생활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생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존 보험가입자를 건강군과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들이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임

---

2) Schmidt et al.(2010), “Carrots, Sticks, and Health Care Reform – Problems with Wellness Incentive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p. 362
3) 건강생활서비스의 현금 인센티브 제공 수준을 건강보험료의 30%(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50%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4) Damon Jones(2010. 7), “Are Wellness Programs Any Good?”, *Stanford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policy brief*

■ 보험가입자가 건강생활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건강군에서 위험군으로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건강군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위험군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임
- 또한 건강생활서비스 혜택을 보험가입자 내 위험군보다는 건강군이 주로 받게 되는 역선택 문제도 나타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때 형평성 문제와 역선택에 유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인센티브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보험가입자가 건강생활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특히, 형평성 문제에 유의하여 건강군과 위험군 모두가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임
  - 건강군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건강군에서 위험군으로 보험료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서비스와 인센티브의 주요 대상이 건강 위험군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KiRi

KiRi 리포트 2017.6.12.

보험경영

#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동향

조영현 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요약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은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대출채권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관찰됨.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 확대는 저금리환경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님.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자본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이 상당히 높아, IFRS 9 시행 이후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회사들은 IFRS 9 시행에 앞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신용등급[1)] 채권 및 대출채권은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IFRS 9 시행 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높기에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저신용등급일수록 통화긴축 정책이나 경기 침체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이 일반적임
- IFRS 9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의해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은 현행 발생손실모형에 비해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가능성이 높음
  - 신용등급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투자등급인 경우에는 향후 1년간의 예상손실만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만,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하락할 경우 대출 전체기간의 예상손실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 따라서 저신용등급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나 경기 침체에 의해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대손충당금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음

---

1) 본고에서 저신용등급은 RBC제도에서 신용위험계수가 6% 이상인 A+ 이하 및 무등급으로 정의함. 금융시장 충격 시 투기등급(BB+ 이하)으로 하락 가능성이 보다 높은 BBB+ 이하를 대상으로 저신용등급을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공시되는 데이터가 A 등급과 BBB 등급 간 구분이 없기 때문에(이는 현행 RBC제도에서 A 등급과 BBB 등급 간 구분이 없기 때문), 본고에서는 불가피하게 A+ 이하 등급 및 무등급을 저신용등급으로 지칭하여 분석함. 한편, 데이터의 부재로 수익증권에 포함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을 파악하지 못한 점도 본고의 한계임

## 최근 보험회사의 저신용등급 대출채권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대출채권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저신용등급 채권 비중의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다소 줄어듦
- 이러한 저신용등급 대출채권 비중 확대는 저금리환경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기에 비중확대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음

〈표 1〉 보험산업의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

(단위: %)

| 구분 | | 2013년 | 2016년 |
|---|---|---|---|
| 생명보험회사 | 채권 | 1.4 | 1.4 |
| | 대출채권 | 3.0 | 4.2 |
| | 합계 | 4.4 | 5.6 |
| 손해보험회사 | 채권 | 2.6 | 2.0 |
| | 대출채권 | 6.1 | 9.2 |
| | 합계 | 8.7 | 11.2 |

주: 손해보험회사는 국내 일반전업사 10개사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운용자산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은 회사별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이 있음

- 생명보험회사 1개사, 손해보험회사 2개사는 2016년 기준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중이 15%를 상회하나, 10개 생명보험회사는 5%를 하회함
- 이는 회사별 투자위험 감내 여력, 투자위험 허용한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그림 1〉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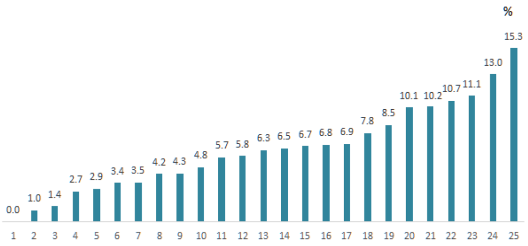


주: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2〉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중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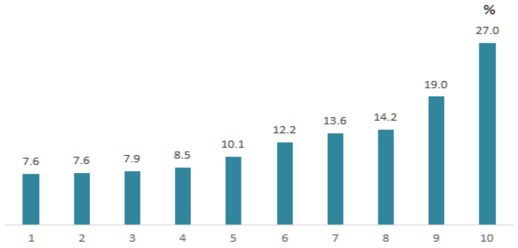


주: 1) 손해보험회사는 국내 일반전업사 10개사
2)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일부 회사의 경우 자본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등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IFRS 9 시행 이후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자본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의 비율이 200%인 경우, 금융시장 충격 발생으로 인해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중 10%[2]가 투기등급인 BB-로 하락한다면 대략 4%[3] 정도의 자본감소가 일어남
  - BB- 등급의 부도확률 25%, 부도 시 미회수율 80%를 가정할 경우임

〈그림 3〉 생명보험회사의 자본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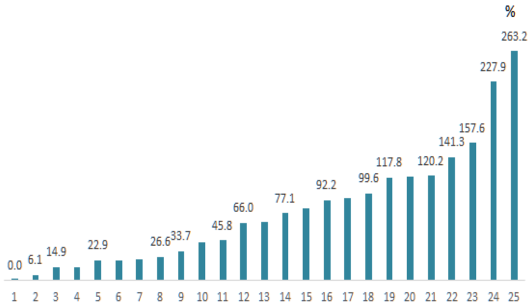


주: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4〉 손해보험회사의 자본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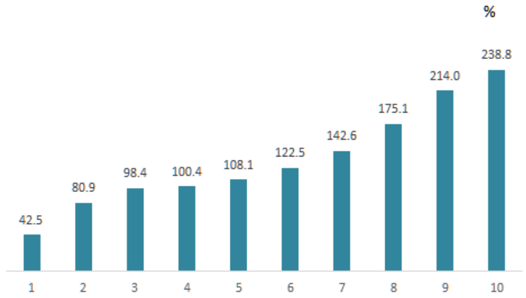


주: 1) 손해보험회사는 국내 일반전업사 10개사
2) 2016년 말 기준
자료: 경영공시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자본 대비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이 높은 일부 보험회사들은, 그 비율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출채권의 경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가 더욱 중요함
- IFRS 9 시행을 가정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하여 자본 대비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저신용등급 채권 및 대출채권 비율을 관리해야 함
  - 특히, 금융시장 충격 발생 시 투기등급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은 BBB 등급의 비율 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KiRi

보험경영

2) 이는 자본 대비 20%를 의미함
3) 자본 대비 20% × 만기 전 부도확률 25% × 부도 시 미회수율 80% = 4%이며, 일부 대손충당금은 투자등급에서도 적립되므로 신용등급으로 인한 자본감소율은 4%보다는 다소 낮을 것임

KiRi 리포트 2017.6.26.

보험경영

# 미국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최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비은행 기업의 은행업 겸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 소유 은행들의 2016년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 소유 은행들은 모회사인 보험회사 고객의 연금계좌 운용, 신탁 ·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이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일부 보험회사들은 은행 자회사의 예금 · 대출업무를 축소하고 신탁업 중심의 저축은행(Trust Only Thrift)으로 전환함. 미국의 사례는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기업의 사업모형에 적합한 은행업 겸업이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업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들이 소유한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전략을 분석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인 푸르덴셜, 프린시펄, 뮤추얼 오마하, 트리벤트, 아메리프라이즈와 손해보험회사인 AIG, 네이션와이드, 스테이트팜이 자회사로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음
  - 2012년까지 12개 보험회사가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였으나 올스테이트, 링컨 파이낸셜, 메트라이프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은행업에서 철수함
- 반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AIG, 푸르덴셜은 소유 은행들의 사업구조를 신탁업 중심의 저축은행(Trust Only Thrift)으로 전환함
  - 푸르덴셜과 AIG 소유 은행의 자산은 2010년 20.3억 달러와 10.6억 달러였으나 2016년 2천만 달러와 3,386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
- 본고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인 네이션와이드, 스테이트팜,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인 푸르덴셜과 프린시펄이 소유한 은행들의 경영성과를 분석

〈표 1〉 2016년 말 미국 주요 보험회사 소유 은행 자회사 현황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 모회사 총자산 | 은행 자회사 자산 | 구분 | 모회사 총자산 | 은행 자회사 자산 |
|---|---|---|---|---|---|
| 푸르덴셜 | 757.3 | 0.020 | AIG | 46.3 | 0.034 |
| 프린시펄 | 218.7 | 2.380 | 네이션와이드 | 197.1 | 6.870 |
| 뮤추얼 오마하 | 35.6 | 7.603 | 스테이트팜 | 176.0 | 18.251 |
| 트리벤트 | 80.1 | 0.010 | - | - | - |
| 아메리프라이즈 | 145.3 | 0.024 | 저축은행 평균 | - | 1.365 |

자료: FDIC

## 대출비중이 적은 프린시펄과 푸르덴셜 은행 자회사의 경영성과는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경영성과보다 우수함

- 2016년 프린시펄과 푸르덴셜의 은행 자회사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18.1%, 20.6%로 미국 저축은행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11.45%를 크게 상회함
- 프린시펄의 은행 자회사 자산이익률(ROA)은 1.4%, 푸르덴셜 은행 자회사의 자산이익률은 17.8%로 업계 평균 1.26%를 상회
  - 푸르덴셜 은행 자회사의 ROA가 17.8%인 것은 자산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며 2010년의 경우 자산규모는 20.3억 달러, 자산이익률은 1.48%임
  - 2016년 대출자산 비중이 29.7%인 프린시펄의 경우 유가증권 운용수익을 통해 1.4%의 자산이익률을 기록함
- 반면 순이자마진은 모두 업계 평균인 3.68%를 하회함
  - 프린시펄의 순이자마진은 2.4%, 푸르덴셜의 순이자마진은 1.8%에 불과한데 이는 저금리로 유가증권운용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2〉 주요 보험회사 소유 은행의 2016년 경영성과

(단위: %)

| 구분 | ROE | ROA | 순이자마진 |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 |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 자산 비중 | 총수익 대비 비이자수익 비중 |
|---|---|---|---|---|---|---|
| 프린시펄 | 18.1 | 1.4 | 2.4 | 29.7 | 68.0 | 12.9 |
| 푸르덴셜 | 20.6 | 17.8 | 1.8 | 0.0 | 91.3 | 95.6 |
| 네이션와이드 | 2.3 | 0.2 | 2.0 | 68.7 | 26.5 | 60.2 |
| 스테이트팜 | 2.1 | 0.2 | 2.7 | 63.5 | 32.6 | 14.5 |
| 저축은행 평균 | 11.45 | 1.26 | 3.68 | 60.9 | 11.45 | 32.3 |

자료: FDIC

■ 반면 대출비중이 높은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들의 경영성과는 평균 저축은행 경영성과에 미치지 못함

- 손해보험회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스테이트팜 은행 자회사들의 2016년 자기자본이익률은 2.3%와 2.1%로 저축은행 평균 11.45%를 크게 하회함
  - 순이자마진도 각각 2.0%, 2.7%로 평균인 3.68%를 크게 하회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스테이트팜의 은행 자회사들의 총자산 대비 대출비중은 각각 68.7%, 63.5%로 평균 비중 60.9%보다 높은 수준임
  - 순이자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저금리의 영향뿐 아니라 자금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푸르덴셜과 네이션와이드의 비이자수익 비중은 저축은행 평균 32.3%를 상회함

- 푸르덴셜과 네이션와이드의 2016년 은행 자회사 비이자수익은 각각 665만 달러와 2억 8,930만 달러로 신탁업 관련 수탁서비스(Fiduciary Service)가 대부분을 차지함
  - 수탁서비스는 모회사의 연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푸르덴셜과 네이션와이드의 특별계정 자산비중은 37.7%, 43.9%이며 수수료 수익 비중은 각각 17.1%, 11.3%임
  - 추가적 비이자수익은 투자자문 수수료, 증권유동화 관련 수익, 보험상품 판매수익 등임
- 반면 프린시펄의 특별계정 자산비중은 62.6%, 수수료 수익 비중은 30.5%이나 연금계좌 관리서비스와 투자자문 서비스 중심으로 비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은행의 연금계좌 자산은 유가증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운용됨

■ 또한 스테이트팜 소유 은행자회사의 경우 계좌관리서비스, 은행에서 판매하는 뮤추얼펀드 등 수익증권 판매, 투자자문 서비스 등에서 비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보임

- 네이션와이드와 같이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지만 네이션와이드에 비해 연금사업 비중이 적고 신탁업무관련 수탁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 2016년 미국 보험회사 소유 은행 자회사의 비이자수익 구성

(단위: 억 달러)

| 모회사 | 비이자수익 | 비이자수익 항목 | | | | 총수익 | 모회사 특별계정 자산 비중 |
|---|---|---|---|---|---|---|---|
| | | 신탁 관련 | 계좌 서비스 | 트레이딩 서비스 | 추가적 비이자수익 | | |
| 프린시펄 | 0.092 | 0.0 | 0.088 | 0.0 | 0.0036 | 0.713 | 62.6% |
| 푸르덴셜 | 0.067 | 0.067 | 0.0 | 0.0 | 0.0 | 0.070 | 37.7% |
| 네이션와이드 | 2.893 | 2.691 | 0.007 | 0.0 | 0.196 | 4.803 | 43.9% |
| 스테이트팜 | 1.089 | 0.0 | 0.025 | 0.0 | 1.064 | 7.485 | 2.2% |
| 저축은행 평균 | 0.248 | 0.023 | 0.012 | 0.0 | 0.212 | 0.768 | - |

자료: FDIC

- 미국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은 보험회사 연금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신탁, 투자자문 등 자산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은행과 유사한 사업구조는 경영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음
  - 은행을 소유하지 않고 보험회사 내부에서 투자자문 등 자산관리 사업을 겸영하는 보험회사들보다 경영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AIG, 푸르덴셜이 은행 자회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은행을 소유한 보험회사들 가운데 모회사 연금고객에게 수탁관리 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성과가 예금·대출업무 비중이 큰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보다 우수함

- 미국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 사례는 국내 보험회사들의 은행업 겸업 전략이 예금-대출업무보다는 보험회사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미국 대형 보험회사 은행 자회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Tier 1 위험자기자본비율(Risk Based Capital Ratio)은 규제수준인 6%를 상회함[1)]
    - 프린시펄 11.8%, 푸르덴셜 273.3%, 네이션와이드 11.4%, 스테이트팜 15.5%이며 저축은행 평균은 16.6%
  - 정책적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는 비은행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른 은행업 인·허가가 신축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kiri

1) Tier 1 Risk Based Capital Ratio는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정의되는데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위험가중자산 비율로 측정함

보험경영

KiRi 리포트 2017.6.26.

보험경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최창희 연구위원


## 요약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낮은 보상한도의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PL보험이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806개 외감대상기업의 PL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7개 기업(45.5%)이 보상한도 10억 원 이하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또한 10억 원 이하 보상한도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 중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업종의 기업이 상당수 존재함. 제조 기업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PL보험의 보상한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정부당국은 기업들이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4월 18일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1]

  - 황현아(2017)[2]는 동 개정안으로 인해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PL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음
    - 동 개정안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3]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기업이 충분한 보상한도를 가진 PL보험[4]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PL보험이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음

  -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인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전 보상한도가 17.5억 원인 PL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금을 소송비용으로 소진해 피해자들이 PL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5]

1)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법률 제147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참조
2) 황현아(2017),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변화 방향」,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3)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법률 제14764호 참조
4) product liability insurance
5) 이투데이(2016. 4. 28), “옥시 가습기 살균제 보험사인 KB손보 추가 보상 의무 없다” 참조

- 2016년 11월 법원이 세퓨에게 5억 4천만 원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6)]

〈그림 1〉 806개 외감대상기업의 PL보험 보상 한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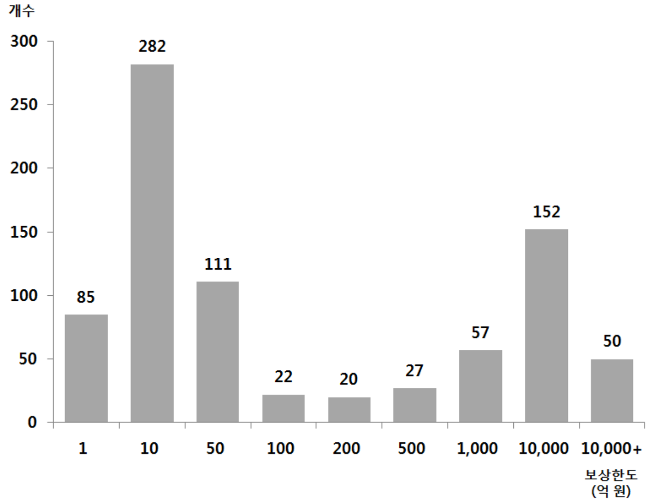


주: 2016년 10월 현재 5개 손해보험회사와 PL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PL보험 단독상품과 패키지보험의 PL담보의 보상 한도. 구간 값은 각 구간의 최대 보상 한도임. 예를 들어 '100'은 PL보험 보상한도가 50억 원 초과 ~ 100억 원 이하인 기업의 개수

자료: 5개 손해보험 회사(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롯데손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원수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한 5개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70.4%임

## 806개 외감대상기업[7)]의 PL보험 보상 한도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보상한도가 낮은[8)]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보상한도 1억 원 이하인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85개(10.5%), 보상한도가 1억 원 ~ 10억 원인 PL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282개(35%)였음(〈그림 1〉 참조)
  - PL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이 낮은 보상한도의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옥시 사례와 같이 보험금이 소송비용으로 소진될 수 있음

---

6) 조선일보(2016. 11. 16), "소송 이기고도 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참조
7) 외부감사대상기업. 806개 외감대상기업의 매출 분포는 200억 원 이하가 158개, 200억 원 ~ 500억 원이 250개, 500억 원 ~ 1,000억 원이 154개, 1,000억 원 ~ 5,000억 원이 158개, 50,000억 원 ~ 1조 원 27개, 1조 원 이상이 59개임
8) 17세 남성의 사망 손해액은 4억 원 내외임. 사망 손해액은 개인의 성별, 나이, 직업에 따라 달라지고 사업자, 직장인과 같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의 사망 손해액은 10억 원 ~ 20억 원에 이를 수 있음. 10억 원으로 다수 사망자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고 보험금이 피해보상 이전에 소송비용으로 소진될 소지가 높음

■ 보상한도가 10억 원 이하인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 중 자본금 수준이 낮은 기업이 다수 존재

- 2016년 기준 자본금 분포[9]: 1억 원 이하 16개(4.4%), 1억 원 ~ 10억 원 98개(26.7%), 10억 원 ~ 30억 원 105개(28.6%), 30억 원 ~ 50억 원 33개(9%), 50억 원 ~ 100억 원 45개(12.3%), 100억 원 ~ 500억 원 58개(15.8%), 500억 원 ~ 1,000억 원 5개(1.4%), 1,000억 원 ~ 5,000억 원 3개(0.8%), 5,000억 원 이상 4개(1.1%)
- 'PL보험 보상한도와 자본금의 합계'가 제조물 사고의 손해배상액보다 적을 시 기업이 제조물 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지 못할 수 있음
  - 기업이 은행 대출이나 채권 발행으로 손해 배상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기업은 자본금과 PL보험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조사된 806개 외감대상기업 중 보상한도 10억 원 미만인 PL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 중 상당수의 기업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업종의 기업임

- 도축·육류·수산물·농산물(22개), 식료품 제조업(41개), 주류·생수·음료 제조업(8개), 치약·비누·세제 제조업(1개), 화장품(13개), 의약품·한의약품(11개),[10] 승강기(2개), 자동차 부품(5개), 음·식료품·담배 중개업·도매업·소매업(13개), 의약품·의료용품·화장품 도매업(6개), 의료·정밀·과학 기기 도매업(1개), 백화점·대형종합소매업·슈퍼마켓·도매업(9), 호텔업(2), 음식점·음료업점(8개), 골프장(11개), 유원지 및 테마파크(1개), 기타(213개)

■ 제조 기업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PL보험의 보상한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정부당국은 기업들이 제조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kiri

---

9) 비중은 PL보험 보상한도가 10억 원 이하인 367개 기업 대비 비중임
10) 의약품 제조업 중 2개는 보상한도 1억 원 이하의 PL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사고위험

황현아 연구위원

요약

2020년 상용화 예정인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모드와 수동모드 전환을 그 특징으로 함. 그런데 자동모드에서 운전자가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주행환경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갑작스럽게 수동모드로 전환해야 할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음.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시 자율주행기술 자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자동주행–수동주행 전환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2020년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될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시스템의 판단에 따라 자동주행–수동주행이 전환되는 형태임
  -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주행모드 중 일부에서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자동주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자동주행모드에서 전방주시, 조향, 가속 및 감속은 시스템이 담당하며, 운전자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수동운전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1)]
    - 레벨3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레벨3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조건하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고, 운전자는 언제든지 운전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운전자가 자동주행기능을 과도하게 신뢰한 나머지 주변 환경 및 운행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오히려 수동주행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구글은 자동–수동 전환이 필요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간이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즉, 수동의 조향 및 가속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2)]

1)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Automated Driving Levels of Driving Automation are Defined in New SAE International Standard J3016”

- 유사시 수동모드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주행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주행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구글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한 직원들은 자동주행모드로 운행하는 동안 도로상황이나 운행에 전혀 무관심하였음
- 결국 자동주행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나아가 운전행위나 도로상황에 무관심함에 따라 위기상황에서 수동주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고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음

**2016년 5월 7일 발생한 테슬라 모델S 차량 사망사고[3]에 대하여,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4]는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림[5]**

- 테슬라 모델S의 자율주행기능(Autopilot)은 레벨2 단계로서, 운전자는 자율주행모드에서도 여전히 전방주시 및 조향, 가속 및 감속 등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
- NTSB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는 총 37분의 주행시간 중 단 25초 동안만 운전대에 손을 대고 있는 등 운행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6]
  - 운전대를 잡으라는 시스템의 경고가 7차례나 있었음에도, 운전자는 경고음이 울릴 때 1, 2초간만 운전대를 잡은 후 다시 손을 떼는 방식으로, 실제 25초 동안만 운전대를 잡고 있었음
  - 사고 직전에도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였다면 충분히 브레이크 조작을 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음
- 위 사고에 대하여 NTSB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내고, 테슬라 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2017년 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테슬라 모델S에 안전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위와 같은 구글 사례 및 테슬라 사고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수동 전환을 전제로 하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 또는 운전자의 지나친 부주의로 인해**

---

2) NY Times(2017. 6. 7), "Daily Report: When Robots Can't Trust Human"
3) 레벨2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대형 트럭의 흰색 트레일러 부분을 하늘로 잘못 인식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4)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5) Reuters(2017. 6. 20), "Tesla driver in fatal 'Autopilot' crash got numerous warnings: U.S. government"
6) Washington Post(2017. 6. 20), "The driver who died in a Tesla crash using Autopilot ignored at least 7 safety warnings"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 운전자들이 인터넷 서핑 등 다른 업무를 보거나, 나아가 졸음, 음주 등으로 인하여 운전행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레벨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자동-수동 전환 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망 사고 발생 이후 테슬라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시스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경우 시스템 사용이 일정 기간 중단되도록 하였음
- 위와 같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과 함께 자동주행 상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규정 및 자동주행-수동주행 전환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KiRi

KiRi 리포트 2017.8.7.

보험경영

#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빅데이터는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위험 수준에 따른 가격차별을 가능하게 함.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위험세분화가 심화될 경우 소비자 일부가 보장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등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산업은 가격차별과 위험공유라는 두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는 보다 정확하고 용이하게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보험상품의 설계 및 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나 텔레매틱스 활용, 건강보험의 웨어러블기기나 유전정보(genetic data) 활용, 주택이나 홍수보험의 지오코딩(geo coding) 활용[1] 등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빅데이터는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위험에 따른 가격차별 혹은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 공급을 가능하게 함
  –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면 가격차별이 용이해져서 저위험군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제고시켜 역선택(adverse selection)[2]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져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임

1) 지오코딩은 주소를 지리좌표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임. 지오코딩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보험인 홍수보험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맵핑(mapping)이나 데이터분석 기법은 보험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게 어떤 집이나 사업체들이 홍수위험이 높은지 평가할 수 있게 해줌
2) 평균위험률에 근거해 단일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 고위험군의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만 저위험군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발생함. 빅데이터와 가격차별에 관해서는 임준 · 정원석(2015), 「빅데이터와 가격차별: 보험산업에 주는 함의」, 『KIRI Report』, 보험연구원 참조

- 하지만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음

  - 최근 유럽보험감독원(EIOPA)은 빅데이터를 통한 소비자 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 평가가 일부 소비자를 보험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하였음[3)]

- 보험에서 데이터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빅데이터가 개인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요율화(personalisation)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risk sharing) 기능은 약해질 수 있음[4)]

  -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과거에 비해 위험을 세분화하게 되는 경우, 이전에는 동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던 일부 소비자들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어 평균위험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알기 어려웠던 개인의 운전습관과 같은 행위정보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획득할 수 있게 됨
  - 문제는 운전습관처럼 소비자들이 바꿀 수 있는 성격의 행위특성이 아닌, 유전정보나 건강문제 등 소비자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도 빅데이터를 통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임

-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위험군이 보험보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영국은 보험산업이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발생할 문제들을 고려하여 유전테스트 결과를 보험산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에 정부와 보험협회가 합의하였음[5)]
  - 영국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된 홍수위험이 높은 특정 지역의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lood Re 재보험사를 설립하고 홍수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부담을 낮추고 있음

- 향후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격차별과 사회적 위험공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험의 가격차별은 보험료의 공정성(fairness)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험료 세분화가

3) EIOPA(2016. 10), "EIOPA Fifth Consumer Trends Report"
4) CII(Chartered Insurance Institute) research report(2015), "Big data and insurance: a conversation"
5) 이 합의는 2019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향후 지속여부는 다시 재평가하기로 하였음

심해져서 초래할 부정적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빅데이터 활용으로 사회구성원 간 위험의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위험의 세분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차별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 빅데이터를 통해 언더라이터들이 소비자 개인의 위험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이를 보험가격 책정에 적용하는 것이 쉬워질수록, 위험공유를 통한 보험의 사회적 위험분산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보험산업은 빅데이터 활용 시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소비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 역시 생겨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빅데이터의 유용성을 고려함에 있어 단기적인 이익이나 성과에만 주목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임 kiri

# 보험회사의 포인트제도 활용 전략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최근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포인트제도 도입이 활발한 가운데 일부 비금융그룹 보험회사에서도 포인트제도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음. 해외에서는 포인트제도를 브랜드 충성도 및 인지도 제고뿐 아니라 가입자의 위험관리 유도와 위험에 대한 니즈 파악 등에도 활용하고 있음. 해외 보험회사들은 포인트제도에 게임의 요소와 디자인을 접목시켜 교육 또는 마케팅 등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게임화(Gamification)를 활용하고 있는데, 게임화는 보험산업에서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포인트제도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전략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포인트제도 도입이 활발한 가운데 일부 비금융그룹 보험회사에서도 포인트제도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주요 금융그룹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통합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계열사 상품 구매 시 얻은 포인트를 다른 계열사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함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합 포인트의 관리가 가능하며, 어플리케이션 체류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부여함
- 최근에는 금융그룹에 속한 보험회사 이외에도 M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적립 포인트 운영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 가입 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음
- 온라인 전용 보험회사인 L사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아이디어 제안이나 설문에 참여할 경우 보험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포인트제도를 적용하는 사례는 주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임

- 금융그룹 내 통합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는 동일 금융그룹 상품에 대한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
- 금융그룹 이외의 사례를 보면 특정 상품군의 판매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후발주자로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포인트제도를 브랜드 충성도 및 인지도 제고뿐 아니라 가입자의 위험관리 유도, 위험에 대한 니즈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음

- 미국 John Hancock 보험회사의 Vitality Program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운동이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보험료 할인, 인터넷 쇼핑몰,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영국의 Co-operative 보험회사는 신호 준수, 가속과 감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안전운행을 하는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2011년부터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음[1)]
- 화재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게임을 수행할 경우 포인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연금보험에서는 개인의 금융지식이나 노후소득에 관한 퀴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연금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음

■ 이렇게 게임의 요소와 디자인을 교육 또는 마케팅 등 실제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게임화(Gamification)라고 하는데, 보험산업에서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2)]

- 게임화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 포인트 제공, 포인트를 활용하는 메커니즘(보험료 할인 등)으로 구성됨
- 소셜미디어상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설문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험을 파악하여 신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상의 캐릭터를 위한 보험구매 게임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의 효용을 인식시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보험소비자나 가입자가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단계별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 사용을 유도하여 보험판매 및 유지 프로세스에서 비용절감도 가능함

---

1) 이러한 형태의 자동차 보험은 Pay-How-You-Drive insurance, Usage-Based Insurance 등으로 불림
2) Cognizant(2017. 1), "Gamification for Insurers: A Practitionaer's Perspective"

-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포인트 시스템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전략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통합 포인트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게임적 요소가 제공되나 금융지식이나 설문보다는 어플리케이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한 흥미위주의 방식에 머물고 있음
  - 포인트제도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두려워하는 위험의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고 소비자 스스로의 보험 니즈 인식을 유도하여 보험산업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
  - 한편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나 보상을 활용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설계되지 못한다면 비용 대비 성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함 kiri

# 금리상승과 생명보험회사의 듀레이션 갭 관리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금리하락 추세가 2016년 말부터 반전되는 양상이며, 장기금리의 점진적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임. 중장기적 금리상승이 전망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갭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으나,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RBC제도 강화와 부채시가평가제도(IFRS 17 및 K-ICS)를 고려하면, 금리상승 전망에 의한 듀레이션 갭 확대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소수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장기금리의 점진적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RBC제도 강화 및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응하여 자산 듀레이션(혹은 금리부자산 비중) 확대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던 금리하락 추세가 2016년 말부터 반전되는 양상이며, 장기금리의 점진적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기금리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1], 특히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장기금리가 더욱 동조하는 모습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의 정책금리(federal funds rate) 전망[2]을 보면, 2019년까지 미국 정책금리가 3% 내외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 정책금리 인상 이외에도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실행,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도 미국 장기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
- 다만,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은 점진적이며 상승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임

1) 김도완 · 오형석(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시장금리 동조화 현상 분석: 미국 및 우리나라 수익률곡선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63집 제2호

2) The Fed(2017),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June 13-14

〈그림 1〉 한미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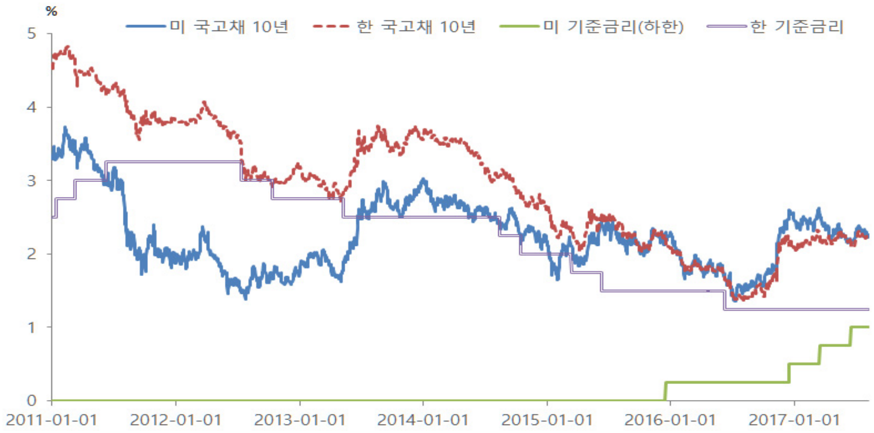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중장기적 금리상승이 전망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갭[3])을 확대하는[4])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음

-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큰 생명보험회사는, 금리상승 시 자산 듀레이션 및 금리부자산 비중을 축소시켜 금리상승에 따른 실질 자본 증가 규모를 더욱 확대시킬 수도 있음
  - 단,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발행규모 및 유동성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회사가 실물 채권 매매를 통해 자산 듀레이션을 급격하게 조정하기는 어려움
  - 보다 빠르고 유연한 자산 듀레이션 조정을 위해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음
- 또한, 듀레이션 갭 확대 전략은 부채가 원가법으로 표시되는 현행 회계제도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함
  - 듀레이션 갭 확대 전략은 요구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5]), 금리가 실제로 상승할 경우 가용자본 감소 규모를 감소시켜 듀레이션 갭 유지 전략에 비해 RBC 비율 하락폭을 낮출 수 있음

■ 금리상승이 전망될 때 생명보험회사가 듀레이션 갭을 낮추는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3) 듀레이션 갭 =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듀레이션 × 금리부부채 익스포저 / 금리부자산 익스포저
4)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듀레이션 갭의 정의는 위의 각주 1)과 같으며, 부호를 가지고 있어 금리부자산 듀레이션 혹은 금리부자산 익스포저를 축소하는 전략은 듀레이션 갭의 수치를 낮춤. 그러나 이 경우, 통상적으로 부호를 무시하고 '갭(gap)' 자체의 의미를 살려 듀레이션 갭을 확대한다고 표현함. 본고도 통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겠음
5) 단, RBC 기준 듀레이션 갭이 양(+)이고 최저금리위험액 미적용 회사의 경우 듀레이션 갭을 낮추면 오히려 요구자본이 낮아질 수 있음

- 듀레이션 갭 확대에 따른 금리리스크 증가를 감내할 수 있는 회사만이 듀레이션 갭 확대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 금리상승 전망과 다르게 금리가 하락할 경우, 듀레이션 갭을 확대하는 전략은 실질 자본 감소 규모를 증가시키므로 자본력이 충분한 상태에서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RBC제도 강화[6]와 부채시가평가제도(IFRS 17 및 K-ICS)를 고려하면, 금리상승 전망에 의한 듀레이션 갭 확대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소수일 것으로 보임**

- 2016년 말 기준 생명보험산업의 RBC 듀레이션 갭은 +0.56년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RBC제도 강화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음
  - 회사의 부채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부채 만기가 10년 증가할 경우 대략 3~4년의 부채 듀레이션 증가가 예상됨
- 또한, 기존에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 듀레이션 갭을 낮게 관리한 회사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의 실질 듀레이션 갭을 (-)5~9년 정도로 보는 견해도 있음[7]

**장기금리의 점진적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RBC제도 강화 및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응하여 자산 듀레이션(혹은 금리부자산 비중)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단, 실질 듀레이션 갭이 낮고 RBC 비율이 높은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중장기적 금리상승에 대응하여 듀레이션 갭을 확대 혹은 유지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임 KiRi

6) 금리리스크 산출 시 최대 부채 만기를 30년으로 확대
7) 한승희(2016. 11), "IFRS4 등 제도 변경이 보험사 자산배분에 미치는 영향", NH투자증권

KiRi 리포트 2017.9.18.

보험경영

# 중국 기업의 해외 금융회사 M&A와 소유·지배구조

전용식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요약

최근 중국의 해남항공그룹(HNA)과 안방보험(AB)이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거절한 것으로 보도됨.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신규 자금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두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 · 지배구조 이슈가 거절의 주된 이유임. 해남항공그룹 및 안방보험그룹은 모두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불투명하여 해외시장에서 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를 받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과 관련하여 공격적인 해외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 · 지배구조는 중국 기업의 해외 M&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의 해남항공그룹(HNA: HNA Group)과 안방보험그룹(AB: Anbang Insurance Group)이 독일 알리안츠그룹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거절한 것으로 보도됨[1)]
  - 지분규모와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음
  -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인수 제안을 거절한 주된 이유는 해남항공그룹과 안방보험그룹의 불투명한 소유 · 지배구조임
    - 1989년에 설립된 중국 해남항공그룹(NHA)의 주요 사업은 항공운송, 물류, 부동산, 항구, 금융투자, 매스미디어 등이며, 2016년 기준 총자산은 1조 위안을 기록함[2)]
    - 안방보험그룹(AB)은 2004년에 설립된 안방손해보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보험, 은행, 금융투자 등이 있으며, 2016년 기준 총자산은 1.97조 위안임[3)]
  - 뉴욕타임스(NYT)는 홍콩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안방보험그룹이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우샤오후이 회장이 친척과 지인 등 100여 명에 이르는 개인 주주를 통해 안방보험그룹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도함[4)]

1) Reuters(2017. 9), "China's Anbang, HNA had sights set on insurer Allianz"
2) 중국 해남항공그룹 홈페이지(http://www.hnagroup.com/en_about/introduce/)
3) 중국 안낭보험그룹 홈페이지(http://en.anbanggroup.com/jtjs/index.htm)
4) The New York Times(2016. 9), "A Chinese Mystery: Who Owns a Firm on a Global Shopping Spree?"

- 소유 · 지배구조 이슈 이외에도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신규 자금조달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인수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임

  - 알리안츠그룹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66억 유로에서 2016년 73억 유로까지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비율은 2014년 181%에서 2016년 218%까지 상승함[5)]

- 해남항공그룹 및 안방보험그룹은 모두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불투명하여 해외시장에서 지배구조 정보 공개 요구를 받고 있지만 공격적인 해외 인수 ·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해남항공그룹 및 안방보험그룹은 해외시장에서 제기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 지배구조를 공개하였으나 지배구조 불투명성은 해소되지 못함
    - 안방보험그룹은 2015년부터 미국 Fidelity & Guarantee 생명보험회사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뉴욕주 보험감독당국이 승인 과정에서 요구한 소유 ·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수합병을 철회한 경험
  - 해남항공그룹은 안방보험그룹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외 M&A를 추진하고 있음[6)]
    - 2015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해남항공그룹은 255억 달러에 28개의 해외 M&A를 달성함
    - 2016년 4월 스위스 항공서비스회사인 Gategroup(15억 달러), 2016년 7월 스위스 항공사인 Swissport(28억 달러), 2016년 7월 아일랜드 항공기 리스회사인 Avolon(25억 달러)의 지분 100% 인수
    - 2017년 3월 독일 은행인 Deutsche Bank 지분의 9.9%를 인수하며(26억 유로) Deutsche Bank의 최대 주주가 됨
    - 2017년 3월 영국 보험회사인 Old Mutual의 자산관리 자회사인 OMAN 지분의 25%(4.5억 달러)를 인수함
  - 중국 언론들은 해남항공그룹이 유럽 시장에서 항공 관련 사업부터 금융투자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알리안츠 지분 인수가 완성될 경우 기존 사업과 연결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함[7)]

- 중국 정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자본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해외 M&A에 대해 부정적으로 태도를 취하였으나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된 국가의 기업에 대한 해외 M&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8)]

---

5) 알리안츠 홈페이지(https://www.allianz.com/en/investor_relations/results-reports/annual-reports/)
6) 搜狐网(2017. 4), "28个月海外并购花了2760亿, 海航买买买的钱从哪来"
7) 凤凰资讯(2017. 4), "海航集团 : 跨境并购践行 "一带一路", 加快实施国际化战略"

- 해남항공그룹이 유럽 시장에서 추진한 M&A는 대다수가 중국 정부가 제기한 "일대일로" 구상 관련 국가에 속함
  - 최근 해남항공그룹은 "일대일로" 구상 관련 국가인 싱가포르의 물류회사 CWT를 10억 달러에 인수하려 하고 있음9)
- 안방보험그룹이 독일 알리안츠그룹에 인수제안을 한 시점이 우샤이오후 회장이 구속(2017년 6월 13일)된 이후라는 점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해외 M&A에 대한 정책방향을 보여주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제한적인 해외 M&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는 중국 기업의 해외 M&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안방보험그룹의 경우 미국 Fidelity & Guarantee 생명보험회사 인수 과정에서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로 인수 제안을 철회한 경험이 있음
  - 안방보험그룹과 미국 Fidelity & Guarantee(2015년 자산규모 249억 달러)는 2015년 16억 달러(주당 26.8달러)에 인수를 결정
  - 미국 해외투자위원회10)는 인수를 승인하였으나 안방보험그룹은 2016년 뉴욕주가 요청한 안방보험그룹의 자금조달방식과 주주 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유·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피인수 기업의 주주와 인수 기업 주주 간의 이해상충으로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임 KiRi



8) 중국의 자본수지는 2012년 1,114억 달러 흑자에서 2015년 2,009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6년에는 적자규모가 3,053억 달러로 확대됨. 중국정부는 2016년 11월 중국 내에 위치한 기업의 사전보고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기존 5,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인하하였고 중국기업의 신중한 해외투자를 권고하는 등 자본유출 감독 관리를 강화함. 자세한 내용은 전용식·이소양(2017. 5. 19),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의미」, 『KiRi 리포트』 참조

9) 新华网(2017. 4), "海航集团已提议收购新加坡CWT,估值近14亿新元"

10)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기구임

# 보험회사 상품구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김해식 연구위원

요약

새 회계기준(IFRS)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보험회사가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그러나 모든 보험회사가 이런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양한 수요 충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도 않음. 그럼에도 이런 해법이 제시된 데에는 그동안 보험산업 내에 누적된 성장 위주의 '시장흐름 따라하기' 방식의 상품 전략이 지속되기 때문임. 지금은 보험회사마다 자사의 경쟁우위에 따른 주력 상품구성을 선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임

- 새 보험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지금보다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을 높이는 것이 향후 보험회사가 선택해야 할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 IFRS 17은 당기순이익 정보를 보험마진과 이자마진으로 세분하고 보유계약의 장래이익 정보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수익성 개선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 판매가 주목을 받고 있음
  - 또한 신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노출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량을 크게 높이고 있으므로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에 따른 금리위험 노출 규모가 큰 국내 보험회사는 자산구성에서 장기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러나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보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라는 시장흐름을 따라가기에 앞서서 자사의 시장경쟁력을 재점검할 때임

  - 저금리 환경에서 지급여력제도 강화에 대응한 국채 위주의 장기자산 비중 확대는 낮은 투자수익률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이자마진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험마진 등 다른 수익원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그림 1〉 참조)

- 기존 저축성보험은 만성적인 이차역마진(마이너스 이자마진)을 경험하고 있거나 최저금리에 따른 이차역마진에 추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마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함
- 그러나 성장성이 좋은 질병보장(건강)보험은 아직 보험마진 전망이 불투명하고, 보험마진이 검증된 종신보험은 성장성이 정체되면서 시장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임
  - 2014년 기준 종신보험 보유계약건수는 1,380만 건으로[1] 국내 가구의 70%가 1건씩 가입한 셈이어서 구매동기가 낮은 1인 가구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성장 정체가 예상됨[2]

〈그림 1〉 시장금리(국고채 5년)와 주가지수(KOS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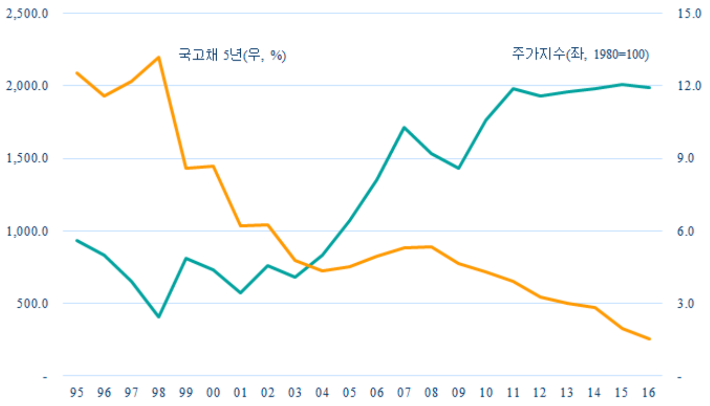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 지난 10년의 소비자 지출 구성의 변화를 볼 때,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연금 및 변액보험 비중 확대가 보장성보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저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가지수 상승과 함께 등장한 변액보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완전판매에 따른 평판 악화로 최근까지 보험료의 연평균성장률(2009~2016년)이 1.7%에 그쳐 같은 기간 생명보험 전체의 연평균성장률 6.5%와 대조를 이룸
-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2006~2016년) 가계는 소비 대신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3]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가파른 인구고령화로 저축과 투자 비중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금 및 투자형상품인 변액보험이 여전히 보험시장의 주된 성장동력이 될 것임

1) 보험개발원(2015), 『CY2015 생명보험 통계자료집』
2)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국내 총 가구 수는 1960만 가구이고 그 가운데 1인 가구는 520만 가구임. 종신보험 보유계약건수에 1인 가구 수까지 합하면 1900만 가구로 총 가구 수에 근접함
3) 이태열 · 최장훈(2017), 「복지비용 및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 지출 구성 변화」, 『KIRI 고령화리뷰』, 14호

– 가계 지출 구성에서 저축·투자는 4.8%p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6.0%p 감소함(〈그림 2〉 참조)

〈그림 2〉 가계 지출 구성 변화(2006 vs.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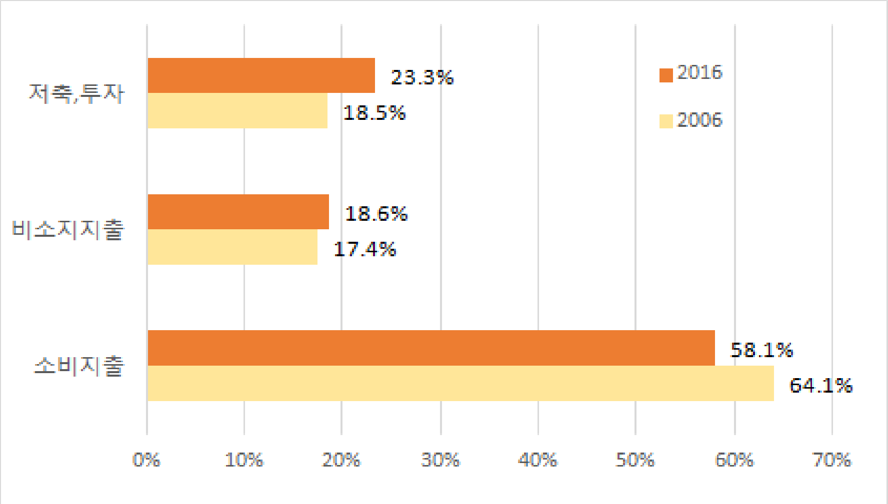


자료: 이태열·최장훈(2017), 「복지비용 및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 지출 구성 변화」, 『KIRI 고령화리뷰』, 14호

■ 저성장의 경제환경과 수익성과 위험관리를 우선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여 이제는 보험회사가 시장흐름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사의 경쟁우위에 따라 주력할 상품구성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임

- 고도 성장기에는 시장흐름을 따르는 유사한 선택으로도 모든 회사가 성장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저성장 환경에서는 유사한 상품구성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고,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저금리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이자마진에 의존하여 성장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음
- 건강보험, 종신보험 등 특정 상품구성에 주력해 온 보험회사들이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현재의 모습은 주력 상품구성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위험감내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있음
- 어떤 상품구성을 선택하든 보험회사는 종신보험의 성장 정체, 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험료와 손실 지속 가능성, 연금의 장수위험, 변액보험의 낮은 평판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kiri

KiRi 리포트 2017.11.6.

보험경영

#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2016년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개선 이후 하락하던 손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됨. 최근의 손해율 상승은 여름 강수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안정적이던 손해율 추세와는 대조적이어서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인상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대물보상 제도개선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개선 효과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5.4%p 하락함

- 2015년 10월 13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2016년 4월 계약자부터 개정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등이 적용됨
- 이외에도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그리고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을 신설함1)

##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손해율 추세와 대조적임

- 2017년 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과 2016년 동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월에서 4월(77.1%)까지의 하락세에서 5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
- 여름 휴가철,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일 수 있으나 2016년 5월에서 8월까지 손해율이 80% 수준에서 안정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임

---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1. 18), “고가수리비 · 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보험경영

〈표 1〉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 현황

(단위: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누계 |
|---|---|---|---|---|---|---|---|---|---|---|---|---|---|
| 2015 | 86.4 | 85.1 | 85.9 | 86.1 | 84.5 | 84.1 | 85.3 | 87.3 | 90.6 | 88.5 | 92.0 | 97.2 | 87.8 |
| 2016 | 84.0 | 83.1 | 79.4 | 84.4 | 82.5 | 80.0 | 80.6 | 80.2 | 78.8 | 84.7 | 85.7 | 91.6 | 83.0 |
| 2017 | 83.9 | 76.5 | 74.1 | 77.1 | 77.6 | 77.4 | 81.1 | 79.4 | – | – | – | – | 78.4 |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가 원인일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의 손실 감소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함
  - 대형 3사는 2016년 12월 31일, 2017년 8월 6일과 16일, 2017년 6월 1일에 최소 0.8%에서 최대 2.7% 보험료를 인하함[2)]
  -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해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손실은 2015년 1조 1,011억 원에서 2016년 3,418억 원으로 감소[3)]
- 일반적으로 손해율은 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손해율 상승은 손해액 증가세가 보험료 증가액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손해율 상승은 주어진 보험료 수준에서 손해액이 보험료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도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손해액 감소 크기만큼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해액 감소는 보험료 인하 여력으로 전환됨
- 그러나 2016년 12월부터 지속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제도개선 효과가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도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소진되어 손해율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은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 이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감소한 후 2012년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다시 영업적자가 증가했던 현상과 유사함

- 201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9%이었으나 2011년 손해율은 82.3%, 2012년 84.0%를 기록한

2) 매일경제(2017. 7. 17), "손보 빅3중 차보험료 첫 인하"
3)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후 2012년 보험료 인하로 2013년 86.8%, 2014년 88.4%로 상승

- 기승도 · 이경아(2014)는 2012년 4월 기본보험료 인하 및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하 경쟁, 2010년 12월 자기차량손해담보 비례공제제도의 영향 감소 등으로 2013년 손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함[4)]
- 기승도(2013)에 따르면 2012년 4월로 추정되는 기본보험료 2.5% 인하, 사고자 특별할증률 인하 1.0% 등으로 대당보험료가 5.0% 감소함[5)]

- 2011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4,070억 원으로 2010년 1조 5,369억 원에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12년 6,333억 원, 2013년 9,415억 원으로 증가함
  - 제도개선 이후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경미사고 보험금 증가 때문임

##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개선 효과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안정과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손해율 변동성 최소화가 수반되어야 함
- 보험금(손해액)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보험금 원가관리와 비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대인보험금 증가의 원인인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 음주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등 비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kiri

4) 기승도 · 이경아(2014. 2. 10),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5) 기승도(2013. 4. 15),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김석영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신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함. 일본의 JMDC(Japan Medical Data Center)는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음.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길 기대함

- 보험은 사고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한 위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함으로 통계의 집적이 필수적임
  - 보험산업은 대수의 법칙을 근간으로 장래에 발생할 사고의 확률을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상품을 개발함
  - 정확한 위험률 계산을 위하여 보험회사는 회사 경험통계를 포함한 관련 통계를 집적함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 위험에 대한 경험 통계가 부족할 때 일본 등 해외 통계와 국민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경험통계가 축적된 이후에는 회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고 있음
  - 보험산업의 초창기에는 경험자료가 전무하여 일본의 위험률과 통계자료 및 국민사망통계 등을 활용하여 사망률, 입원율, 암발생률 등을 산출
    - 과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 국내 의료 관련 통계를 구하기 어려워 해외의 유사한 통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보정하여 사용
  - 생명보험회사는 상품판매를 통하여 경험통계를 축적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험요율 산출 시작
  -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때에는 여전히 경험통계가 없어 해외통계에 의존함으로써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7월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보험회

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신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에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1)]
-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개발이 용이해졌음
  - 실제로 최근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동안 보장하지 못했던 위험보장(예를 들어, 중기간질환, 중기폐질환, 중기심질환)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

■ 일본의료데이터센터(JMDC: Japan Medical Data Center)[2)]는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음

- 일본 보험회사는 JMDC의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상품을 판매함
  -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강나이보험료 산출방식은 정부, 보험회사,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됨[3)]

■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기를 기대함

-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상존
  -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음[4)]
-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의료 관련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설립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른 나라의 통계를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더 적합한 위험률 산출이 가능해질 것임 kiri

---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2) JMDC는 일본 건강보험조합, 병원 등으로부터 비식별화된 건강검진데이터, 진료보수명세서 등을 받아서 분석, 가공하여 보험자(건강보험조합, 보험회사 등)에게 데이터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3) 김석영(2017. 4. 17), 「헬스케어서비스와 건강나이 도입」, 『KiRi 리포트』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KiRi 리포트 2017.12.18.

보험경영

# 디지털 건강관리플랫폼 현황과 고려사항

오승연 연구위원

요약

디지털 정보통신기술과 건강생활서비스의 융합으로 개인 건강정보에 근거한 맞춤형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에는 건강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최근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한 건강관리플랫폼 구축 시도가 활발함.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건강생활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표준화된 데이터 집적이 필요하며, 플랫폼 간 통합과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 표준에 맞춰 의료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술 확보가 요구됨. 또한 개인 건강정보 보안강화와 적절한 활용,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헬스케어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헬스케어란 넓은 의미에서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와 질병의 관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임
  -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는 보건의료분야는 크게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진단, 치료, 제약 등),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서비스, 일반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강생활서비스(wellness)로 분류할 수 있음
  -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질병의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건강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수집·분석·가공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최근 개인 건강정보에 기반한 건강관리플랫폼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건강생활서비스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내용은 건강관리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에 맞게 가공되어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음
- 치료행위가 환자의 질환에 맞춰 특정한 처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이듯이, 건강생활 서비스 역시 획일화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상태나 생활습관에 맞춰 제공되어져야 할 것임
- 최근 AIA생명은 건강관리서비스인 AIA 바이탈리티에 SK C&C의 ICT 융합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생활습관개선서비스인 ICT 힐링 플랫폼을 개발 중임[2]
- 애플의 HealthKit, 구글의 Google Fit, 마이크로소프트의 MS Health, 삼성의 Sami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건강관리플랫폼 개발 및 보급에 착수하였음[3]

■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은 건강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됨

- 건강관리플랫폼은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집하고 저장·관리하는 기능,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송하는 기능,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
- 클라우드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탄력성 있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제공해주는데,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4]
  -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건의료에 활용되는 6가지 주된 분야로는 원격의료 및 상담, 의료영상데이터, 공공의료와 환자의 건강관리, 병원운영과 정보시스템, 치료요법, 임상데이터 가공임
-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의료 및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수행함

■ 건강관리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

보험경영

1) 조선비즈(2017. 12. 13), “AIA생명, SK(주)와 한국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한다”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보도자료(2014), “ETRI, 스마트폰으로 건강관리 나선다”
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승환(2015), 「개인중심 건강관리 플랫폼 동향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0권 제5호
4)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은 National Institutes of Standards and Technology(NIST)의 정의를 참조; Mell P, Grance T.(2011), “The NIST definition of cloud computing”, NIST Spec Publ. 800(145): 7

- 의료기관, 피트니스센터, 개인건강기기 등에서 수집된 빅데이터가 표준화된 양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기존에는 의료정보들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요약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데, 이는 개인 주도로 건강정보를 통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5)]
- 플랫폼 간 통합과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적 표준에 맞춰 의료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술 확보가 요구됨
- 해외 건강생활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 내용을 도입하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과 생활습관의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서비스 내용이 제공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우리나라 사람들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건강생활서비스 내용 마련이 필요함
- 건강관리플랫폼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의 의료 및 건강정보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의 가장 큰 도전과제로 데이터의 보안과 안전성, 데이터를 다루는 제3자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6)]

## 정보통신기술이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주체는 소비자이므로 소비자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동기유발이 중요함

- 예방적 건강생활서비스는 치료목적의 의료서비스와 달리 행위의 주체가 의료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임
  - 치료적 의료행위에서도 환자가 의료공급자의 지시에 잘 순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료공급자의 진단과 처치가 핵심인 반면, 건강생활서비스에서는 소비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여야만 함
- 국가적 차원에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지도 정책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인센티브의 부재와 서비스의 획일성으로 참여율이 낮아 효과를 충분히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7)]
-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며,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5) 김영명 외(2015), 「ICT힐링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및 활용 방안」, 『ISSUE REPORT』,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6) Griebel et al(2015), “A scoping review of cloud computing in health care”, BMC Medical Informatics and Decision Making, 15:17
7) 조용운 외(2017), 『보험산업의 건강생활서비스 활용 방안』, 보험연구원, 발간예정

-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건강생활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 건강정보의 보안 강화와 적절한 활용,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kiri

보험경영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모음집 2017

발행일 | 2018년 1월

발행인 | 한 기 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